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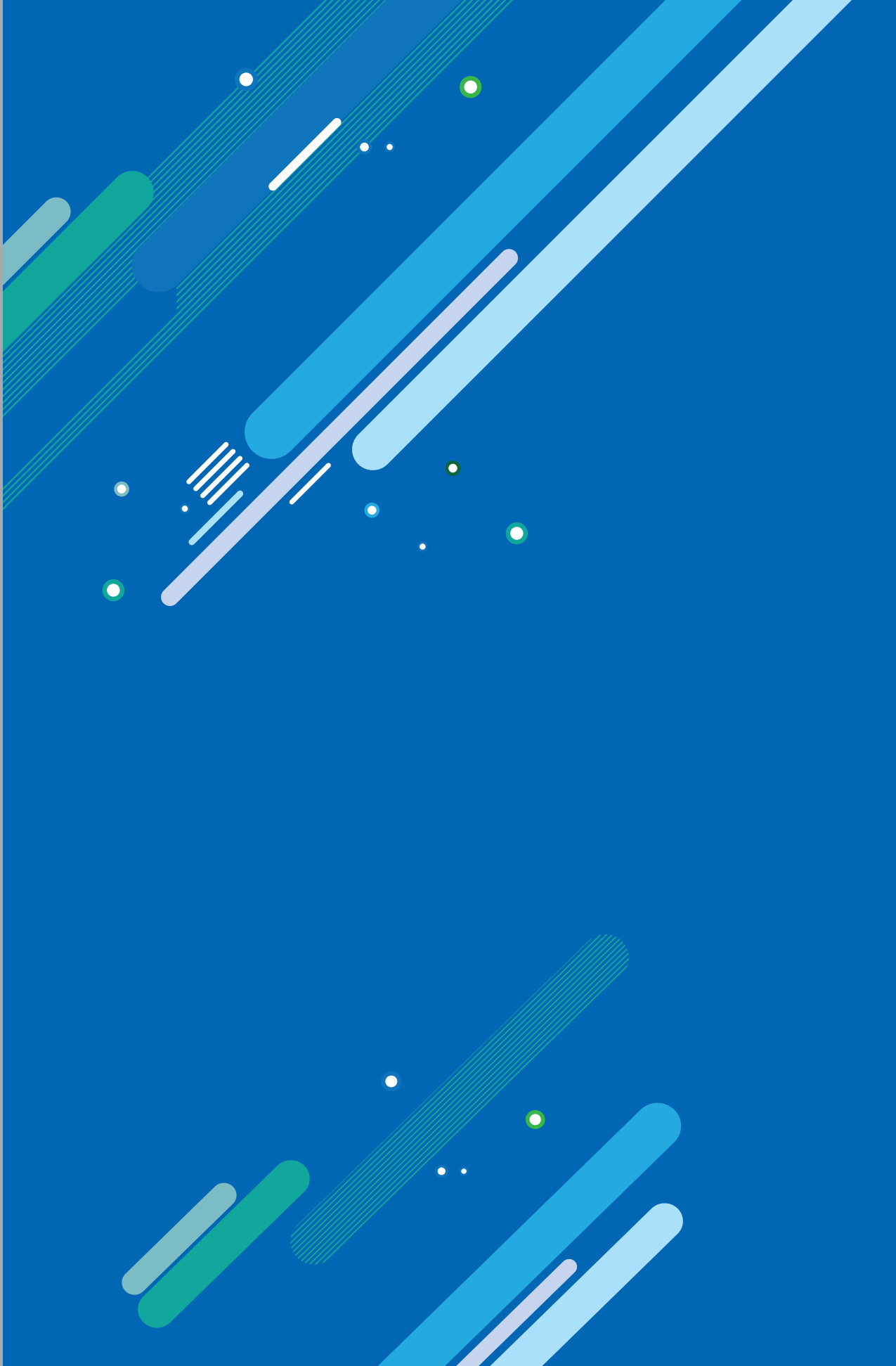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17108 호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용어설명	2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35
주요 현황	43
제1장 서론	53
1. 발간목적	55
2. 법적근거	56
3. 자료수집 및 분석	56
4. 주요 분석항목	56



제2장 신고접수 현황	59
1. 신고접수	61
가. 전체 신고접수	61
나. 월별 신고접수	63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4
라. 시·군·구별 신고접수	66
2. 신고접수 방법	75
3. 신고접수 경로	75
제3장 일반사례 현황	77
1. 일반사례 유형	79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80
3. 차별사례 현황	81
가. 차별사례 유형	81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82

제4장 학대의심사례 현황	85
1. 신고자	87
가. 신고자 유형	87
나. 신고의무자 유형	88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91
2. 학대조사	94
가. 전체 학대조사	94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95
3. 사례판정	96
가. 전체 사례판정	96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97
4. 상담 및 지원	99
가. 2020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99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100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102
5. 사례종결	103



제5장 학대사례 분석	10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07
가. 피해장애인	107
1) 성별	107
2) 연령	108
3) 장애유형 및 정도	109
4) 거주형태	112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2
6) 재학대사례	113
나. 학대행위자	113
1) 성별	113
2) 연령	114
3) 피해장애인과 관계	115
4) 피해장애인과 동거여부	117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118
가. 학대 발생장소	118
나.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20

3. 장애인학대 유형	122
가. 장애인학대 유형	122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22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23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4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24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25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26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27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28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30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32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35
4. 응급조치	136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137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137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138
1) 의료지원	138
2) 심리지원	138
3) 거주지원	139
4) 사법지원	139
5) 복지지원	140
6) 교육지원	140
7) 중재지원	140
8) 진정지원	141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142
6. 사례종결	144
7. 사후 모니터링	144

제6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47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49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50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151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53
1) 성별 및 연령	153
2) 거주유형	154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4
4) 재학대사례	154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55
1) 성별	155
2)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56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58
1) 학대 발생장소	158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60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61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1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2



-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63
 -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63
 -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63
 -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64
 -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64
-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166
 - 1) 응급조치 166
 -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166
- 2. 장애아동 학대사례 168**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168
 -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170
 - 1) 성별 및 연령 170
 - 2) 장애유형 및 정도 171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72
 -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173
 - 1) 성별 173
 - 2) 연령 174
 - 3) 피해아동과의 관계 175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176
1) 학대 발생장소	176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78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179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79
2)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80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81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81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81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82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183
1) 응급조치	183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183
3. 노동력 착취사례	185
가. 피해장애인	186
1) 성별 및 연령	186
2) 장애유형	187
3) 거주유형	188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88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89
1) 성별	189
2) 연령	190
3)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91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192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92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94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195
1) 응급조치	195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195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97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97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197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199
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장애인	200
1) 성별	200
2) 연령	200
3) 장애유형 및 정도	201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202

-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204
-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204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04
 -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6
- 바.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08
 -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08
 -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09
 -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210
- 사.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211
 - 1) 응급조치 211
 -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212



제7장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215

- 1. 연도별 신고접수 217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19
-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1
- 4. 연도별 학대행위자 223
-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225
-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226
-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28
 - 가.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228
 - 나.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9
- 8.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230
 - 가.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사례 발생현황 230
 - 나.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31
- 9.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232

부록 235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237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56
[표 2-1]	신고접수	62
[표 2-2]	월별 신고접수	63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5
[표 2-4]	시·군·구별 신고접수	66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75
[표 2-6]	전체 신고접수 경로	75
[표 3-1]	일반사례 유형	79
[표 3-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접수 현황	80
[표 3-3]	차별사례 유형	81
[표 3-4]	차별사례 지원결과	82
[표 4-1]	신고자 유형	87
[표 4-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90
[표 4-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92
[표 4-4]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93
[표 4-5]	전체 학대조사	94
[표 4-6]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95
[표 4-7]	전체 사례판정 결과	96
[표 4-8]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97
[표 4-9]	2020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99
[표 4-10]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100
[표 4-11]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102



[표 4-12]	사례종결	103
[표 5-1]	피해장애인 성별	107
[표 5-2]	피해장애인 연령	108
[표 5-3]	장애인 등록 여부	109
[표 5-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110
[표 5-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111
[표 5-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112
[표 5-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2
[표 5-8]	재학대사례 발생 건수	113
[표 5-9]	학대행위자 성별	113
[표 5-10]	학대행위자 연령	114
[표 5-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6
[표 5-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117
[표 5-1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19
[표 5-14]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20
[표 5-15]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22
[표 5-16]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23
[표 5-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24
[표 5-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25
[표 5-19]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26
[표 5-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27
[표 5-21]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29
[표 5-22]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31

[표 5-23]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33
[표 5-24]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35
[표 5-25]	응급조치	136
[표 5-26]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37
[표 5-27]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횟수	138
[표 5-28]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횟수	138
[표 5-29]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횟수	139
[표 5-30]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횟수	139
[표 5-31]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횟수	140
[표 5-32]	피해장애인 교육지원 유형 횟수	140
[표 5-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횟수	140
[표 5-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횟수	141
[표 5-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43
[표 5-36]	사례종결	144
[표 5-37]	사후 모니터링	144
[표 6-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50
[표 6-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51
[표 6-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53
[표 6-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54
[표 6-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4
[표 6-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상례	154
[표 6-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55
[표 6-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57



[표 6-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58
[표 6-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60
[표 6-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1
[표 6-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2
[표 6-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63
[표 6-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63
[표 6-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64
[표 6-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65
[표 6-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66
[표 6-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66
[표 6-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67
[표 6-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169
[표 6-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70
[표 6-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71
[표 6-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172
[표 6-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72
[표 6-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73
[표 6-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74
[표 6-27]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5
[표 6-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77
[표 6-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78
[표 6-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79
[표 6-31]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80

[표 6-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81
[표 6-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81
[표 6-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82
[표 6-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183
[표 6-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83
[표 6-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184
[표 6-38]	노동력 착취 발생	185
[표 6-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86
[표 6-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87
[표 6-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88
[표 6-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88
[표 6-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89
[표 6-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90
[표 6-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91
[표 6-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93
[표 6-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94
[표 6-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95
[표 6-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95
[표 6-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96
[표 6-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98
[표 6-5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99
[표 6-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200
[표 6-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200



[표 6-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01
[표 6-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201
[표 6-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203
[표 6-58]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204
[표 6-5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05
[표 6-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6
[표 6-6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08
[표 6-6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09
[표 6-6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210
[표 6-6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211
[표 6-6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12
[표 6-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213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218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19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1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23
[표 7-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225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6
[표 7-7]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7
[표 7-8]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228
[표 7-9]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9
[표 7-10]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230
[표 7-11]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31
[표 7-12]	연도별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232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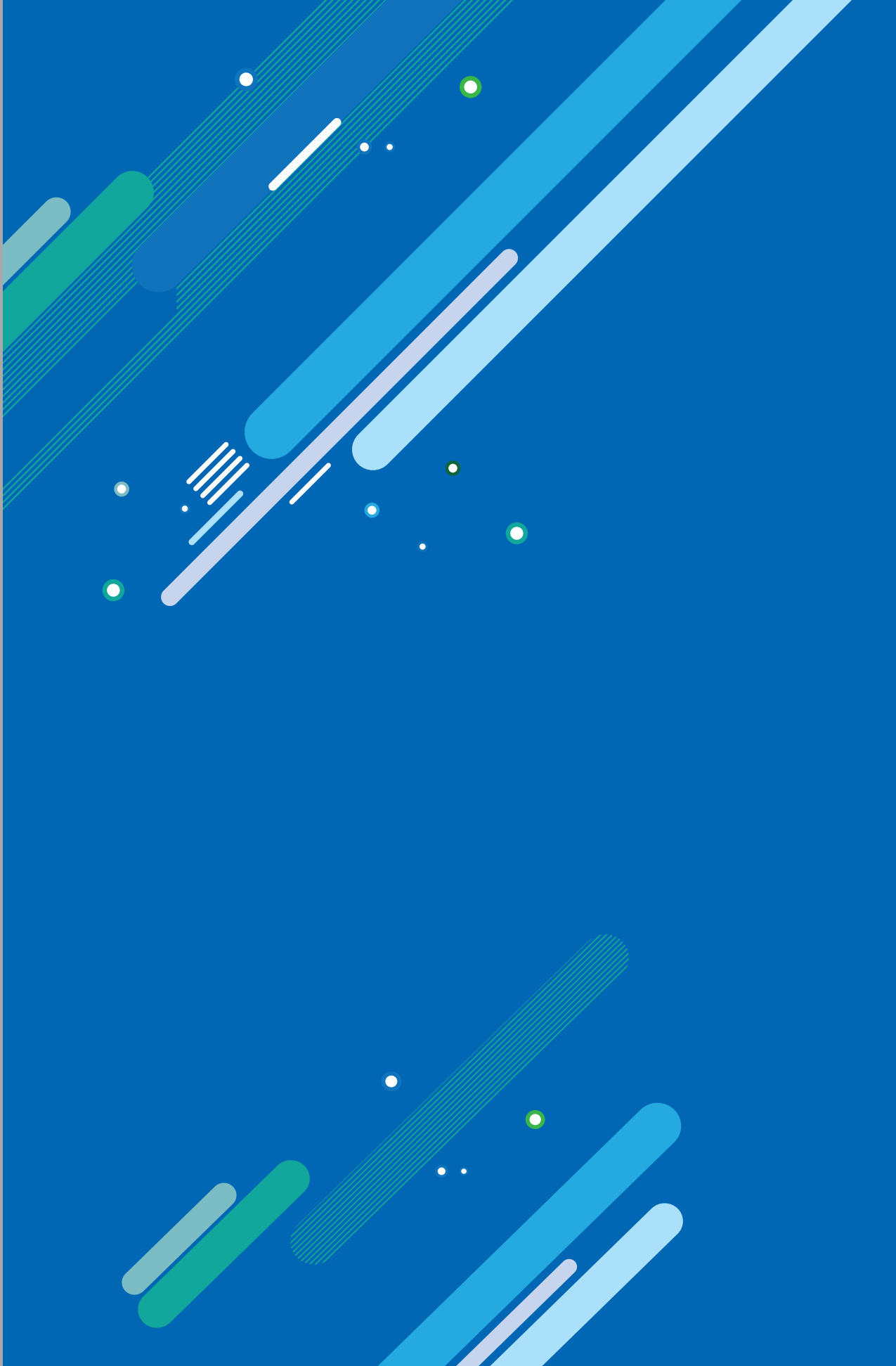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그림 2-1]	신고접수	62
[그림 2-2]	월별 신고접수	63
[그림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5
[그림 4-1]	신고자 유형	88
[그림 4-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91
[그림 4-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92
[그림 4-4]	전체 사례판정 결과	96
[그림 4-5]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98
[그림 4-6]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01
[그림 4-7]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103
[그림 5-1]	피해장애인 성별	107
[그림 5-2]	피해장애인 연령	108
[그림 5-3]	장애인 등록 여부	109
[그림 5-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110
[그림 5-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111
[그림 5-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2
[그림 5-7]	학대행위자 성별	113
[그림 5-8]	학대행위자 연령	114
[그림 5-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115
[그림 5-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117
[그림 5-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18
[그림 5-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21



[그림 5-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그림 5-14]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23
[그림 5-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24
[그림 5-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25
[그림 5-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30
[그림 5-18]	응급조치	136
[그림 5-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37
[그림 5-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42
[그림 6-1]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53
[그림 6-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55
[그림 6-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56
[그림 6-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59
[그림 6-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60
[그림 6-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1
[그림 6-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2
[그림 6-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66
[그림 6-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67
[그림 6-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70
[그림 6-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71
[그림 6-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73
[그림 6-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74
[그림 6-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6
[그림 6-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77

[그림 6-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79
[그림 6-17]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80
[그림 6-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84
[그림 6-19]	노동력 착취 발생	185
[그림 6-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86
[그림 6-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87
[그림 6-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89
[그림 6-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90
[그림 6-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92
[그림 6-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93
[그림 6-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94
[그림 6-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96
[그림 6-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05
[그림 6-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7
[그림 6-30]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09
[그림 6-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12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218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2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6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7
[그림 7-5]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228
[그림 7-6]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9
[그림 7-7]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31







용어설명

용어설명

기본개념

-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15가지로 나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따라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신고접수

-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알게되는 것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 일반사례: 개인적 분쟁, 차별,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 인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 기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접수한 사례를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에 따라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기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권한은 모두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 신고의무자: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이들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의무자라고 부름
 - 가족 및 친인척: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 유관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기관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아닌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인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피해자와 관련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 등
 - 파악 안 됨: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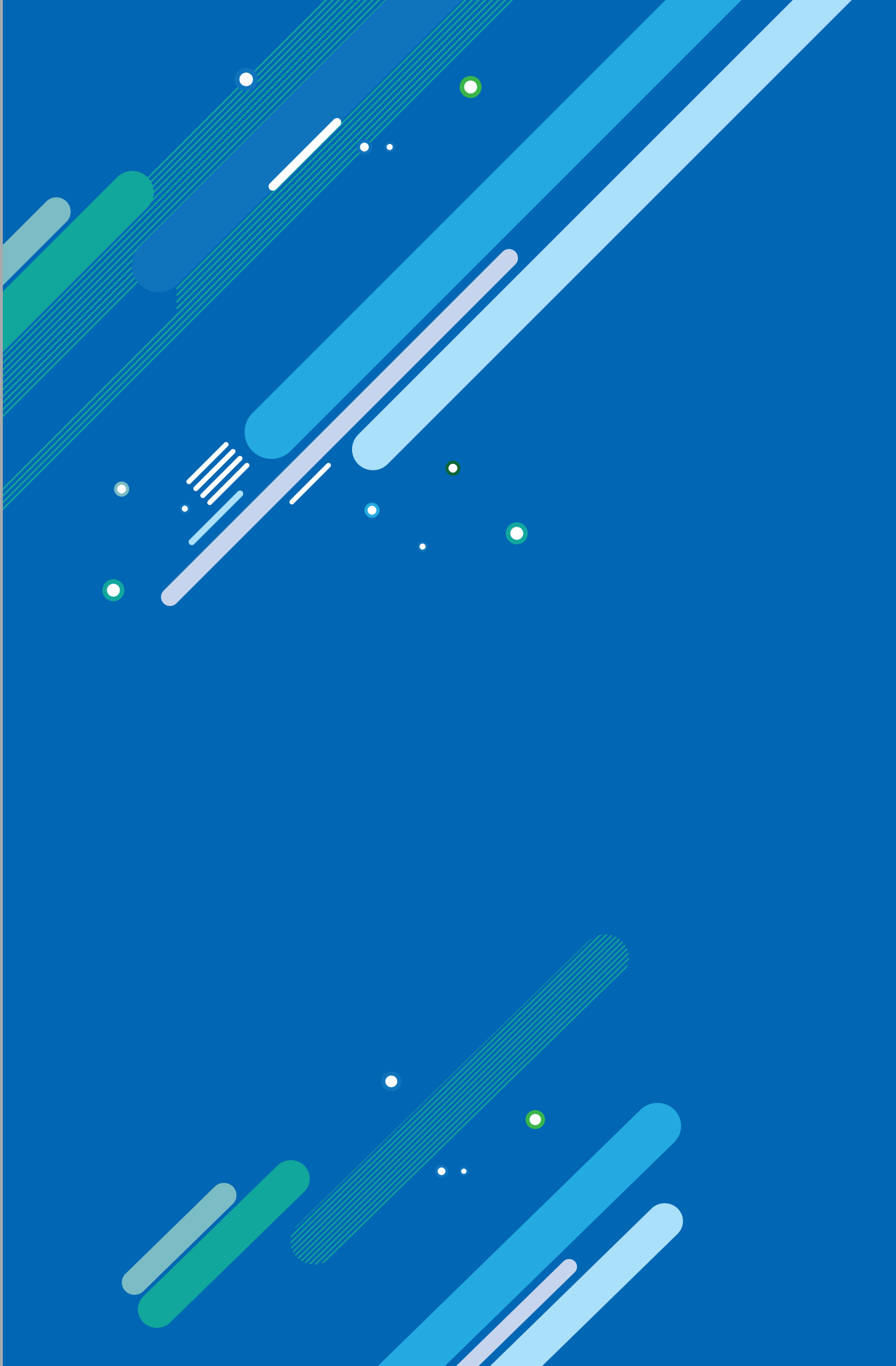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되기도 함
-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 사례판정: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 중 하나로 판정

구분	개념
장애인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단, 학대사례로 볼 수 없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고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료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되는 사례
-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도

피해자 등 지원

- ❖ 피해장애인 지원: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 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자 동석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영역의 복지지원,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교육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말함
 - 중재지원: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에 진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피해자의 진정과정을 돕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정 하기도 함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교육·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어떤 유형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지원을 실시하지 않음
-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사례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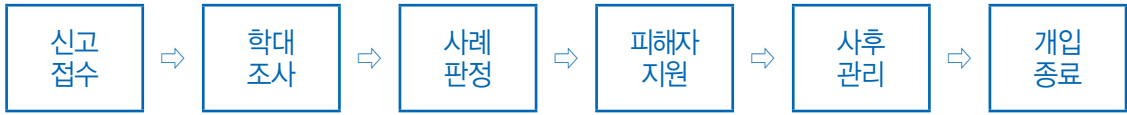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접수, 장애인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한다.

사례지원의 대상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학대행위자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의3에 따라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례지원의 대상이다.

사례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게 진행하며, 그 과정은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욕구를 우선하지 않는다.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신고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한다.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학대피해를 받았을 때 문자(SMS)와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 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나 질문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의 분리가 필요한 때에는 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다.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사례회의에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피해장애인에게 확인된 피해사실,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계속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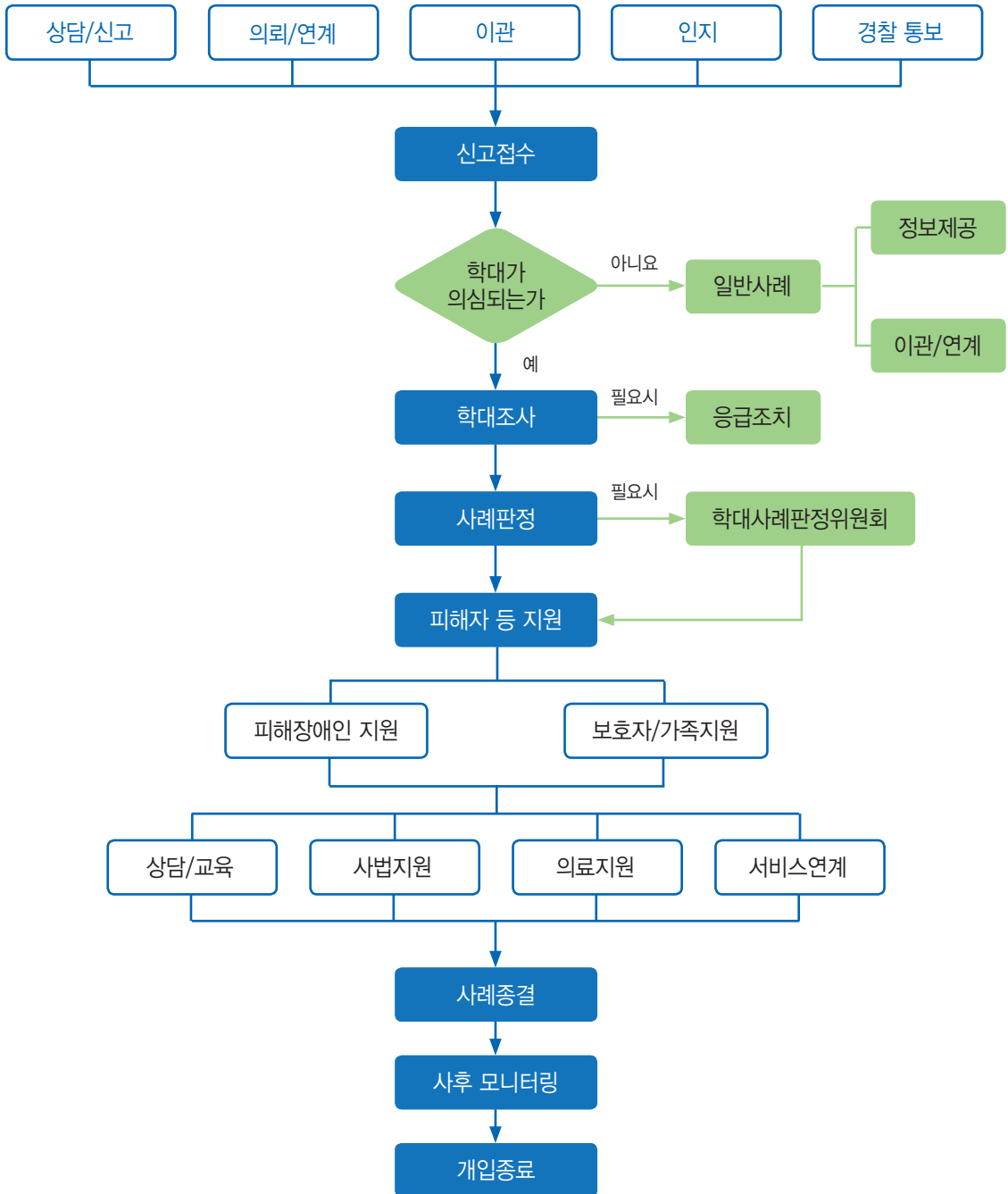
❖ 사후 모니터링

사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일정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나 안정적인 생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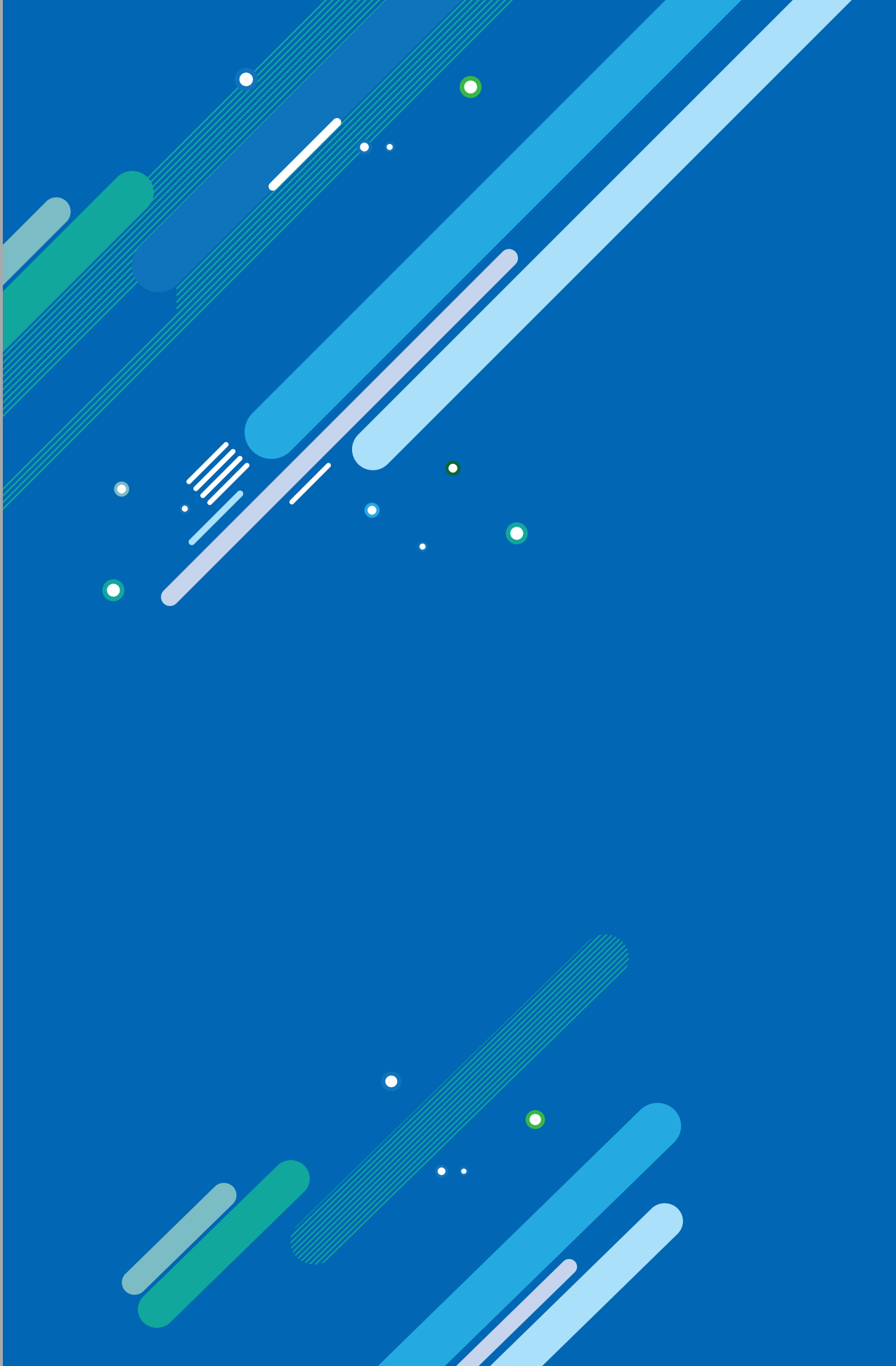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 개입종료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한다.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









주요 현황



주요 현황

- ※ 본 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4,20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 본 보고서는 신고접수 현황, 일반사례 현황, 학대의심사례 현황,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석, 장애인학대 유형분석,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함
- ※ 일부 항목의 경우 각 유형별 현황의 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항목 간 비교를 통해 많고 적음에 관한 의미부여 보다 전체 추이 파악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함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 ❖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208건이며 그중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49.2%), 일반사례는 2,139건(50.8%)임
- ❖ 지역별로 보면 경기 813건(19.3%), 서울 709건(16.8%), 부산 310건(7.4%), 인천 251건(6.0%) 순으로 접수됨

신고접수 경로

- ❖ 신고접수 경로는 신고 3,531건(83.9%), 경찰 통보 307건(7.3%), 인지 197건(4.7%), 연계 133건(3.2%), 이관 40건(1.0%) 순

일반사례 현황

- ❖ 일반사례 2,139건 중 정보문의 1,301건(60.8%), 기타 365건(17.1%), 불만·민원 294건(13.7%), 장애인차별 179건(8.4%)임
 - 장애인차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고용 29.1%(52건), 기타 16.2%(29건), 재화 및 용역 일반, 시설물 접근이 각각 12.8%(23건) 순으로 많았음

학대의심사례 현황

신고자

-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28건(35.2%),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341건(64.8%)이었음
 -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29건(45.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85건(25.4%), 초·중·고 교직원 69건(9.5%)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비신고의무자 중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94건(21.9%), 본인 274건(20.4%), 타인 192건(14.3%) 순으로 높았음

학대조사

- ❖ 학대의심사례 2,069건에 대한 학대조사 실시 건수는 1,975건으로 전체의 95.5%임
 - 학대조사 실시 횟수는 총 4,897회로 사례별 평균 2.5회의 조사가 이뤄짐

사례판정

- ❖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1,008건(48.7%), 비학대사례 683건(33.0%), 잠재위험사례 218건(10.5%), 조사 중인 사례 160건(7.7%)임

상담 및 지원

- ❖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한 학대의심사례 2,438건(2020년 이전 접수된 사례 369건, 2020년 접수된 사례 2,069건)에 대해 20,21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 사례별 8.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음
 -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총 62명으로 상담원 1인 평균 39.3건의 학대의심사례를 담당했으며 326.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사례종결

- ❖ 학대의심사례 중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된 사례는 1,470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71.0%임

학대사례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피해장애인

- ❖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남성이 48.5%(489명), 여성이 51.5%(519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3.0%p 높음
- ❖ 연령은 20대 27.4%(276명), 40대 17.5%(176명), 30대 17.2%(173명), 17세 이하 13.2%(133명) 순
-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5.3%(658건), 지체장애 9.8%(99건), 뇌병변장애 5.5%(55건) 순
- ❖ 재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전체 학대사례의 4.9%(49건)임

나. 학대행위자

- ❖ 성별은 남성이 67.4%(679명), 여성이 32.6%(329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1배 많음
- ❖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41.7%(420건), 가족 및 친인척 32.8%(331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3.5%(237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4%(14건), 파악 안 됨 0.4%(4건), 본인 0.2%(2건) 순이었음
 -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1%(20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 8.9%(90건), 모르는 사람 6.7%(68건), 모 6.5%(66건), 배우자 6.3%(63건), 고용주 6.2%(62건) 순이었음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394건), 장애인거주시설 14.9%(150건), 직장 9.8%(9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2%(93건) 순
- ❖ 장애인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36.4%(367건), 1~3년 미만이 17.3%(174건), 10년 이상이 12.1%(122건) 순

장애인학대 유형

가.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 경제적 착취 257건(25.5%), 신체적 학대 227건(22.5%), 중복 학대 226건(22.4%), 정서적 학대 141건(14.0%), 성적 학대 110건(10.9%), 방임 47건(4.7%) 순

나.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 신체적 학대 378건(29.9%), 경제적 착취 321건(25.4%), 정서적 학대 311건(24.6%), 성적 학대 134건(10.6%), 방임 120건(9.5%) 순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103건(전체 학대사례의 10.2%) 실시, 그중 쉼터로의 응급조치가 64.1%로 가장 많았음
- ❖ 피해장애인 지원은 총 11,620회 실시하였고 그중 상담지원 56.1%, 사법지원 14.6%, 거주지원, 복지지원 각각 8.0%, 기타지원 7.8% 순
 -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1,325건(2020년 이전 학대사례 317건, 2020년 학대사례 1,008건)에 대해 16,291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뤄졌으며 사례별 평균 12.3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짐
- ❖ 2020년 종결된 학대사례는 615건이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61.0%임
- ❖ 종결된 학대사례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은 70.7%(435건)임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69.6%(702건)이며, 전년도(680건) 대비 3.2% 증가함
 - 학대피해자는 남성이 51.0%(358명), 여성이 49.0%(344명)이었음
 -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67.1%(471명), 여성이 32.9%(231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음
 - 학대행위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1.8%(153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4%(143건), 부 10.0%(70건), 모 7.5%(53건), 모르는 사람 7.3%(51건) 순으로 많았음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8.0%, 장애인거주시설 16.2%, 학대행위자 거주지 9.5% 순
-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32.0%(283건), 경제적 착취 25.5%(225건), 정서적 학대 24.0%(212건), 성적 학대 10.2%(90건), 방임 8.4%(74건) 순으로 나타남

장애아동 학대사례

- ❖ 피해 장애아동 성별은 남성 54.1%(72명), 여성 45.9%(61명)이며, 연령은 13~15세 27.8%, 16~17세 25.6%, 10~12세 21.8%, 7~9세 20.3%, 3~6세 4.5% 순임
-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6.9%, 미등록 13.5%, 자폐성장애 9.8% 순으로 높았음
- ❖ 학대행위자는 부 26.3%, 모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 순임
- ❖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54.1%, 장애인복지시설 17.3%, 교육기관 13.5% 순으로 높았음
- ❖ 장애아동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35.7%(55건), 정서적 학대 31.8%(49건), 방임 16.9%(26건), 성적 학대 14.9%(23건), 경제적 착취 0.6%(1건) 순으로 나타남

노동력 착취사례

- ❖ 경제적 착취사례 321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는 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8.7%를 차지함
- ❖ 피해장애인 성별은 남성 63.6%(56명), 여성 36.4%(32명)로 남성이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은 40대(23.9%), 30대(19.3%), 50대(18.2%) 순이었음
-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59.1%, 지체장애 20.5%, 미등록 6.8% 순임
- ❖ 학대행위자는 고용주 54.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 순
- ❖ 발생장소는 직장 53.4%, 피해장애인 거주지 15.9%, 학대행위자 거주지 10.2% 순이었음
- ❖ 지속기간은 10년 이상이 43.2%, 1~3년 미만이 14.8%, 5~10년 미만이 12.5% 순으로 노동력 착취는 피해 지속 기간이 길었음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는 26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6.5%임
- ❖ 피해장애인은 남성 58.8%(157명), 여성 41.2%(110명)로 남성이 약 1.4배 많았으며 연령은 20대(28.5%), 19세 이하(20.2%), 30대(19.9%) 순이었음
-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0%, 지체장애 9.0%, 뇌병변장애 8.2% 순
- ❖ 발생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 56.2%, 교육기관 11.2%, 미신고시설 8.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7.5% 순
- ❖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34.5%, 1~3년 미만 16.5%, 3~6개월 미만 12.7% 순
- ❖ 집단이용시설 내 장애인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34.9%(128건), 신체적 학대 28.3%(104건), 방임 17.2%(63건) 경제적 착취 13.9%(51건), 성적 학대 5.7%(21건) 순





1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주요 분석항목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가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 대응 업무를 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장애인학대 통계 생산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학대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번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2020년 한해동안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노동력 착취사례 및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3년간의 장애인학대 발생 추이를 볼 수 있다.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민들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회의 장애인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과 정부 부처의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2. 법적근거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이번 분석자료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였다. 분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외된 데이터가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항목의 합계는 100.0%가 아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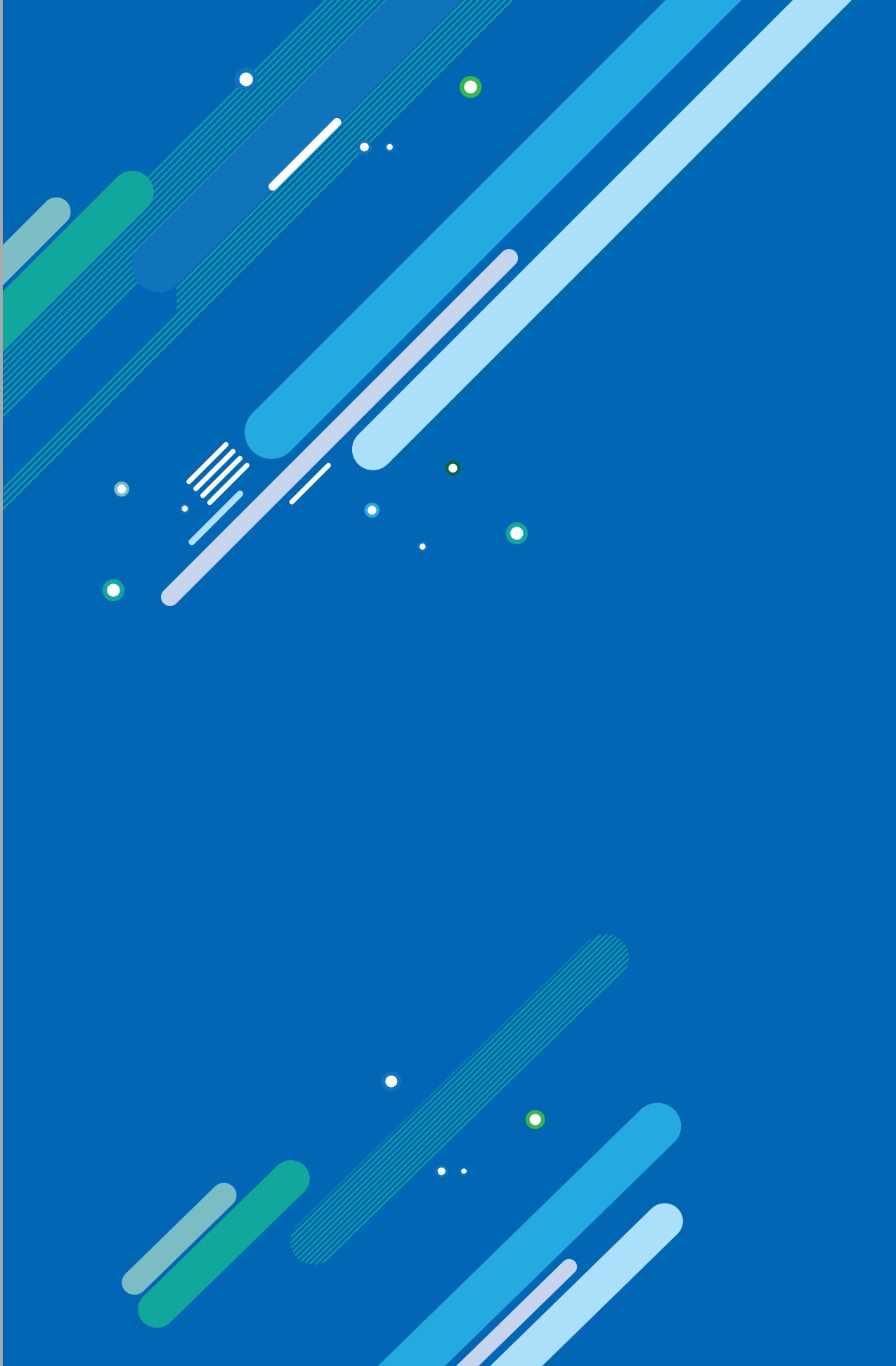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4. 주요 분석항목

본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분석항목

분류	분석항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월별, 지역·기관별, 시·군·구별 신고접수 • 신고접수 방법 • 신고접수 경로
일반사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례 유형 • 지역·기관별 신고접수 • 차별사례 현황
학대의심사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유형 • 학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역·기관별 학대조사 •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역·기관별 사례판정 •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p>학대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장애인(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재학대) - 학대행위자(성별, 연령,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장소,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장애인학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응급조치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현황,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유형,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
<p>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 장애아동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장애아동 학대유형,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 노동력 착취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장애인,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지속 기간,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p>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신고접수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 •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2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접수 경로

제2장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가. 전체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사례, 복지상담이나 기관 정보문의, 일반 법률상담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사회나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 등은 '일반사례'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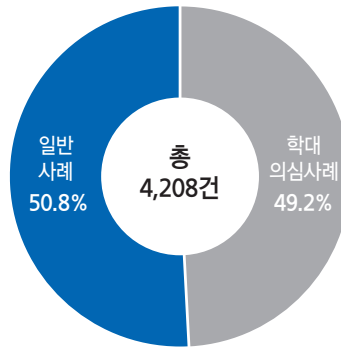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4,208건이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도 4,376건보다 3.8% 감소하였지만,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2,069건(49.2%)으로 전년도 1,923건보다 7.6% 증가하였다. 일반사례는 2,139건(50.8%) 접수되었다.

[표 2-1]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2,069	49.2	2,139	50.8	4,208	100.0

[그림 2-1] 신고접수



나. 월별 신고접수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월 평균 35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월 평균 172건, 일반사례는 월 평균 178건 접수되었다. 월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5월이 425건(10.1%)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다음으로 7월 403건(9.6%), 6월 380건(9.0%) 순이었다. 5월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도 363건보다 17.1% 증가한 수치로 전년도 대비 가장 증가율이 큰 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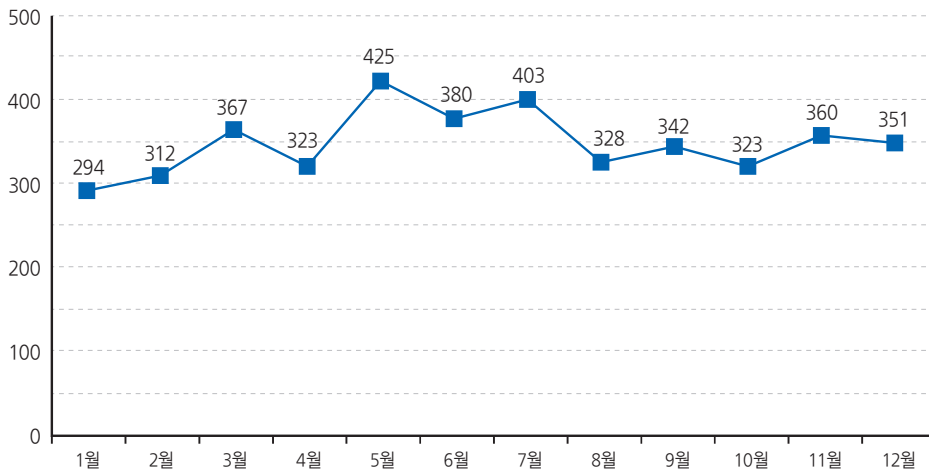
[표 2-2]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대	149	133	168	153	237	211	214	147	181	149	172	155	2,069
일반	145	179	199	170	188	169	189	181	161	174	188	196	2,139
계	294	312	367	323	425	380	403	328	342	323	360	351	4,208

[그림 2-2]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1개 지역 및 기관당 평균 233.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 및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 813건(19.3%)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서울 709건(16.8%), 부산 310건(7.4%), 인천 251건(6.0%) 등의 순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1개 지역 및 기관당 평균 114.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역시 경기도가 380건(1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196건(9.5%), 부산 161건(7.8%), 충북 141건(6.8%), 충남 136(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65건(3.1%)으로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적었고 전남 69건(3.3%), 세종 73건(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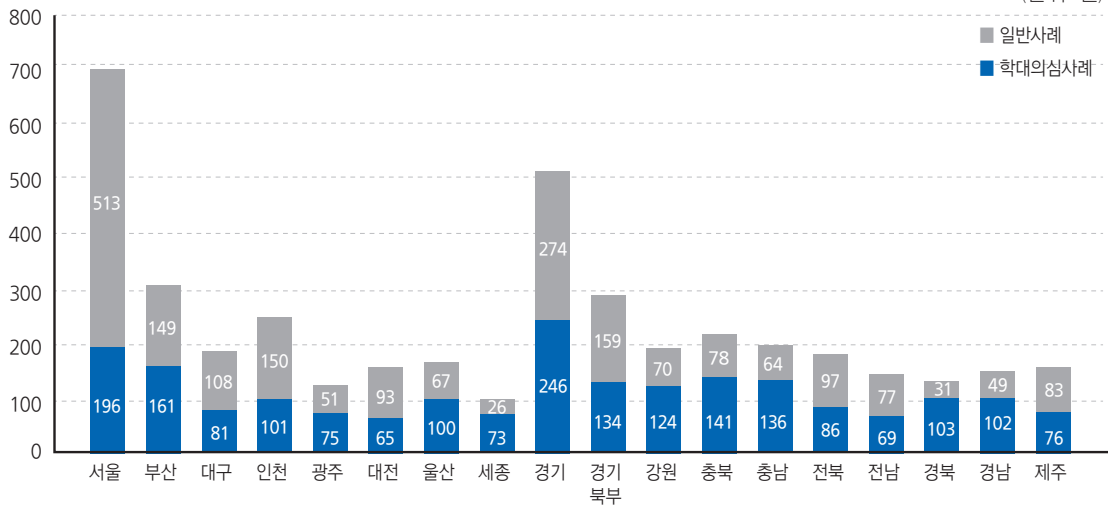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196	9.5	513	24.0	709	16.8	
부산	161	7.8	149	7.0	310	7.4	
대구	81	3.9	108	5.0	189	4.5	
인천	101	4.9	150	7.0	251	6.0	
광주	75	3.6	51	2.4	126	3.0	
대전	65	3.1	93	4.3	158	3.8	
울산	100	4.8	67	3.1	167	4.0	
세종	73	3.5	26	1.2	99	2.4	
경기	경기	246	11.9	274	12.8	520	12.4
	경기북부	134	6.5	159	7.4	293	7.0
	소계	380	18.4	433	20.2	813	19.3
강원	124	6.0	70	3.3	194	4.6	
충북	141	6.8	78	3.6	219	5.2	
충남	136	6.6	64	3.0	200	4.8	
전북	86	4.2	97	4.5	183	4.3	
전남	69	3.3	77	3.6	146	3.5	
경북	103	5.0	31	1.4	134	3.2	
경남	102	4.9	49	2.3	151	3.6	
제주	76	3.7	83	3.9	159	3.8	
계	2,069	100.0	2,139	100.0	4,208	100.0	

[그림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라. 시·군·구별 신고접수

피해장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443건(21.4%)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58건(7.6%), 충청북도 140건(6.8%), 서울특별시 139건(6.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 중에서는 단일 시·군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제주시 60건(2.9%), 가평군 56건(2.7%), 포천시 41건(2.0%), 태백시 37건(1.8%), 충주시 33건(1.6%), 부산 해운대구 30건(1.4%) 등의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표 2-4] 시·군·구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서울	종로구	2	1.4	0.1
	중구	3	2.2	0.1
	용산구	7	5.0	0.3
	성동구	-	-	-
	광진구	8	5.8	0.4
	동대문구	1	0.7	0.0
	중랑구	2	1.4	0.1
	성북구	4	2.9	0.2
	강북구	19	13.7	0.9
	도봉구	-	-	-
	노원구	11	7.9	0.5
	은평구	3	2.2	0.1
	서대문구	5	3.6	0.2
	마포구	6	4.3	0.3
	양천구	3	2.2	0.1
	강서구	10	7.2	0.5
	구로구	1	0.7	0.0
	금천구	9	6.5	0.4
	영등포구	3	2.2	0.1
	동작구	4	2.9	0.2
관악구	8	5.8	0.4	
서초구	1	0.7	0.0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서울	강남구	9	6.5	0.4
	송파구	10	7.2	0.5
	강동구	10	7.2	0.5
	소계	139	100.0	6.7
부산	중구	2	1.3	0.1
	서구	8	5.1	0.4
	동구	10	6.3	0.5
	영도구	7	4.4	0.3
	부산진구	7	4.4	0.3
	동래구	4	2.5	0.2
	남구	8	5.1	0.4
	북구	9	5.7	0.4
	해운대구	30	19.0	1.4
	사하구	13	8.2	0.6
	금정구	8	5.1	0.4
	강서구	7	4.4	0.3
	연제구	13	8.2	0.6
	수영구	5	3.2	0.2
	사상구	22	13.9	1.1
	기장군	5	3.2	0.2
소계	158	100.0	7.6	
대구	중구	5	6.3	0.2
	동구	11	13.8	0.5
	서구	2	2.5	0.1
	남구	17	21.3	0.8
	북구	7	8.8	0.3
	수성구	8	10.0	0.4
	달서구	16	20.0	0.8
	달성군	14	17.5	0.7
	소계	80	100.0	3.9
인천	중구	6	6.1	0.3
	동구	2	2.0	0.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인천	연수구	8	8.2	0.4
	남동구	16	16.3	0.8
	부평구	21	21.4	1.0
	계양구	3	3.1	0.1
	서구	8	8.2	0.4
	미추홀구	26	26.5	1.3
	강화군	6	6.1	0.3
	옹진군	2	2.0	0.1
	소계	98	100.0	4.7
광주	동구	3	4.2	0.1
	서구	22	30.6	1.1
	남구	6	8.3	0.3
	북구	19	26.4	0.9
	광산구	22	30.6	1.1
	소계	72	100.0	3.5
대전	동구	20	32.3	1.0
	중구	15	24.2	0.7
	서구	9	14.5	0.4
	유성구	8	12.9	0.4
	대덕구	10	16.1	0.5
	소계	62	100.0	3.0
울산	중구	27	27.6	1.3
	남구	26	26.5	1.3
	동구	12	12.2	0.6
	북구	10	10.2	0.5
	울주군	23	23.5	1.1
	소계	98	100.0	4.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73	100.0	3.5
	소계	73	100.0	3.5
경기	수원시 장안구	4	0.9	0.2
	수원시 권선구	9	2.0	0.4
	수원시 팔달구	6	1.4	0.3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기	수원시 영통구	5	1.1	0.2
	성남시 수정구	8	1.8	0.4
	성남시 중원구	2	0.5	0.1
	성남시 분당구	4	0.9	0.2
	의정부시	12	2.7	0.6
	안양시 만안구	3	0.7	0.1
	안양시 동안구	2	0.5	0.1
	부천시	25	5.6	1.2
	광명시	3	0.7	0.1
	평택시	29	6.5	1.4
	동두천시	1	0.2	0.0
	안산시 상록구	4	0.9	0.2
	안산시 단원구	3	0.7	0.1
	고양시 덕양구	11	2.5	0.5
	고양시 일산동구	8	1.8	0.4
	고양시 일산서구	3	0.7	0.1
	과천시	-	-	-
	구리시	5	1.1	0.2
	남양주시	24	5.4	1.2
	오산시	2	0.5	0.1
	시흥시	12	2.7	0.6
	군포시	2	0.5	0.1
	의왕시	-	-	-
	하남시	9	2.0	0.4
	용인시 처인구	4	0.9	0.2
	용인시 기흥구	11	2.5	0.5
	용인시 수지구	-	-	-
	파주시	11	2.5	0.5
	이천시	16	3.6	0.8
	안성시	10	2.3	0.5
김포시	14	3.2	0.7	
화성시	22	5.0	1.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기	광주시	20	4.5	1.0
	양주시	10	2.3	0.5
	포천시	41	9.3	2.0
	여주시	5	1.1	0.2
	연천군	4	0.9	0.2
	가평군	56	12.6	2.7
	양평군	23	5.2	1.1
	소계	443	100.0	21.4
강원	춘천시	29	23.2	1.4
	원주시	9	7.2	0.4
	강릉시	12	9.6	0.6
	동해시	6	4.8	0.3
	태백시	37	29.6	1.8
	속초시	3	2.4	0.1
	삼척시	3	2.4	0.1
	홍천군	6	4.8	0.3
	횡성군	3	2.4	0.1
	영월군	2	1.6	0.1
	평창군	2	1.6	0.1
	정선군	1	0.8	0.0
	철원군	4	3.2	0.2
	화천군	1	0.8	0.0
	양구군	3	2.4	0.1
	인제군	1	0.8	0.0
	고성군	1	0.8	0.0
	양양군	2	1.6	0.1
소계	125	100.0	6.0	
충북	충주시	33	23.6	1.6
	제천시	4	2.9	0.2
	청주시 상당구	23	16.4	1.1
	청주시 서원구	15	10.7	0.7
	청주시 흥덕구	13	9.3	0.6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충북	청주시 청원구	14	10.0	0.7
	보은군	1	0.7	0.0
	옥천군	9	6.4	0.4
	영동군	1	0.7	0.0
	진천군	6	4.3	0.3
	괴산군	4	2.9	0.2
	음성군	10	7.1	0.5
	단양군	3	2.1	0.1
	증평군	4	2.9	0.2
	소계	140	100.0	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11	8.4	0.5
	천안시 서북구	23	17.6	1.1
	공주시	7	5.3	0.3
	보령시	5	3.8	0.2
	아산시	25	19.1	1.2
	서산시	12	9.2	0.6
	논산시	9	6.9	0.4
	계룡시	-	-	-
	당진시	12	9.2	0.6
	금산군	2	1.5	0.1
	부여군	7	5.3	0.3
	서천군	2	1.5	0.1
	청양군	-	-	-
	홍성군	9	6.9	0.4
	예산군	5	3.8	0.2
	태안군	2	1.5	0.1
	소계	131	100.0	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11	12.5	0.5
	전주시 덕진구	7	8.0	0.3
	군산시	21	23.9	1.0
	익산시	5	5.7	0.2
	정읍시	10	11.4	0.5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전북	남원시	5	5.7	0.2
	김제시	5	5.7	0.2
	완주군	2	2.3	0.1
	진안군	-	-	-
	무주군	13	14.8	0.6
	장수군	-	-	-
	임실군	2	2.3	0.1
	순창군	1	1.1	0.0
	고창군	4	4.5	0.2
	부안군	2	2.3	0.1
	소계	88	100.0	4.3
전남	목포시	20	27.0	1.0
	여수시	3	4.1	0.1
	순천시	4	5.4	0.2
	나주시	9	12.2	0.4
	광양시	1	1.4	0.0
	담양군	2	2.7	0.1
	곡성군	2	2.7	0.1
	구례군	-	-	-
	고흥군	4	5.4	0.2
	보성군	1	1.4	0.0
	회순군	-	-	-
	장흥군	2	2.7	0.1
	강진군	-	-	-
	해남군	4	5.4	0.2
	영암군	2	2.7	0.1
	무안군	4	5.4	0.2
	함평군	4	5.4	0.2
	영광군	7	9.5	0.3
	장성군	-	-	-
	완도군	2	2.7	0.1
진도군	1	1.4	0.0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전남	신안군	2	2.7	0.1
	소계	74	100.0	3.6
경북	포항시 남구	16	15.1	0.8
	포항시 북구	11	10.4	0.5
	경주시	13	12.3	0.6
	김천시	8	7.5	0.4
	안동시	3	2.8	0.1
	구미시	15	14.2	0.7
	영주시	2	1.9	0.1
	영천시	9	8.5	0.4
	상주시	3	2.8	0.1
	문경시	4	3.8	0.2
	경산시	2	1.9	0.1
	군위군	-	-	-
	의성군	2	1.9	0.1
	청송군	3	2.8	0.1
	영양군	1	0.9	0.0
	영덕군	3	2.8	0.1
	청도군	-	-	-
	고령군	1	0.9	0.0
	성주군	1	0.9	0.0
	칠곡군	1	0.9	0.0
	예천군	2	1.9	0.1
	봉화군	-	-	-
	울진군	6	5.7	0.3
	울릉군	-	-	-
	소계	106	100.0	5.1
	경남	진주시	8	7.6
통영시		9	8.6	0.4
사천시		2	1.9	0.1
김해시		2	1.9	0.1
밀양시		3	2.9	0.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남	거제시	22	21.0	1.1
	양산시	9	8.6	0.4
	창원시 의창구	8	7.6	0.4
	창원시 성산구	4	3.8	0.2
	창원시 마산합포구	13	12.4	0.6
	창원시 마산회원구	1	1.0	0.0
	창원시 진해구	10	9.5	0.5
	의령군	1	1.0	0.0
	함안군	-	-	-
	창녕군	5	4.8	0.2
	고성군	2	1.9	0.1
	남해군	3	2.9	0.1
	하동군	-	-	-
	산청군	1	1.0	0.0
	함양군	1	1.0	0.0
	거창군	-	-	-
	합천군	1	1.0	0.0
	소계	105	100.0	5.1
	제주	제주시	60	77.9
서귀포시		17	22.1	0.8
소계		77	100.0	3.7
계		2,069	100.0	100.0

2.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신고,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문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신고자는 전화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이는 전체 신고의 74.0%인 3,115건이었다. 다음으로 팩스 신고가 313건(7.4%), 내방 신고가 260건(6.2%), 온라인 신고 256건(6.1%)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팩스 신고는 전년도(64건, 1.5%) 대비 389.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경찰이 팩스를 이용하여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통보하고 있어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인지	기타	계
3,115	256	10	313	7	260	197	50	4,208
74.0	6.1	0.2	7.4	0.2	6.2	4.7	1.2	100.0

3. 신고접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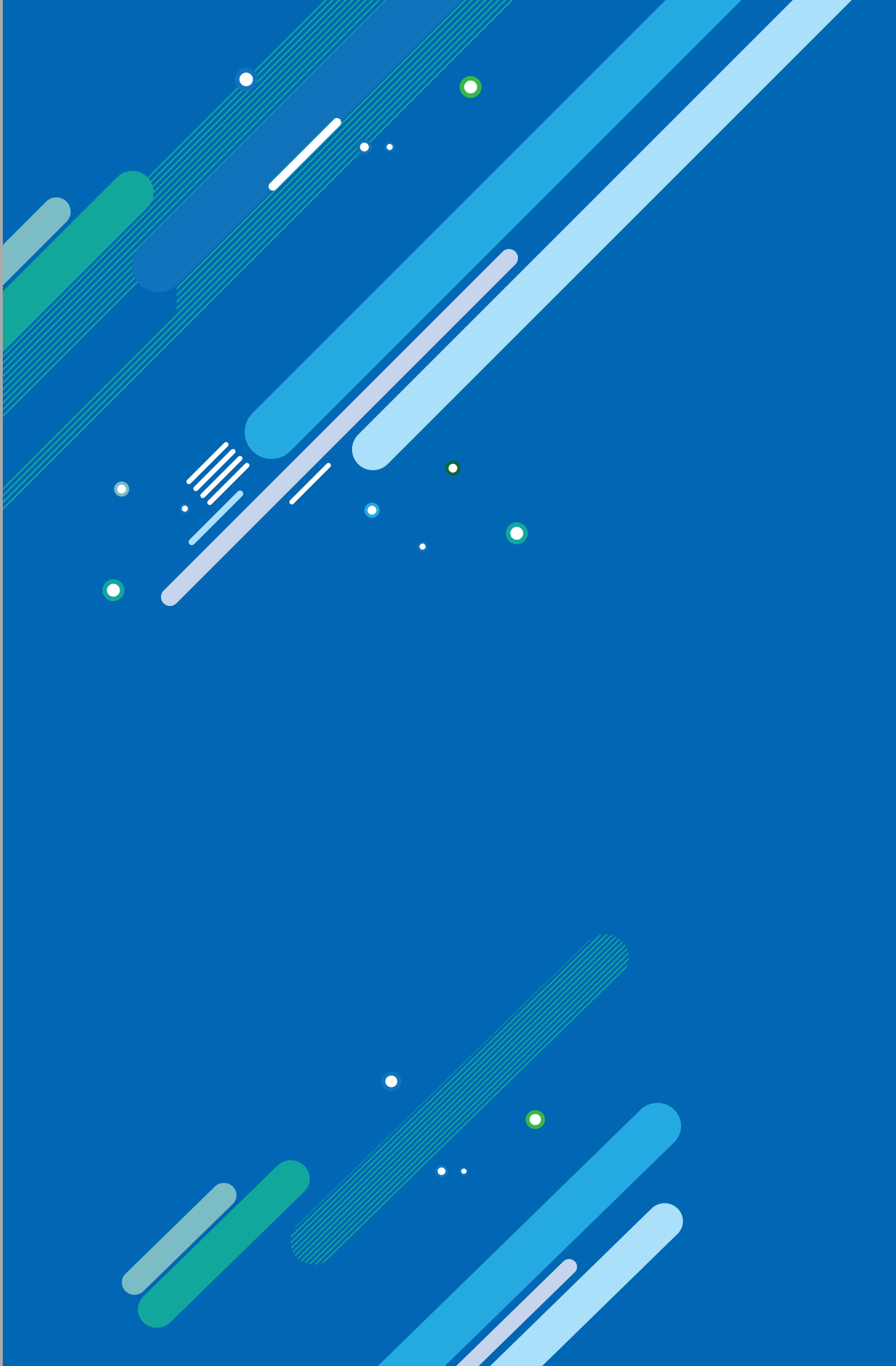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개인이 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다. 인지만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방법이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2020년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신고가 3,531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경찰통보가 307건(7.3%), 인지 197건(4.7%), 연계 133건(3.2%), 이관 40건(1.0%) 순이었다.

[표 2-6] 전체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	계
3,531	197	40	133	307	4,208
83.9	4.7	1.0	3.2	7.3	100.0





3

일반사례 현황

1. 일반사례 유형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3. 차별사례 현황

제3장

일반사례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의심사례 외에 장애인차별, 정보문의, 불만 또는 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한다. 일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 장애인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위해 당사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일반사례 유형

2020년 신고접수된 일반사례는 2,13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 건수 4,208건의 50.8%이다. 일반사례는 정보문의가 1,301건(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 365건(17.1%), 불만 및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294건(13.7%), 장애인차별 관련 사례 179건(8.4%)이었다.

[표 3-1]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179	1,301	294	365	2,139
8.4	60.8	13.7	17.1	100.0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이 513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 433건(20.2%), 인천 150건(7.0%), 부산 149건(7.0%) 등의 순이었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서울	31 17.3	339 26.1	68 23.1	75 20.5	513 24.0	
부산	10 5.6	110 8.5	19 6.5	10 2.7	149 7.0	
대구	4 2.2	78 6.0	5 1.7	21 5.8	108 5.0	
인천	4 2.2	73 5.6	44 15.0	29 7.9	150 7.0	
광주	3 1.7	29 2.2	12 4.1	7 1.9	51 2.4	
대전	2 1.1	46 3.5	19 6.5	26 7.1	93 4.3	
울산	6 3.4	26 2.0	16 5.4	19 5.2	67 3.1	
세종	1 0.6	10 0.8	6 2.0	9 2.5	26 1.2	
경기	경기	58 32.4	135 10.4	14 4.8	67 18.4	274 12.8
	경기북부	18 10.1	125 9.6	- -	16 4.4	159 7.4
	소계	76 42.5	260 20.0	14 4.8	83 22.7	433 20.2
강원	2 1.1	45 3.5	21 7.1	2 0.5	70 3.3	
충북	5 2.8	48 3.7	9 3.1	16 4.4	78 3.6	
충남	3 1.7	54 4.2	3 1.0	4 1.1	64 3.0	
전북	3 1.7	71 5.5	12 4.1	11 3.0	97 4.5	
전남	6 3.4	39 3.0	20 6.8	12 3.3	77 3.6	
경북	1 0.6	14 1.1	6 2.0	10 2.7	31 1.4	
경남	16 8.9	10 0.8	2 0.7	21 5.8	49 2.3	
제주	6 3.4	49 3.8	18 6.1	10 2.7	83 3.9	
계	179 100.0	1,301 100.0	294 100.0	365 100.0	2,139 100.0	

3. 차별사례 현황

가. 차별사례 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차별사례가 접수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세부 유형으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가 있다.

2020년 신고접수된 차별사례는 179건이며 고용 52건(29.1%)과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기타 사례가 29건(16.2%), 재화 및 용역일반, 시설물 접근에 관한 사례가 각각 23건(12.8%)이었다.

[표 3-3] 차별사례 유형

(단위: 건, %)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	계
52	10	23	2	23	19	5	1	15	—	29	179
29.1	5.6	12.8	1.1	12.8	10.6	2.8	0.6	8.4	—	16.2	100.0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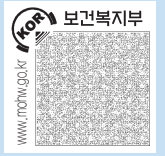
차별사례가 접수되면 사례의 내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결과는 세부적으로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고발·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조정·중재, 정보제공, 조사 중 해결, 정서적지지, 타기관 및 자원 연계, 당사자 대응포기, 기타, 지원 대상 아님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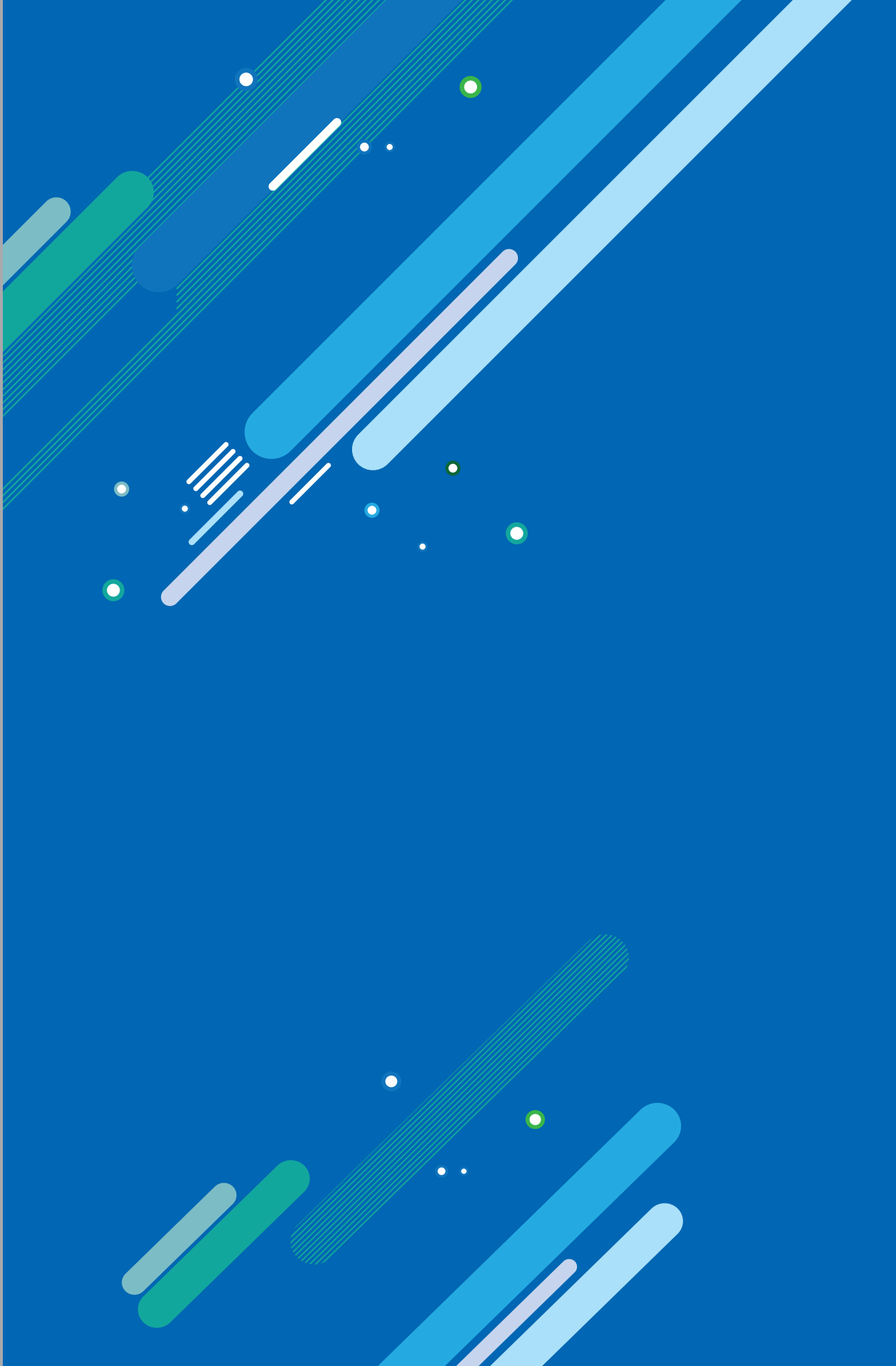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사례 19건을 제외하고 총 160건의 차별사례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62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7건(9.5%), 조정·중재 16건(8.9%) 등의 순이었다.

[표 3-4] 차별사례 지원결과

(단위: 건, %)

처리결과	건수	비율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10	5.6
고발·수사의뢰	1	0.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5	2.8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7	9.5
소송구조	-	-
조정·중재	16	8.9
정보 제공	62	34.6
조사 중 해결	7	3.9
정서적 지지	12	6.7
타기관 및 자원 연계	9	5.0
당사자 대응포기	3	1.7
기타	9	5.0
지원 대상 아님	9	5.0
미종료	19	10.6
계	179	100.0







4

학대의심사례 현황

1. 신고자
2. 학대조사
3. 사례판정
4. 상담 및 지원
5. 사례종결

제4장

학대의심사례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신고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여 사례지원을 실시한다. 2020년 신고접수 4,208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으로 전체의 49.2%로 나타났다.

1. 신고자

가.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군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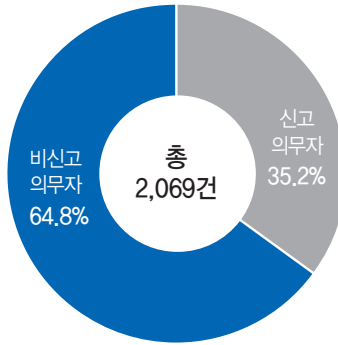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28건(35.2%)으로 전년도(858건) 대비 15.2% 감소하였다. 반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341건(64.8%)으로 전년도(1,065건) 대비 25.9% 증가하였다.

[표 4-1]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728	35.2	1,341	64.8	2,069	100.0

[그림 4-1] 신고자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인식하고,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등,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5.2%(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5.4%(185건), 초·중·고 교직원 9.5%(69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71건)에 의한 신고는 11.3% 감소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308건)에 의한 신고는 39.9% 감소하였다. 반면 초·중·고 교직원 등에 의한 신고는 41건에서 69건으로 68.3%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구급대의 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새롭게 접수되었다. 반면 응급구조사,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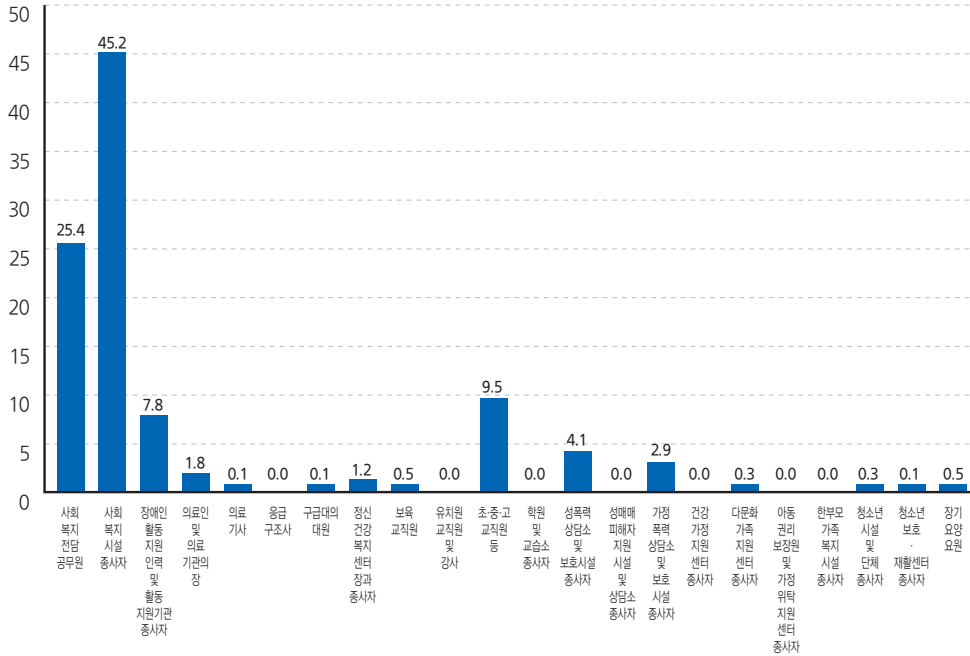
[표 4-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건수	비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85	25.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9	45.2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7	7.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3	1.8
의료기사	1	0.1
응급구조사	-	-
구급대의 대원	1	0.1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9	1.2
보육교직원	4	0.5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초·중·고 교직원 등	69	9.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30	4.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1	2.9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	0.3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	0.3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4	0.5
계	728	100.0

[그림 4-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341건으로 전년도 1,065건 대비 25.9% 증가하였다.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29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20.4%),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238건(17.7%), 타인이 신고한 경우는 192건(14.3%), 신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8건(0.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94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274건(20.4%), 타인 192건(14.3%), 경찰공무원 141건(10.5%), 부모 97건(7.2%), 형제자매 63건(4.7%), 일반공무원과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가 각각 50건(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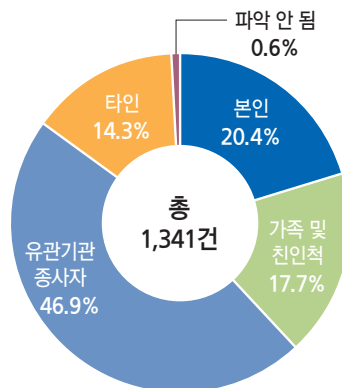
2020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피해자 본인과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 본인(162건)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69.1% 증가하였고, 유관기관 종사자(379건)의 신고는 66.0% 증가하였다.

[표 4-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건수	비율
본인		274	20.4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9	0.7
	부모	97	7.2
	자녀	26	1.9
	형제자매	63	4.7
	친인척	43	3.2
	소계	238	17.7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50	3.7
	경찰공무원	141	10.5
	공공기관 종사자	20	1.5
	교육기관 종사자	16	1.2
	의료기관 종사자	6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94	21.9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6	1.2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6	2.7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50	3.7
	소계	629	46.9
타인		192	14.3
파악 안 됨		8	0.6
계		1,341	100.0

[그림 4-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2020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신고를 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체 학대의심사례 신고의 13.2%를 차지하였다. 직접 학대신고를 한 본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2.3%(116건)로 가장 높았고, 지체장애 20.8%(57건), 뇌병변장애 9.1%(25건), 정신장애와 미등록인 경우가 각각 8.4%(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57	20.8
뇌병변장애	25	9.1
시각장애	14	5.1
청각장애	10	3.6
지적장애	116	42.3
자폐성장애	1	0.4
정신장애	23	8.4
뇌전증장애	5	1.8
미등록	23	8.4
계	274	100.0

2. 학대조사

가. 전체 학대조사

장애인학대조사란 신고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모두 조사해야하나 이미 경찰이나 유관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 조사실시율은 100.0%가 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에 접수된 사례의 학대조사가 2021년에 이뤄진 경우 2020년 학대조사실시율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조사율은 더 높을 수 있다.

2020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975건을 조사했으며, 조사실시율은 95.5%로 전년도(1,721건, 89.5%)와 비교했을 때 6.0%p 증가하였다. 또한 학대조사 횟수는 4,897건으로 사례별 평균 2.5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5] 전체 학대조사

(단위: 건, 회, %)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	학대조사실시율	학대조사 횟수 ¹⁾	사례별 조사 횟수
2,069	1,975	95.5	4,897	2.5

1) 2020년부터 학대조사 건수 외 조사횟수도 집계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차례 조사를 하더라도 1회의 조사만 조사횟수로 집계하였으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2020년부터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 1회의 조사로 보고, 조사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다른 경우에 각 1회의 조사로 집계하였다. 또한 1회 조사에 조사대상이 1명 이상이라도 조사는 1회로 집계하였다.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실시율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제주가 각각 10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강원 99.2%, 세종 98.6%, 충남 98.5%, 울산 98.0% 등의 순으로 조사실시율이 높았으며 경남 87.3%, 경기 87.4%, 경북 89.3% 순으로 조사실시율이 낮았다.

[표 4-6]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단위: 건, %, 회)

구분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건수	학대조사실시율	학대조사 횟수	
서울	196	196	100.0	352	
부산	161	161	100.0	396	
대구	81	81	100.0	330	
인천	101	96	95.0	243	
광주	75	75	100.0	276	
대전	65	65	100.0	109	
울산	100	98	98.0	434	
세종	73	72	98.6	237	
경기	경기	246	212	86.2	359
	경기북부	134	120	89.6	244
	소계	380	332	87.4	603
강원	124	123	99.2	207	
충북	141	138	97.9	334	
충남	136	134	98.5	272	
전북	86	78	90.7	211	
전남	69	69	100.0	246	
경북	103	92	89.3	251	
경남	102	89	87.3	156	
제주	76	76	100.0	240	
계	2,069	1,975	95.5	4,897	

3. 사례판정

가. 전체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회의에서 판정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조사 중인 사례는 해당 연도에 신고접수되었으나 학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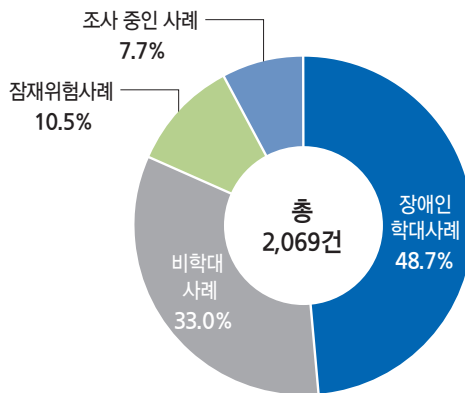
2020년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으며, 비학대사례는 683건(33.0%), 잠재위험사례는 218건(10.5%), 조사 중인 사례는 160건(7.7%)이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전년도(945건) 대비 6.7% 증가했으며, 잠재위험사례(195건)는 11.8% 증가하였다. 반면 비학대사례(783건)는 12.8% 감소하였다.

[표 4-7] 전체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계	
1,008	48.7	683	33.0	218	10.5	160	7.7	2,069	100.0

[그림 4-4] 전체 사례판정 결과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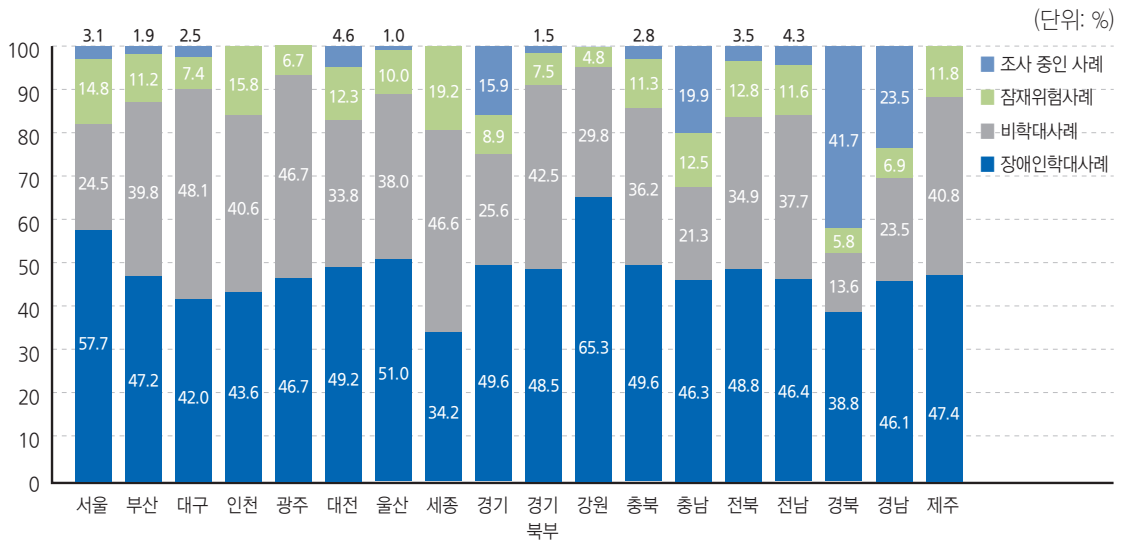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65.3%), 서울(57.7%), 울산(51.0%) 등의 순이었다. 비학대사례 판정율은 대구(48.1%), 광주(46.7%), 세종(46.6%) 등의 순이었으며, 잠재위험사례 판정율은 세종(19.2%), 인천(15.8%), 서울(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구분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계	
서울		113	57.7	48	24.5	29	14.8	6	3.1	196	100.0
부산		76	47.2	64	39.8	18	11.2	3	1.9	161	100.0
대구		34	42.0	39	48.1	6	7.4	2	2.5	81	100.0
인천		44	43.6	41	40.6	16	15.8	-	-	101	100.0
광주		35	46.7	35	46.7	5	6.7	-	-	75	100.0
대전		32	49.2	22	33.8	8	12.3	3	4.6	65	100.0
울산		51	51.0	38	38.0	10	10.0	1	1.0	100	100.0
세종		25	34.2	34	46.6	14	19.2	-	-	73	100.0
경기	경기	122	49.6	63	25.6	22	8.9	39	15.9	246	100.0
	경기북부	65	48.5	57	42.5	10	7.5	2	1.5	134	100.0
	소계	187	49.2	120	31.6	32	8.4	41	10.8	380	100.0
강원		81	65.3	37	29.8	6	4.8	-	-	124	100.0
충북		70	49.6	51	36.2	16	11.3	4	2.8	141	100.0
충남		63	46.3	29	21.3	17	12.5	27	19.9	136	100.0
전북		42	48.8	30	34.9	11	12.8	3	3.5	86	100.0
전남		32	46.4	26	37.7	8	11.6	3	4.3	69	100.0
경북		40	38.8	14	13.6	6	5.8	43	41.7	103	100.0
경남		47	46.1	24	23.5	7	6.9	24	23.5	102	100.0
제주		36	47.4	31	40.8	9	11.8	-	-	76	100.0
계		1,008	48.7	683	33.0	218	10.5	160	7.7	2,069	100.0

[그림 4-5]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4.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2020년 신규로 접수된 사례 외에 2020년 이전에 접수되어 2020년에도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2020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2020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2,069건)와 2020년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학대의심사례(369건) 총 2,438건에 대해 20,21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8.3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이전 사례(369건)에 대해 2020년 5,056회 상담 및 지원을 하였으며 사례별 평균 13.7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2020년 사례 2,069건에 대해 2020년 15,159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7.3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2020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2020년 이전	369	5,056	13.7
2020년	2,069	15,159	7.3
계	2,438	20,215	8.3

나.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20년 상담 및 지원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 3,449회, 서울 2,641회, 전남 2,592회, 강원 2,083회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를 살펴보면 전남이 31.2회로 가장 많은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강원 12.7회, 서울 11.2회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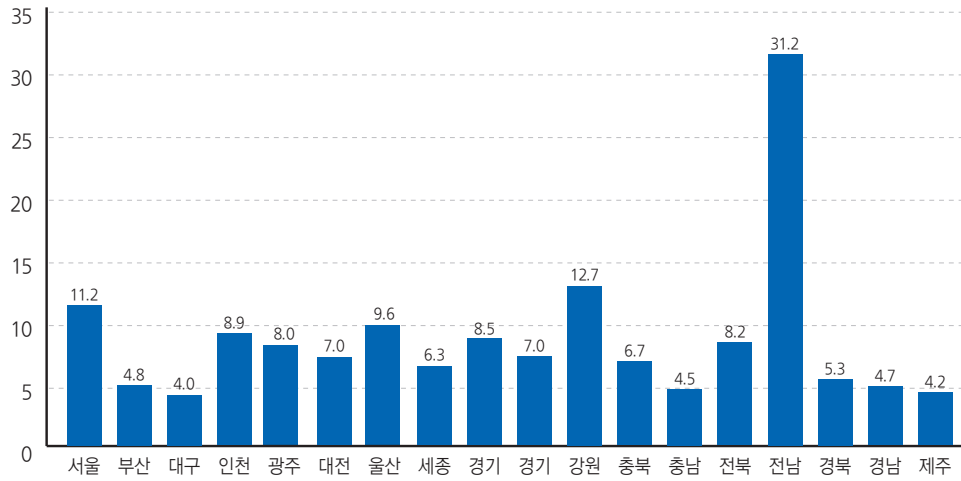
[표 4-10]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20년 이전		2020년		계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39	810	196	1,831	235	2,641	11.2	
부산	31	240	161	684	192	924	4.8	
대구	30	111	81	328	111	439	4.0	
인천	27	218	101	917	128	1,135	8.9	
광주	12	76	75	618	87	694	8.0	
대전	6	70	65	430	71	500	7.0	
울산	13	164	100	922	113	1,086	9.6	
세종	11	145	73	384	84	529	6.3	
경기	경기	32	445	246	1,912	278	2,357	8.5
	경기북부	21	214	134	878	155	1,092	7.0
	소계	53	659	380	2,790	433	3,449	8.0
강원	40	656	124	1,427	164	2,083	12.7	
충북	21	302	141	785	162	1,087	6.7	
충남	14	86	136	585	150	671	4.5	
전북	16	310	86	524	102	834	8.2	
전남	14	863	69	1,729	83	2,592	31.2	
경북	9	173	103	422	112	595	5.3	
경남	22	143	102	444	124	587	4.7	
제주	11	30	76	339	87	369	4.2	
계	369	5,056	2,069	15,159	2,438	20,215	8.3	

[그림 4-6]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2020년 지역 및 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39.3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326.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상담원 1인 평균 42.8건, 459.0회 상담 및 지원)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 1인 담당사례 건수는 평균 3.5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33.0회 감소하였다.

부산의 경우 상담원 1인 평균 96.0회의 사례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2.4배 높은 수치이다. 충북은 81.0건, 충남 75.0건, 경북 56.0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원 1인이 한 해 동안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전남이 864.0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충북 543.5회, 강원 520.8회, 부산 462.0회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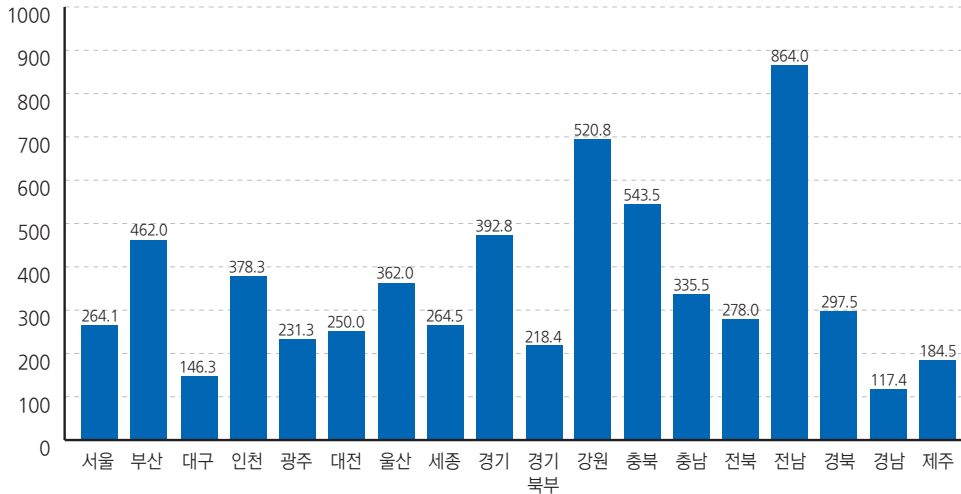
[표 4-11]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단위: 명, 건, 회)

구분	상담원 ²⁾	학대의심 사례	상담원 1인 평균 담당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10	235	23.5	2,641	264.1	
부산	2	192	96.0	924	462.0	
대구	3	111	37.0	439	146.3	
인천	3	128	42.7	1,135	378.3	
광주	3	87	29.0	694	231.3	
대전	2	71	35.5	500	250.0	
울산	3	113	37.7	1,086	362.0	
세종	2	84	42.0	529	264.5	
경기	경기	6	278	46.3	2,357	392.8
	경기북부	5	155	31.0	1,092	218.4
	소계	11	433	39.4	3,449	313.5
강원	4	164	41.0	2,083	520.8	
충북	2	162	81.0	1,087	543.5	
충남	2	150	75.0	671	335.5	
전북	3	102	34.0	834	278.0	
전남	3	83	27.7	2,592	864.0	
경북	2	112	56.0	595	297.5	
경남	5	124	24.8	587	117.4	
제주	2	87	43.5	369	184.5	
계	62	2,438	39.3	20,215	326.0	

[그림 4-7]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 평균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5. 사례종결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총 1,470건의 사례가 2020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으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71.0%로 전년도(73.4%) 대비 2.4%p 감소하였다.

[표 4-12]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2,069	1,470	71.0

2)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 지원으로 상담원을 추가 채용했기 때문이다.



5

학대사례 분석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3. 장애인학대 유형
4. 응급조치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6. 사례종결
7. 사후 모니터링

제5장

학대사례 분석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피해장애인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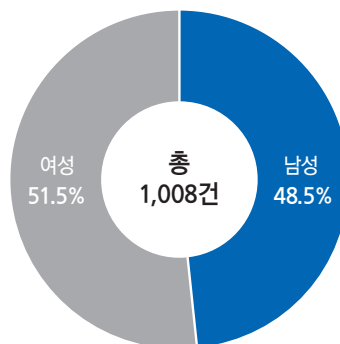
2020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으로 피해자 중 여성은 51.5%(519명)로 남성 48.5%(489명)보다 3.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년도(47.5%)보다 4.0%p 높게 나타났다.

[표 5-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489	48.5	519	51.5	1,008	100.0

[그림 5-1] 피해장애인 성별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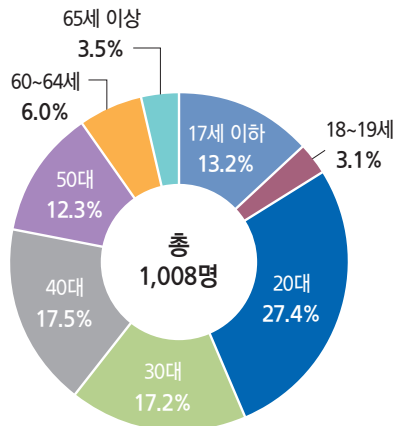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7.4%(27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17.5%(176명), 30대 17.2%(173명), 17세 이하가 13.2%(1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전년도(205명) 대비 34.6% 증가하였다.

[표 5-2]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7세 이하	133	13.2
18~19세	31	3.1
20대(20~29세)	276	27.4
30대(30~39세)	173	17.2
40대(40~49세)	176	17.5
50대(50~59세)	124	12.3
60~64세	60	6.0
65세 이상	35	3.5
계	1,008	100.0

[그림 5-2] 피해장애인 연령



3)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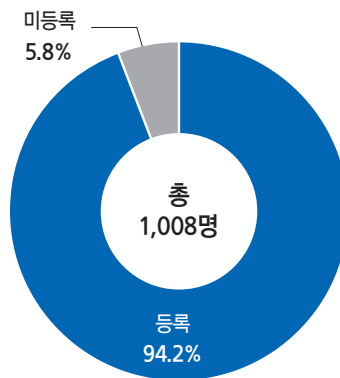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008건의 사례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94.2%(950건)이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는 5.8%(58건)이었다.

[표 5-3]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건, %)

등록	미등록	계
950	58	1,008
94.2	5.8	100.0

[그림 5-3] 장애인 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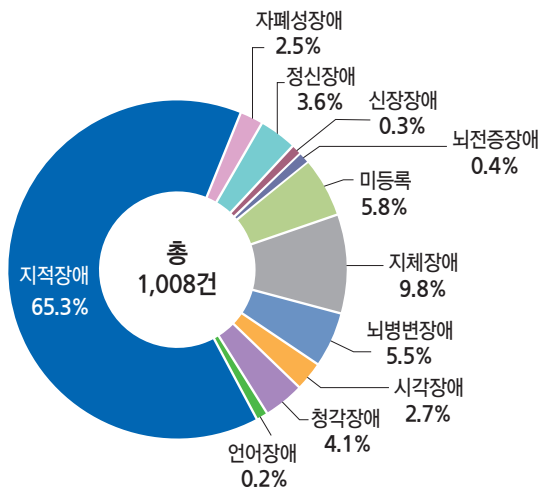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3%(658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9.8%(99건), 뇌병변장애 5.5%(55건), 청각장애 4.1%(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67.8%(683건)이었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71.3%(719건)로 나타났다.

[표 5-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³⁾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99	9.8
뇌병변장애	55	5.5
시각장애	27	2.7
청각장애	41	4.1
언어장애	2	0.2
지적장애	658	65.3
자폐성장애	25	2.5
정신장애	36	3.6
신장장애	3	0.3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4	0.4
미등록	58	5.8
계	1,008	100.0

[그림 5-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에 및 부장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하였음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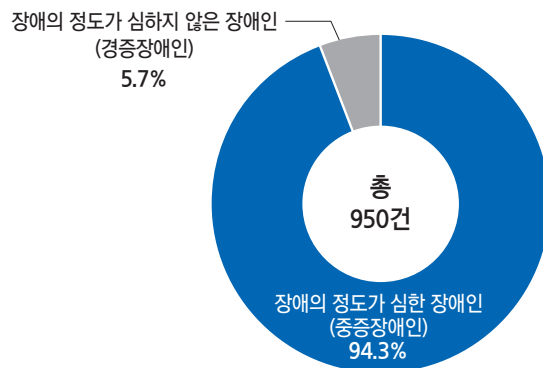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950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4.3%(8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5.7%(54건)이었다. 피해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전년도(853건, 96.4%)와 비교했을 때 5.0% 증가하였다.

[표 5-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896	94.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54	5.7
계	950	100.0

[그림 5-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4) 거주형태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분류된다.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78.9%(795건)이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21.1%(213건)이었다.

[표 5-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795	78.9	213	21.1	1,008	100.0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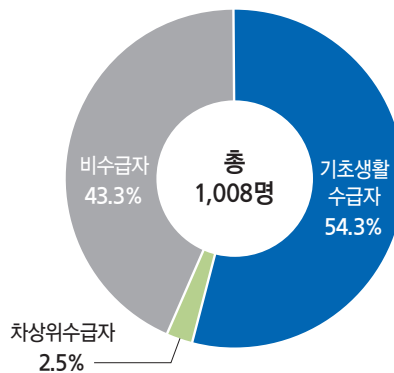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54.3%(547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43.3%(436건),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2.5%(25건)로 나타났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따른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15.7%)과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54.3%)을 비교하면 피해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547	25	436	1,008
54.3	2.5	43.3	100.0

[그림 5-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6) 재학대사례

재학대사례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료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되는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4.9%인 49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의 장애인학대사례 정보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모두 연동되지 않아 실제 재학대사례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5-8] 재학대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

학대사례	재학대 건수	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율
1,008	49	4.9

나. 학대행위자

1) 성별

장애인학대의 행위자는 하나의 사례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는 동일하게 1,00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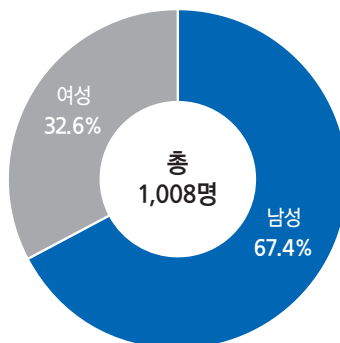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67.4%(679명), 여성이 32.6%(329명)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679	67.4	329	32.6	1,008	100.0

[그림 5-7] 학대행위자 성별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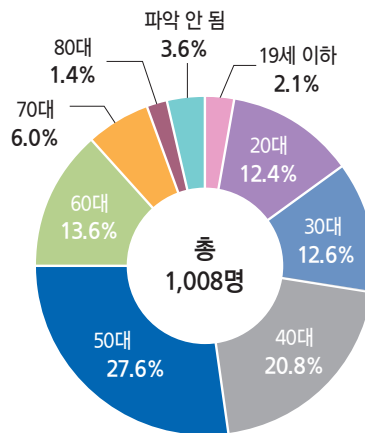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50대(27.6%, 278명), 40대(20.8%, 210명), 60대(13.6%, 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3.6%(36건)로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5-10]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9세 이하	21	2.1
20대(20~29세)	125	12.4
30대(30~39세)	127	12.6
40대(40~49세)	210	20.8
50대(50~59세)	278	27.6
60대(60~69세)	137	13.6
70대(70~79세)	60	6.0
80세 이상	14	1.4
파악 안 됨	36	3.6
계	1,008	100.0

[그림 5-8] 학대행위자 연령



3) 피해장애인가와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와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 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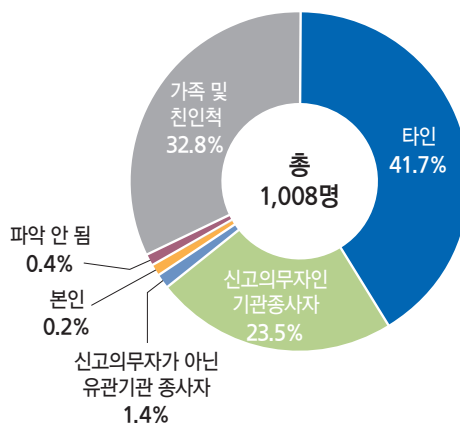
2020년부터는 기관종사자를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한 직군으로 나누었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나누었다.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타인에 의한 학대가 41.7%(420건)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는 32.8%(331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23.5%(237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1.4%(14건), 파악 안되는 경우는 0.4%(4건), 본인은 0.2%(2건)이었다.

학대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 8.9%(90건), 모르는 사람 6.7%(68건), 모 66건(6.5%), 배우자 6.3%(63건), 고용주 6.2%(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타인에 의한 학대(38.6%, 365건)는 15.1% 증가하였으며,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26.8%, 253건)는 30.8% 증가하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30.1%, 284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건의 학대사례 중 2건은 신고의무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5-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와의 관계(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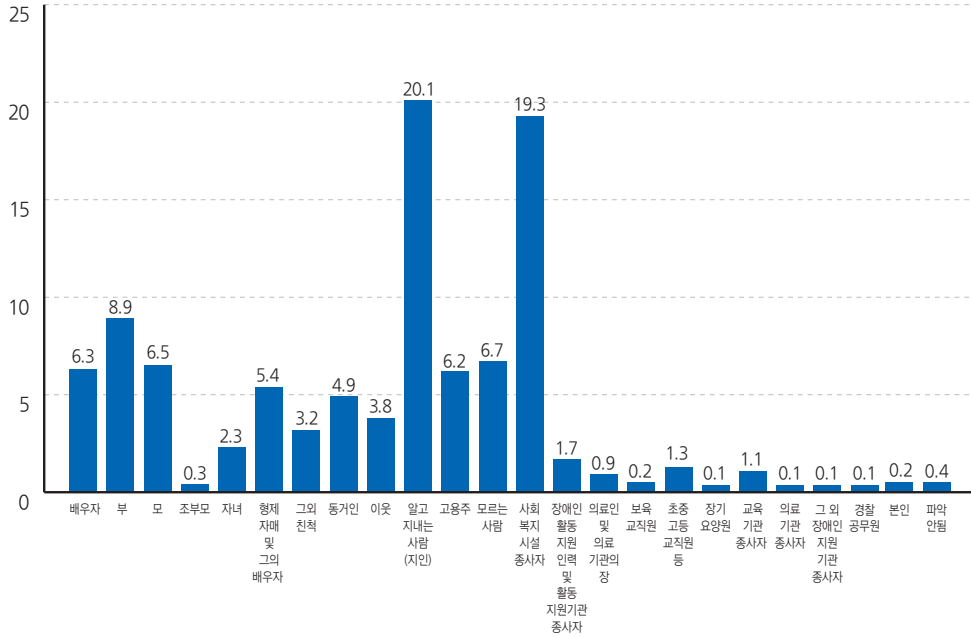
[표 5-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63	6.3
	부	90	8.9
	모	66	6.5
	조부모	3	0.3
	자녀	23	2.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4	5.4
	그 외 친척	32	3.2
	소계	331	32.8
타인	동거인	49	4.9
	이웃	38	3.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3	20.1
	고용주	62	6.2
	모르는 사람	68	6.7
	소계	420	41.7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5	19.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7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0.9
	보육교직원	2	0.2
	초·중·고 교직원 등	13	1.3
	장기요양원	1	0.1
	소계	237	23.5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11	1.1
	의료기관 종사자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0.1
	경찰공무원	1	0.1
	소계	14	1.4
본인		2	0.2
파악 안 됨		4	0.4
계		1,008	100.0

[그림 5-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단위: %)



4)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여부를 보면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711건(70.5%)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283건(28.1%),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14건(1.4%)이었다.

[표 5-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 안 됨		계	
283	28.1	711	70.5	14	1.4	1,008	100.0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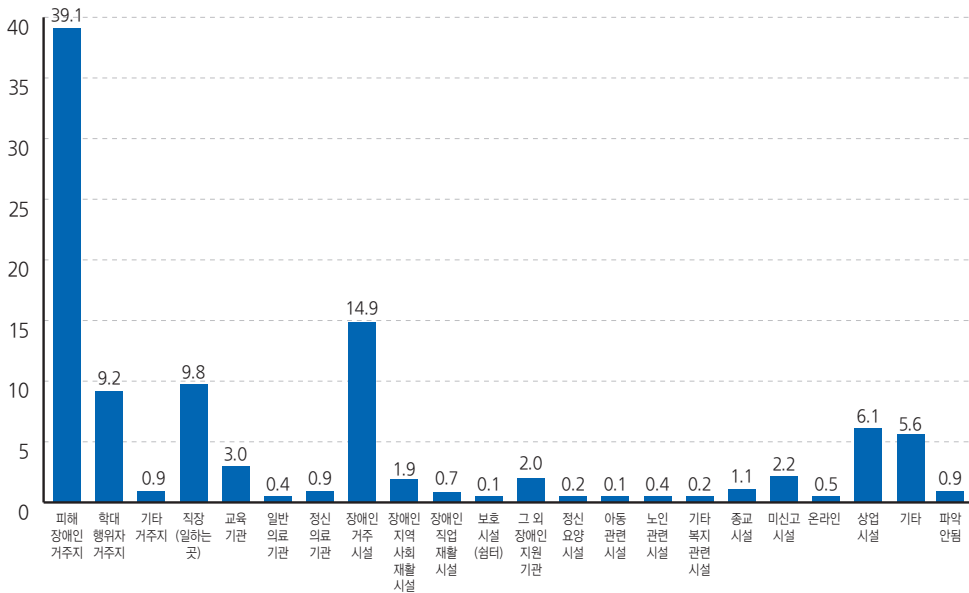
가.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학대유형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4.9%(150건), 직장 9.8%(9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2%(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도(32.8%, 310건)보다 27.1% 증가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전년도(23.5%, 222건)보다 32.4% 감소하였다.

[그림 5-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표 5-1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394	39.1
학대행위자 거주지		93	9.2
기타 거주지		9	0.9
직장(일하는 곳)		99	9.8
교육기관		30	3.0
일반 의료기관		4	0.4
정신 의료기관		9	0.9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50	14.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	0.7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소계	176	17.5
보호시설(쉼터)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0	2.0
정신요양시설		2	0.2
아동관련시설		1	0.1
노인관련시설		4	0.4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2
종교시설		11	1.1
미신고시설		22	2.2
온라인		5	0.5
상업시설		61	6.1
기타		56	5.6
파악 안 됨		9	0.9
계		1,008	100.0

나.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인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사례가 36.4%(367건)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인 사례 174건(17.3%), 10년 이상인 사례 122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57.0%(575건)를 차지하였다.

장애인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를 함께 보면 발생빈도가 1~2회와 같이 짧은 경우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사례가 85.7%(257건)였다. 발생빈도가 10회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43.6%(113건)이었다. 발생빈도가 거의 매일인 경우에는 학대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56.0%(130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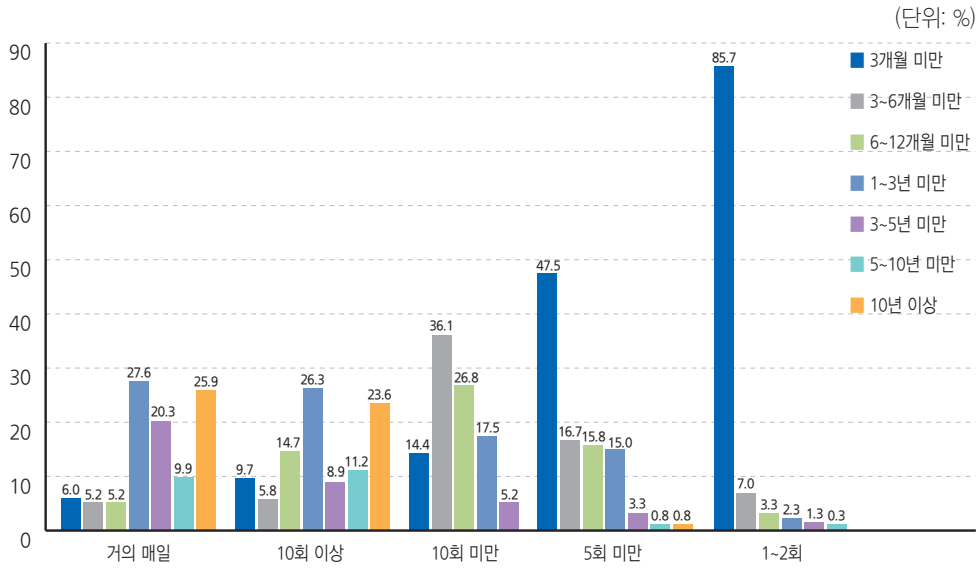
장애인학대는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인학대 발생 시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14]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14	6.0	25	9.7	14	14.4	57	47.5	257	85.7	367	36.4
	3~6개월 미만	12	5.2	15	5.8	35	36.1	20	16.7	21	7.0	103	10.2
	6~12개월 미만	12	5.2	38	14.7	26	26.8	19	15.8	10	3.3	105	10.4
	1~3년 미만	64	27.6	68	26.3	17	17.5	18	15.0	7	2.3	174	17.3
	3~5년 미만	47	20.3	23	8.9	5	5.2	4	3.3	4	1.3	83	8.2
	5~10년 미만	23	9.9	29	11.2	-	-	1	0.8	1	0.3	54	5.4
	10년 이상	60	25.9	61	23.6	-	-	1	0.8	-	-	122	12.1
	계	232	100.0	259	100.0	97	100.0	120	100.0	300	100.0	1,008	100.0

[그림 5-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3.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 정의에 기초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 학대유형 외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를 '중복 학대'로 분류하였고,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과 '중복 학대'를 포함한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가. 장애인학대 유형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중복 학대를 하나의 개별적인 학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경제적 착취는 25.5%(25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2.5%(227건), 중복 학대 22.4%(226건), 정서적 학대 14.0%(141건), 성적 학대 10.9%(110건), 방임 4.7%(47건) 순이었다. 2020년 유기는 0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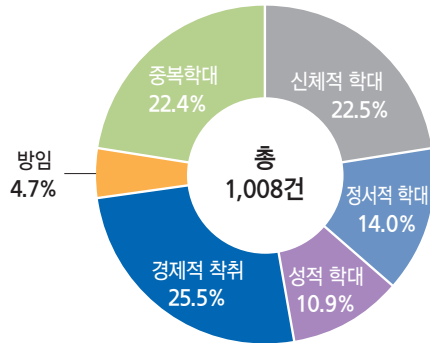
전년도 학대유형의 발생빈도는 중복 학대(25.8%) - 경제적 착취(24.4%) - 신체적 학대(24.1%) - 성적 학대(9.5%) - 정서적 학대(9.3%) - 방임(6.3%) - 유기(0.4%) 순이었다. 이 점과 비교하면 경제적 착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중복 학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15]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27	22.5
정서적 학대	141	14.0
성적 학대	110	10.9
경제적 착취	257	25.5
유기	-	-
방임	47	4.7
중복 학대	226	22.4
계	1,008	100.0

[그림 5-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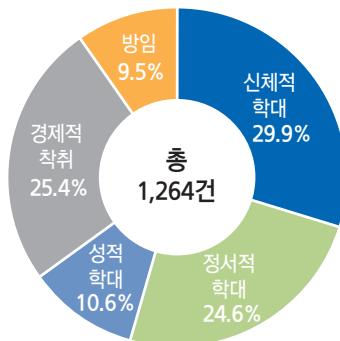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이 학대를 중복으로 경험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학대 유형은 총 1,264건이었다.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성적 학대 10.6%(134건), 방임 9.5%(120건) 순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16]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계
신체적 학대	378	29.9
정서적 학대	311	24.6
성적 학대	134	10.6
경제적 착취	321	25.4
유기	-	-
방임	120	9.5
계	1,264	100.0

[그림 5-14]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장애인학대 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 분석하였으며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264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서는 각각 10.6%p, 70.1%p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성적 학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에서 각각 3.7%p, 21.5%p, 6.7%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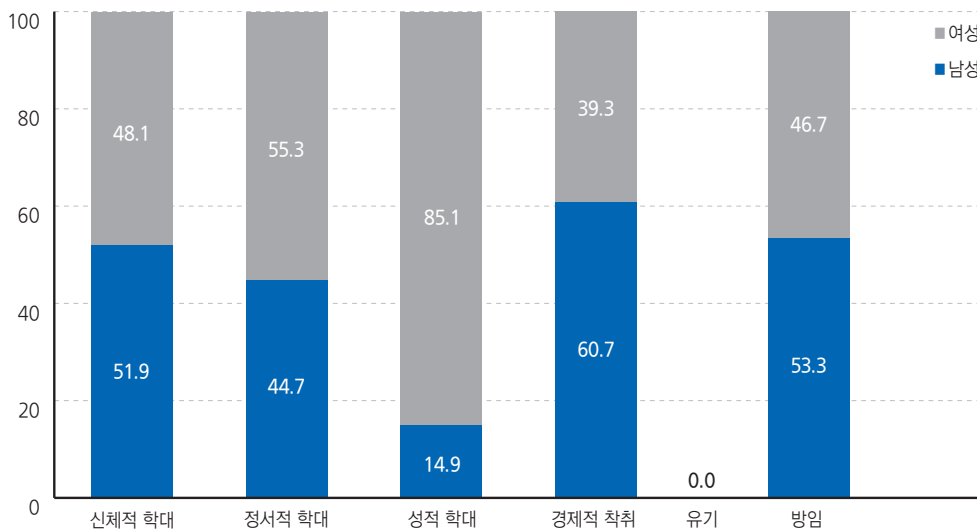
[표 5-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196	51.9	139	44.7	20	14.9	195	60.7	-	-	64	53.3	614	48.6
여성	182	48.1	172	55.3	114	85.1	126	39.3	-	-	56	46.7	650	51.4
계	378	100.0	311	100.0	134	100.0	321	100.0	-	-	120	100.0	1,264	100.0

[그림 5-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30대, 17세 이하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서적 학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40대, 17세 이하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 역시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17세 이하,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30대, 50대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20대, 17세 이하·30대, 40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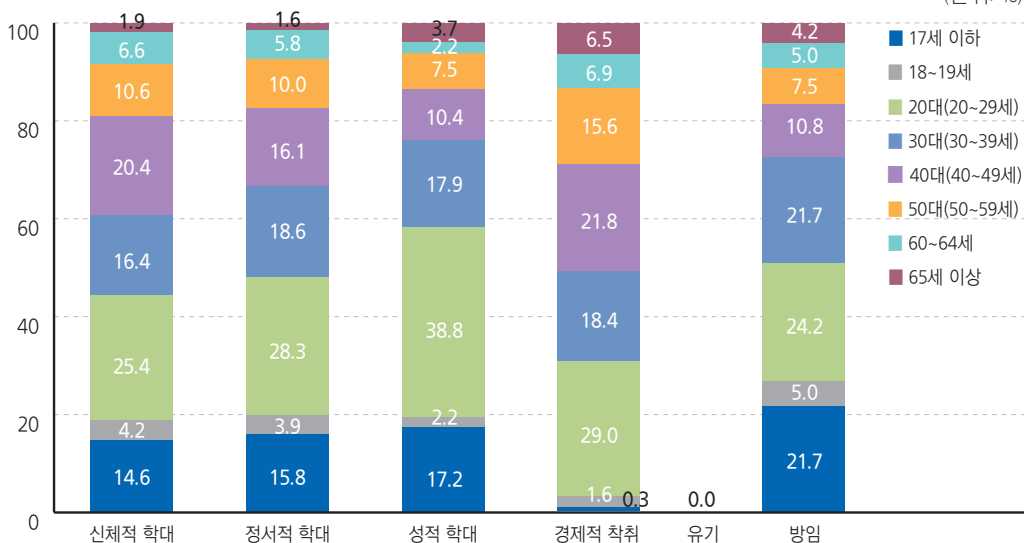
[표 5-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7세 이하	55	14.6	49	15.8	23	17.2	1	0.3	-	-	26	21.7	154	12.2
18~19세	16	4.2	12	3.9	3	2.2	5	1.6	-	-	6	5.0	42	3.3
20대(20~29세)	96	25.4	88	28.3	52	38.8	93	29.0	-	-	29	24.2	358	28.3
30대(30~39세)	62	16.4	58	18.6	24	17.9	59	18.4	-	-	26	21.7	229	18.1
40대(40~49세)	77	20.4	50	16.1	14	10.4	70	21.8	-	-	13	10.8	224	17.7
50대(50~59세)	40	10.6	31	10.0	10	7.5	50	15.6	-	-	9	7.5	140	11.1
60~64세	25	6.6	18	5.8	3	2.2	22	6.9	-	-	6	5.0	74	5.9
65세 이상	7	1.9	5	1.6	5	3.7	21	6.5	-	-	5	4.2	43	3.4
계	378	100.0	311	100.0	134	100	321	100.0	-	-	120	100.0	1,264	100.0

[그림 5-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3.3%, 경제적 착취가 2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 34.6%, 방임 21.8% 순이었다. 시각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38.9%, 정서적 학대 25.0% 순이었으며, 청각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가 각각 33.3%로 높게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31.7%, 경제적 착취가 26.7% 순으로 높았으며,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42.9%, 방임이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40.0%, 신체적 학대 2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9]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지체장애	27	22.0	41	33.3	9	7.3	30	24.4	-	-	16	13.0	123	100.0
뇌병변장애	16	20.5	27	34.6	7	9.0	11	14.1	-	-	17	21.8	78	100.0
시각장애	14	38.9	9	25.0	3	8.3	8	22.2	-	-	2	5.6	36	100.0
청각장애	16	33.3	8	16.7	6	12.5	16	33.3	-	-	2	4.2	48	100.0
언어장애	1	50.0	-	-	-	-	-	-	-	-	1	50.0	2	100.0
지적장애	261	31.7	195	23.7	87	10.6	220	26.7	-	-	60	7.3	823	100.0
자폐성장애	15	42.9	8	22.9	2	5.7	1	2.9	-	-	9	25.7	35	100.0
정신장애	11	24.4	7	15.6	5	11.1	18	40.0	-	-	4	8.9	45	100.0
신장장애	1	33.3	1	33.3	-	-	1	33.3	-	-	-	-	3	100.0
심장장애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1	25.0	2	50.0	-	-	-	-	-	-	1	25.0	4	100.0
미등록	15	22.4	13	19.4	15	22.4	16	23.9	-	-	8	11.9	67	100.0
계	378	29.9	311	24.6	134	10.6	321	25.4	-	-	120	9.5	1,264	100.0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재가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으며, 방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5-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재가	296	78.3	219	70.4	116	86.6	273	85.0	-	-	58	48.3	962	76.1
시설	82	21.7	92	29.6	18	13.4	48	15.0	-	-	62	51.7	302	23.9
계	378	100.0	311	100.0	134	100.0	321	100.0	-	-	120	100.0	1,264	100.0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는 타인 39.1%(494건), 가족 및 친인척 32.6%(412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6.4%(334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4%(18건), 파악되지 않는 경우 0.3%(4건), 본인 0.2%(2건)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에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48.4%(183건)로 가장 높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4%(96건), 타인 25.1%(95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1.7%로 가장 높았고, 부가 15.3%,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12.7%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39.5%(123건)로 가장 높았고, 가족 및 친인척 34.4%(107건), 타인 22.5%(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2.5%, 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이 80.6%(10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모르는 사람 14.2%, 이웃 13.4%, 동거인 11.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경제적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이 67.9%(218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15.9%(51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14.6%(47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31.5%, 고용주 16.2%, 모르는 사람 1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52.5%(63건), 가족 및 친인척 43.3%(52건) 등으로 높았으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 모 16.7%, 부 1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1]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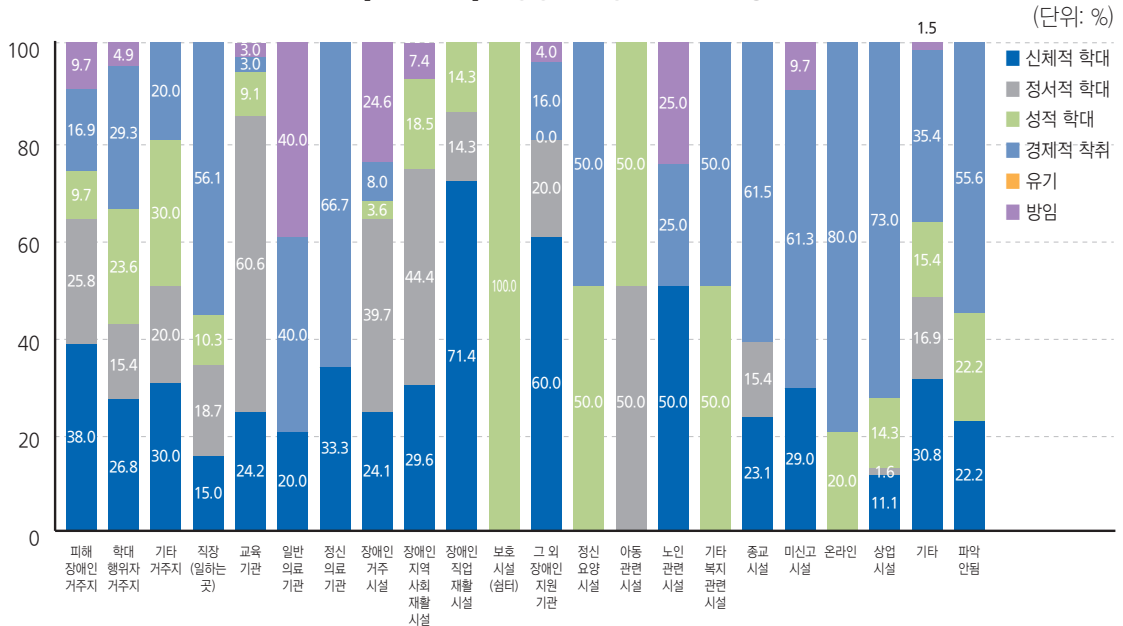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44	11.6	23	7.4	-	-	6	1.9	-	-	6	5.0	79	6.3
	부	58	15.3	33	10.6	6	4.5	3	0.9	-	-	14	11.7	114	9.0
	모	33	8.7	22	7.1	-	-	4	1.2	-	-	20	16.7	79	6.3
	조부모	1	0.3	2	0.6	1	0.7	-	-	-	-	2	1.7	6	0.5
	자녀	13	3.4	10	3.2	-	-	-	-	-	-	1	0.8	24	1.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5	6.6	12	3.9	7	5.2	22	6.9	-	-	8	6.7	74	5.9
	그 외 친척	9	2.4	5	1.6	5	3.7	16	5.0	-	-	1	0.8	36	2.8
	소계	183	48.4	107	34.4	19	14.2	51	15.9	-	-	52	43.3	412	32.6
타인	동거인	26	6.9	12	3.9	15	11.2	18	5.6	-	-	1	0.8	72	5.7
	이웃	10	2.6	9	2.9	18	13.4	6	1.9	-	-	-	-	43	3.4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8	12.7	39	12.5	53	39.6	101	31.5	-	-	2	1.7	243	19.2
	고용주	4	1.1	6	1.9	3	2.2	52	16.2	-	-	-	-	65	5.1
	모르는 사람	7	1.9	4	1.3	19	14.2	41	12.8	-	-	-	-	71	5.6
	소계	95	25.1	70	22.5	108	80.6	218	67.9	-	-	3	2.5	494	39.1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2	21.7	108	34.7	4	3.0	35	10.9	-	-	60	50.0	289	22.9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	1.9	5	1.6	1	0.7	5	1.6	-	-	2	1.7	20	1.6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0.5	-	-	-	-	7	2.2	-	-	-	-	9	0.7
	보육교직원	-	-	2	0.6	-	-	-	-	-	-	-	-	2	0.2
	초·중·고 교직원 등	4	1.1	8	2.6	-	-	-	-	-	-	1	0.8	13	1.0
	장기요양요원	1	0.3	-	-	-	-	-	-	-	-	-	-	1	0.1
	소계	96	25.4	123	39.5	5	3.7	47	14.6	-	-	63	52.5	334	26.4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5	10	3.2	1	0.7	1	0.3	-	-	-	-	14	1.1
	의료기관 종사자	1	0.3	-	-	-	-	-	-	-	-	-	-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	-	1	0.3	-	-	-	-	1	0.1
	경찰공무원	1	0.3	1	0.3	-	-	-	-	-	-	-	-	2	0.2
	소계	4	1.1	11	3.5	1	0.7	2	0.6	-	-	-	-	18	1.4
본인	-	-	-	-	-	-	-	-	-	-	-	2	1.7	2	0.2
파악 안 됨	-	-	-	-	1	0.7	3	0.9	-	-	-	-	4	0.3	
계	378	100.0	311	100.0	134	100.0	321	100.0	-	-	120	100.0	1,264	100.0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38.0%), 정서적 학대(25.8%)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는 경제적 착취(29.3%), 신체적 학대(26.8%), 성적 학대(23.6%)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직장(일하는 곳)에서는 경제적 착취(56.1%)와 정서적 학대(18.7%)가 주로 발생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정서적 학대(39.7%), 방임(24.6%)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상업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73.0%)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경제적 착취(35.4%), 신체적 학대(30.8%) 등의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표 5-22]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피해장애인 거주지	189	38.0	128	25.8	48	9.7	84	16.9	-	-	48	9.7	497	100.0
학대행위자 거주지	33	26.8	19	15.4	29	23.6	36	29.3	-	-	6	4.9	123	100.0
기타 거주지	3	30.0	2	20.0	3	30.0	2	20.0	-	-	-	-	10	100.0
직장(일하는 곳)	16	15.0	20	18.7	11	10.3	60	56.1	-	-	-	-	107	100.0
교육기관	8	24.2	20	60.6	3	9.1	1	3.0	-	-	1	3.0	33	100.0
일반 의료기관	1	20.0	-	-	-	-	2	40.0	-	-	2	40.0	5	100.0
정신 의료기관	3	33.3	-	-	-	-	6	66.7	-	-	-	-	9	100.0
장애인거주시설	54	24.1	89	39.7	8	3.6	18	8.0	-	-	55	24.6	224	10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	29.6	12	44.4	5	18.5	-	-	-	-	2	7.4	27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	71.4	1	14.3	1	14.3	-	-	-	-	-	-	7	100.0
보호시설(쉼터)	-	-	-	-	1	100.0	-	-	-	-	-	-	1	100.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5	60.0	5	20.0	-	-	4	16.0	-	-	1	4.0	25	100.0
정신요양시설	-	-	-	-	1	50.0	1	50.0	-	-	-	-	2	100.0
아동관련시설	-	-	1	50.0	1	50.0	-	-	-	-	-	-	2	100.0
노인관련시설	2	50.0	-	-	-	-	1	25.0	-	-	1	25.0	4	100.0
기타 복지관련시설	-	-	-	-	1	50.0	1	50.0	-	-	-	-	2	100.0
종교시설	3	23.1	2	15.4	-	-	8	61.5	-	-	-	-	13	100.0
미신고시설	9	29.0	-	-	-	-	19	61.3	-	-	3	9.7	31	100.0
온라인	-	-	-	-	1	20.0	4	80.0	-	-	-	-	5	100.0
상업시설	7	11.1	1	1.6	9	14.3	46	73.0	-	-	-	-	63	100.0
기타	20	30.8	11	16.9	10	15.4	23	35.4	-	-	1	1.5	65	100.0
파악 안 됨	2	22.2	-	-	2	22.2	5	55.6	-	-	-	-	9	100.0
계	378	29.9	311	24.6	134	10.6	321	25.4	-	-	120	9.5	1,264	100.0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의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부가 19.8%로 가장 높았으며, 모 15.5%, 배우자 12.7%,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1.7%,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인 18.3%, 이웃 11.8%, 부 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일하는 곳)에서는 고용주가 5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은 31.3%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업시설에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44.3%, 모르는 사람이 41.0%로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5-23]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피해 장애인 거주지		학대 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 (일하는 곳)		교육 기관		일반 의료 기관		정신 의료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보호 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0	12.7	7	7.5	-	-	-	-	-	-	1	25.0	-	-	-	-	-	-	-	-	-	-	-	-	-
	부	78	19.8	9	9.7	-	-	-	-	-	-	-	-	-	-	-	-	-	-	-	-	-	-	-	-	
	모	61	15.5	2	2.2	1	11.1	-	-	1	3.3	-	-	-	-	-	-	-	-	-	-	-	-	-	-	
	조부모	2	0.5	1	1.1	-	-	-	-	-	-	-	-	-	-	-	-	-	-	-	-	-	-	-	-	-
	자녀	21	5.3	1	1.1	-	-	-	-	-	-	-	-	-	-	-	-	-	-	-	-	-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6	11.7	3	3.2	1	11.1	-	-	-	-	3	75.0	-	-	-	-	-	-	-	-	-	-	-	-	-
	그 외 친척	23	5.8	4	4.3	1	11.1	-	-	-	-	-	-	-	-	-	-	-	-	-	-	-	-	-	-	
	소계	281	71.3	27	29.0	3	33.3	-	-	1	3.3	4	100.0	-	-	-	-	-	-	-	-	-	-	-	-	-
타인	동거인	20	5.1	17	18.3	-	-	-	-	-	-	-	-	-	-	6	4.0	-	-	-	-	-	-	1	5.0	
	이웃	22	5.6	11	11.8	1	11.1	1	1.0	-	-	-	-	-	-	-	-	-	-	-	-	-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1	10.4	27	29.0	4	44.4	31	31.3	3	10.0	-	-	-	5	3.3	3	15.8	1	14.3	-	-	2	10.0		
	고용주	3	0.8	4	4.3	-	-	54	54.5	-	-	-	-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13	3.3	7	7.5	1	11.1	8	8.1	-	-	-	-	-	-	-	-	-	-	1	14.3	1	100.0	-	-	
	소계	99	25.1	66	71.0	6	66.7	94	94.9	3	10.0	-	-	-	-	11	7.3	3	15.8	2	28.6	1	100.0	3	15.0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	3	3.0	-	-	-	-	-	-	139	92.7	15	78.9	5	71.4	-	-	13	65.0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9	2.3	-	-	-	-	1	1.0	-	-	-	-	-	-	-	1	5.3	-	-	-	-	4	20.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8	88.9	-	-	-	-	-	-	-	-	-	-	-	
	보육교직원	-	-	-	-	-	-	-	-	2	6.7	-	-	-	-	-	-	-	-	-	-	-	-	-	-	
	초·중·고 교직원 등	-	-	-	-	-	-	-	-	13	43.3	-	-	-	-	-	-	-	-	-	-	-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9	2.3	-	-	-	-	4	4.0	15	50.0	-	-	8	88.9	139	92.7	16	84.2	5	71.4	-	-	17	85.0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	-	-	-	11	36.7	-	-	-	-	-	-	-	-	-	-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	1	11.1	-	-	-	-	-	-	-	-	-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	-	-	-	-	1	1.0	-	-	-	-	-	-	-	-	-	-	-	-	-	-	-	-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1	1.0	11	36.7	-	-	1	11.1	-	-	-	-	-	-	-	-	-	-	
본인	2	0.5	-	-	-	-	-	-	-	-	-	-	-	-	-	-	-	-	-	-	-	-	-	-	-	
파악 안 됨	3	0.8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394	100.0	93	100.0	9	100.0	99	100.0	30	100.0	4	100.0	9	100.0	150	100.0	19	100.0	7	100.0	1	100.0	20	100.0	100.0	

구분	정신 요양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시설		종교 시설		미신고 시설		온라인		상업 시설		기타		파악 안 됨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	-	-	-	-	-	-	-	-	-	-	-	-	-	1	1.6	4	7.1	-	-	63	6.3
	부	-	-	-	-	-	-	-	-	-	-	-	-	-	-	-	-	3	5.4	-	-	90	8.9
	모	-	-	-	-	-	-	-	-	-	-	-	-	-	-	-	-	1	1.8	-	-	66	6.5
	조부모	-	-	-	-	-	-	-	-	-	-	-	-	-	-	-	-	-	-	-	-	3	0.3
	자녀	-	-	-	-	-	-	-	-	-	-	-	-	-	-	1	1.6	-	-	-	-	23	2.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	-	-	-	-	-	-	-	-	-	-	-	-	-	-	-	1	11.1	54	5.4
	그 외 친척	-	-	-	-	-	-	-	-	-	-	-	-	-	-	3	4.9	1	1.8	-	-	32	3.2
	소계	-	-	-	-	-	-	-	-	-	-	-	-	-	-	5	8.2	9	16.1	1	11.1	331	32.8
타인	동거인	-	-	-	-	-	-	-	2	18.2	1	4.5	-	-	2	3.3	-	-	-	-	49	4.9	
	이웃	-	-	-	-	-	-	-	-	-	-	1	20.0	2	3.3	-	-	-	-	-	-	38	3.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	50.0	-	-	1	25.0	2	100.0	9	81.8	3	13.6	4	80.0	27	44.3	36	64.3	3	33.3	203	20.1
	고용주	-	-	-	-	-	-	-	-	-	-	-	-	-	-	-	-	-	-	1	11.1	62	6.2
	모르는 사람	-	-	-	-	-	-	-	-	-	1	4.5	-	-	25	41.0	9	16.1	2	22.2	68	6.7	
	소계	1	50.0	-	-	1	25.0	2	100.0	11	100.0	5	22.7	5	100.0	56	91.8	45	80.4	6	66.7	420	41.7
신고 의무자인 기관 중사자	사회복지시설 중사자	-	-	1	100.0	2	50.0	-	-	-	-	17	77.3	-	-	-	-	-	-	-	-	195	19.3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1	1.8	1	11.1	17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50.0	-	-	-	-	-	-	-	-	-	-	-	-	-	-	-	-	-	-	9	0.9
	보육교직원	-	-	-	-	-	-	-	-	-	-	-	-	-	-	-	-	-	-	-	-	2	0.2
	초·중·고 교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13	1.3
	장기요양요원	-	-	-	-	1	25.0	-	-	-	-	-	-	-	-	-	-	-	-	-	-	1	0.1
소계	1	50.0	1	100.0	3	75.0	-	-	-	-	17	77.3	-	-	-	-	1	1.8	1	11.1	237	23.5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중사자	교육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11	1.1
	의료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1	0.1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중사자	-	-	-	-	-	-	-	-	-	-	-	-	-	-	-	-	-	-	-	-	1	0.1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1	1.8	-	-	1	0.1	
	소계	-	-	-	-	-	-	-	-	-	-	-	-	-	-	-	1	1.8	-	-	14	1.4	
본인	-	-	-	-	-	-	-	-	-	-	-	-	-	-	-	-	-	-	-	-	2	0.2	
파악 안 됨	-	-	-	-	-	-	-	-	-	-	-	-	-	-	-	-	-	-	1	11.1	4	0.4	
계	2	100.0	1	100.0	4	100.0	2	100.0	11	100.0	22	100.0	5	100.0	61	100.0	56	100.0	9	100.0	1008	100.0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 1,264건을 기준으로 장애인학대 유형에 따른 지속기간을 살펴보았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에서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례가 많았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지속기간이 1~3년 미만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5-24]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3개월 미만	168	44.4	74	23.8	85	63.4	73	22.7	-	-	15	12.5	415	32.8
3~6개월 미만	40	10.6	41	13.2	13	9.7	30	9.3	-	-	8	6.7	132	10.4
6~12개월 미만	32	8.5	39	12.5	11	8.2	30	9.3	-	-	11	9.2	123	9.7
1~3년 미만	59	15.6	64	20.6	11	8.2	61	19.0	-	-	37	30.8	232	18.4
3~5년 미만	26	6.9	40	12.9	4	3.0	29	9.0	-	-	21	17.5	120	9.5
5~10년 미만	20	5.3	11	3.5	3	2.2	27	8.4	-	-	10	8.3	71	5.6
10년 이상	33	8.7	42	13.5	7	5.2	71	22.1	-	-	18	15.0	171	13.5
계	378	100.0	311	100.0	134	100.0	321	100.0	-	-	120	100.0	1,264	100.0

4. 응급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르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필요시 응급조치로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응급조치의 유형 중 쉼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이 포함된다.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중 응급조치는 103건(전체 학대사례의 10.2%) 실시되었으며 전년도(106건, 11.2%)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조치 시 피해장애인이 쉼터를 이용한 경우는 66건(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7건(16.5%), 거주시설 14건(13.6%), 의료기관 6건(5.8%)이었다. 2020년에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전년도(43건)보다 53.5% 증가하였고, 거주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전년도(37건) 대비 6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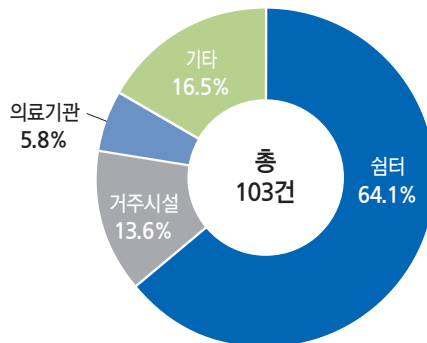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를 보호 장소로 고려하나 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에 13개소(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뿐이며 쉼터에 정원이 차거나 성별이 맞지 않아 실제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거나 자립홈, 체험홈, 자립지원주택과 같이 자립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집과 같은 곳에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도 한다.

[표 5-25]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66	14	6	17	103
64.1	13.6	5.8	16.5	100.0

[그림 5-18] 응급조치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총 10개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수회의 지원을 실시한다.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에 대해 총 11,620회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피해자 및 그 가족, 관련자 등에게 이뤄지는 상담지원이 6,517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법지원 1,692건(14.6%), 거주지원 935건(8.0%), 복지지원 933회(8.0%), 기타지원⁵⁾ 912회(7.8%), 의료지원 379건(3.3%), 심리지원 134건(1.2%)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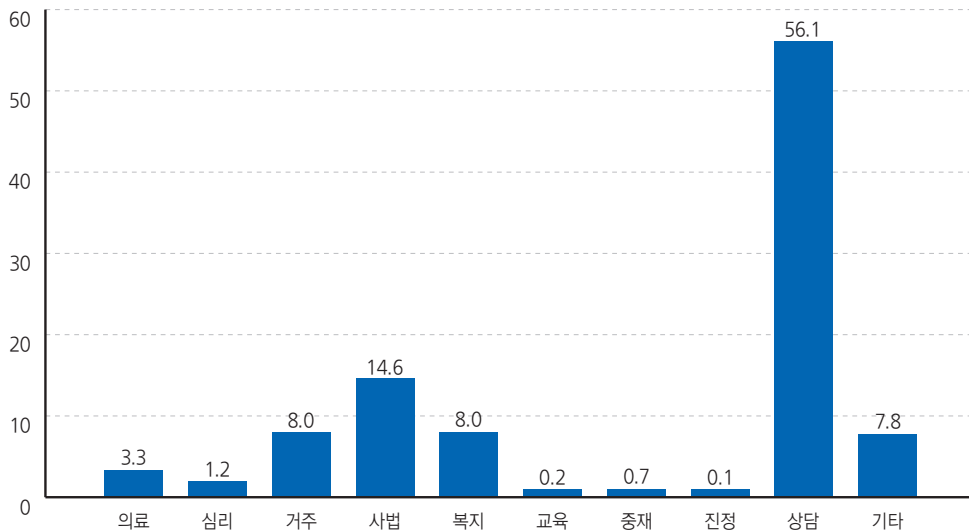
[표 5-26]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379	134	935	1,692	933	22	79	17	6,517	912	11,620
3.3	1.2	8.0	14.6	8.0	0.2	0.7	0.1	56.1	7.8	100.0

[그림 5-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



4) 2018~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은 한 사례에 같은 유형의 지원을 수회 하더라도 1회로 집계하였는데 2020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같은 유형의 지원을 수회한 경우 각각을 집계하여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별 회수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5) 기타지원이란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으로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이나 피해장애인의 이동지원이 목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1) 의료지원

의료지원이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한다. 의료지원 379회 중 기타가 160회(42.2%)로 가장 많았다. 검진 및 진단은 139회(36.7%), 통원치료는 45회(11.9%) 지원하였다. 의료지원 중 기타에는 주로 응급의료조치나 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알아보거나 병원에 동행, 의료조치를 위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것, 유관기관과 의료지원 과정을 협의하는 것, 경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표 5-27]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12	139	45	23	160	379
3.2	36.7	11.9	6.1	42.2	100.0

2) 심리지원

심리지원이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지원을 말한다. 심리지원 134회 중 기타지원 66회(49.3%), 심리 상담 및 치료 47회(35.1%), 심리평가 및 진단 21회(15.7%) 실시하였다.

심리지원 중 기타는 심리지원을 위해 기관을 알아보거나 동행하는 것,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것, 유관기관과 심리지원 과정을 협의하거나 경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지원을 말한다.

[표 5-28]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21	47	66	134
15.7	35.1	49.3	100.0

3) 거주지원

거주지원이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쉼터 입소와 같은 응급보호, 재가로의 거주지원, 거주시설과 같은 시설로의 거주지원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유형 역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거주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거주 지원은 총 935회 실시되었으며 이중 기타지원이 715회(76.5%), 응급보호 85회(9.1%), 단기 거주지원(재가) 41회(4.4%), 단기거주지원(시설) 40회(4.3%) 지원하였다. 거주지원의 기타에는 거주지를 찾거나 제도를 알아보는 것, 거주지원을 위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것, 유관기관과 지원 과정을 협의하는 것, 거주 지원 후 경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표 5-29]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85	41	40	29	25	715	935
9.1	4.4	4.3	3.1	2.7	76.5	100.0

4) 사법지원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신뢰관계자 동석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선임, 노동청진정,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지원은 총 1,692회 이뤄졌는데 기타지원이 893회(52.8%)였으며, 절차지원 456회(27.0%), 법률상담 150회(8.9%), 고발 93회(5.5%), 수사의뢰 48회(2.8%) 등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사법지원의 기타는 사법지원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거나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사법지원을 위한 동행, 경찰, 검찰 등 관련자와의 협의, 사법지원의 경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표 5-30]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선임	노동청진정	기타	계
93	23	48	150	456	6	15	8	893	1,692
5.5	1.4	2.8	8.9	27.0	0.4	0.9	0.5	52.8	100.0

5) 복지지원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영역의 복지지원,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한다.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공공복지지원 207회(22.2%), 민간복지지원 192회(20.6%), 장애인 등록 7회(7.6%) 지원하였다.

복지지원의 기타에는 각종 복지서비스 및 자원을 찾거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정보탐색과 각종 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유관기관과의 협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표 5-31]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지원	민간복지지원	기타	계
71	207	192	463	933
7.6	22.2	20.6	49.6	100.0

6)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한다. 행위자 대상 교육은 11회(50.0%), 피해자 대상 교육은 10회(45.5%), 가족대상 교육은 1회(4.5%) 이루어졌다.

[표 5-32] 피해장애인 교육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피해자대상	가족대상	행위자대상	관련자대상	계
10	1	11	-	22
45.5	4.5	50.0	-	100.0

7) 중재지원

중재는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하는 것을 말하며 중재지원 79회 중 중재를 실시한 경우는 53회(67.1%)로 나타났다.

[표 5-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53	26	79
67.1	32.9	100.0

8) 진정지원

진정은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이 국가 기관에 진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정하거나 피해자의 진정 과정을 돕는 것을 진정지원으로 본다. 기타기관을 대상으로 진정한 경우는 11회(64.7%)로 나타났다.

[표 5-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횟수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기관	기타	계
3	-	11	3	17
17.6	-	64.7	17.6	100.0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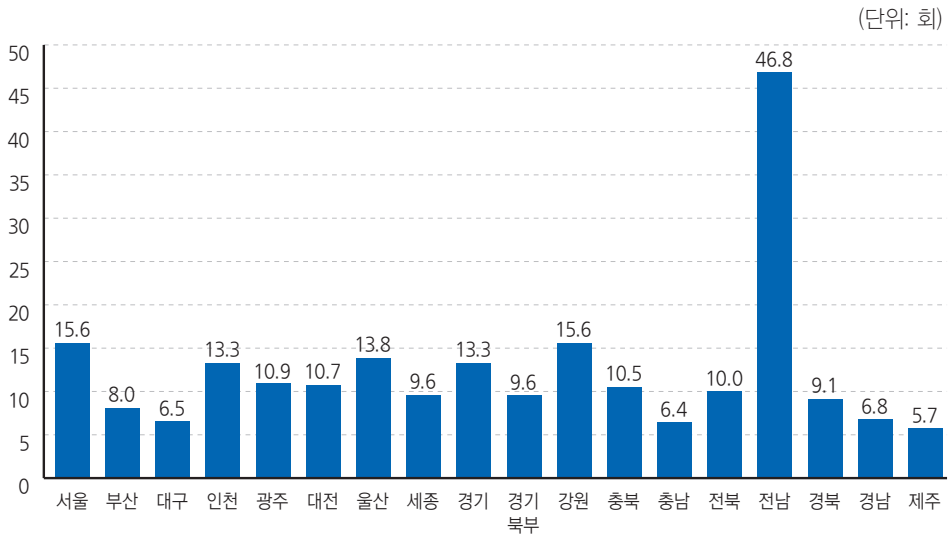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1,008건)와 2020년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장애인학대사례(317건) 총 1,325건에 대해 16,29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장애인학대사례별 평균 12.3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전년도(17,837회, 사례별 평균 14.7회)와 비교하였을 때 상담 및 지원은 8.7% 감소하였고,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6.4% 감소하였다.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상담 및 지원횟수(사례별 평균 8.3회)와 비교하면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4.0회 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및 기관별로 보면 전남이 사례별 평균 46.8회로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강원이 각각 15.6회, 울산 13.8회, 인천이 13.3회, 경기 12.0회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표 5-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20년 이전		2020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지원 횟수	학대사례	지원 횟수	학대사례	지원 횟수		
서울	33	789	113	1,485	146	2,274	15.6	
부산	24	219	76	584	100	803	8.0	
대구	27	107	34	290	61	397	6.5	
인천	21	192	44	672	65	864	13.3	
광주	8	66	35	402	43	468	10.9	
대전	6	70	32	337	38	407	10.7	
울산	12	114	51	755	63	869	13.8	
세종	8	128	25	190	33	318	9.6	
경기	경기	27	399	122	1,579	149	1,978	13.3
	경기북부	17	199	65	587	82	786	9.6
	소계	44	598	187	2,166	231	2,764	12.0
강원	39	655	81	1,220	120	1,875	15.6	
충북	20	299	70	642	90	941	10.5	
충남	13	70	63	415	76	485	6.4	
전북	9	173	42	339	51	512	10.0	
전남	14	863	32	1,291	46	2,154	46.8	
경북	9	173	40	275	49	448	9.1	
경남	19	125	47	321	66	446	6.8	
제주	11	30	36	236	47	266	5.7	
계	317	4,671	1,008	11,620	1,325	16,291	12.3	

6. 사례종결

2020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008건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한 사례는 615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61.0%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71.0%)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6]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1,008	615	61.0

7. 사후 모니터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사실에 대해 지원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재학대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사망, 수감 등의 사유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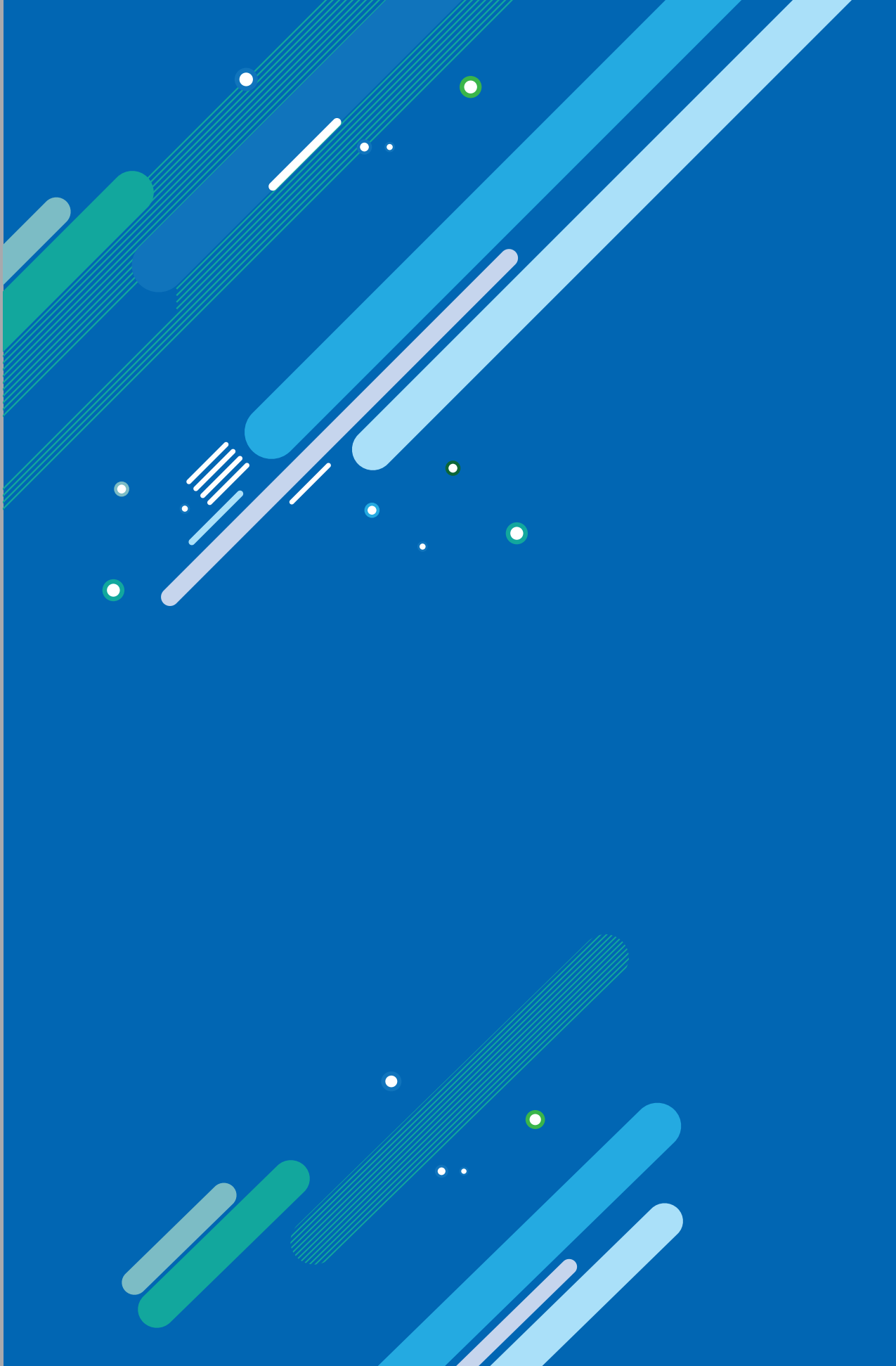
2020년 종결된 학대사례 615건 중 70.7%에 해당하는 435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사후 모니터링 횟수는 870회로 사례별 약 2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사후 모니터링

(단위: 건, %, 회)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
435	70.7	870





6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장애아동 학대사례
3. 노동력 착취사례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제6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본 장은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장애아동 학대, 경제적 착취 사례 중 노동력 착취, 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 및 이용하는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분석하였다.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 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학대는 2020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69.6%(702건)⁶⁾로 전년도 680건과 비교해 3.2%가 증가하였다. 장애인학대사례에 있어 발달장애인은 전체 학대피해자 중 가장 많아 장애인학대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 인구는 2,633,026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247,910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6)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에 또는 부장애가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주장애는 지적장애 658건, 자폐성장애 25건이며, 부장애는 지적장애 19건이다.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지역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80명(1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75명(10.7%),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56명(8.0%), 부산·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각 54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96.4%로 대부분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별로 서울(36명), 광주(17명), 울산(23명), 전남(12명)에서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표 6-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단위: 명,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73	10.8	2	8.0	75	10.7	
부산	49	7.2	5	20.0	54	7.7	
대구	19	2.8	2	8.0	21	3.0	
인천	31	4.6	1	4.0	32	4.6	
광주	25	3.7	2	8.0	27	3.8	
대전	25	3.7	1	4.0	26	3.7	
울산	32	4.7	2	8.0	34	4.8	
세종	17	2.5	2	8.0	19	2.7	
경기	경기	79	11.7	1	4.0	80	11.4
	경기북부	54	8.0	2	8.0	56	8.0
	소계	133	19.7	3	12.0	136	19.4
강원	52	7.7	2	8.0	54	7.7	
충북	38	5.6	-	-	38	5.4	
충남	47	6.9	1	4.0	48	6.8	
전북	36	5.3	1	4.0	37	5.3	
전남	22	3.2	-	-	22	3.1	
경북	30	4.4	-	-	30	4.3	
경남	22	3.2	1	4.0	23	3.3	
제주	26	3.8	-	-	26	3.7	
계	677	100.0	25	100.0	702	100.0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발달장애인 학대의 신고자는 신고의무자가 36.8%(258건), 비신고의무자가 63.2%(444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신고의무자 21개 직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0.5%(14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4%(45건), 초·중·고 교직원 4.4%(31건) 등의 순이었다.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17.2%(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8.8%(62건), 타인 7.4%(52건), 본인 7.3%(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대의 예방은 신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 할 수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한 구제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20년 발달장애인 학대의 본인 신고율은 7.3%(51건)로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본인 신고율(13.2%, 274건) 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 신고율(9.4%, 95건)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전년도 발달장애인 본인 신고율 4.0%(27건)와 비교하면 신고율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학대예방 및 신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 쉽게 장애인학대를 설명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6-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5	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4	20.5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6	2.3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0.3
	의료기사	-	-
	응급구조사	-	-
	구급대의 대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과 종사자	4	0.6
	보육교직원	1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초·중·고 교직원 등	31	4.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8	1.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구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5	0.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1	0.1
	소계	258	36.8
비신고의무자	본인	51	7.3
	부모	31	4.4
	자녀	7	1.0
	형제자매	16	2.3
	친인척	13	1.9
	일반공무원	19	2.7
	경찰공무원	62	8.8
	공공기관 종사자	8	1.1
	교육기관 종사자	12	1.7
	의료기관 종사자	2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1	17.2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3	0.4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14	2.0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28	4.0
	타인	52	7.4
	파악 안 됨	5	0.7
	소계	444	63.2
	계	702	100.0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 성별 및 연령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358명(51.0%), 여성이 344명(49.0%)으로 남성이 2.0%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37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 131명(18.7%), 30대 128명(18.2%), 40대 118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과 비교하면 남성(48.5%)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30대 이하의 연령대(60.8%)에서 9.9%p 더 많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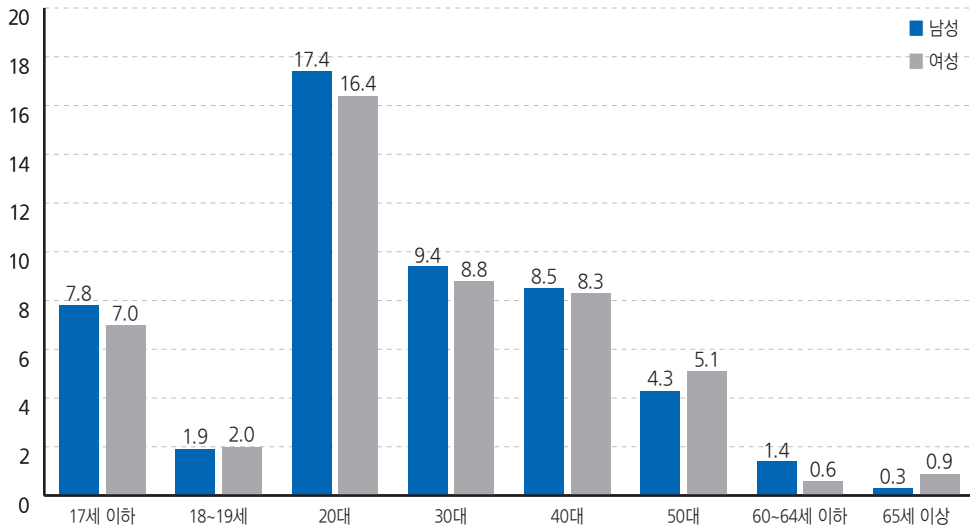
[표 6-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이하	65세 이상	계							
	17세 이하		18~19세															
남성	55	7.8	13	1.9	122	17.4	66	9.4	60	8.5	30	4.3	10	1.4	2	0.3	358	51.0
여성	49	7.0	14	2.0	115	16.4	62	8.8	58	8.3	36	5.1	4	0.6	6	0.9	344	49.0
계	104	14.8	27	3.8	237	33.8	128	18.2	118	16.8	66	9.4	14	2.0	8	1.1	702	100.0

[그림 6-1]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2) 거주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77.6%(545건)이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등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2.4%(157건)로 나타났다.

[표 6-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545	77.6	157	22.4	702	100.0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6.8%(399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수급자 2.7%(19건), 비수급자 40.5%(284건)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4.3% 보다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399	19	284	702
56.8	2.7	40.5	100.0

4) 재학대사례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총 49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4.9%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의 재학대가 79.6%(3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6-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	학대사례 중 재학대		재학대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1,008	49	4.9	39	79.6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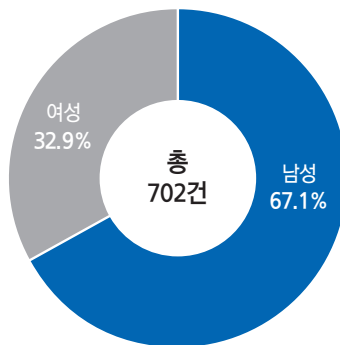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67.1%(471명)이며, 여성이 32.9%(231명)로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6-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471	67.1	231	32.9	702	100.0

[그림 6-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2) 피해 발달장애인과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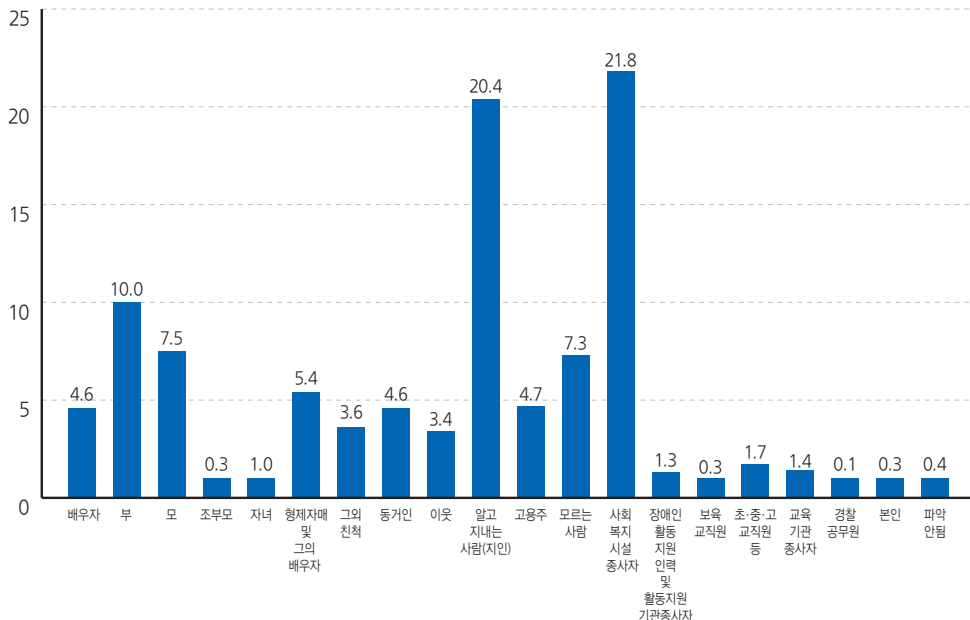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1.8%(15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4%(143건), 부 10.0%(70건), 모 7.5%(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외의 관계를 보면 학대는 타인에 의한 경우가 40.3%(283건)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32.3%(227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1%(176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6%(11건), 본인 0.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각종 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257건, 37.8%)는 줄어든 반면, 타인과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높아졌다. 특히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166건, 24.4%)보다 3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 19로 인해 낮 활동과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장애인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휴관 및 휴교, 제한적인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는 부(10.0%), 모(7.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5.4%), 배우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은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20.4%), 모르는 사람(7.3%), 고용주(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1.8%), 초·중·고 교직원(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1.4%) 등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을 스스로 학대한 자기방임도 0.3%(2건)로 나타났다.

[그림 6-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외의 관계

(단위: %)



[표 6-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32	4.6
	부	70	10.0
	모	53	7.5
	조부모	2	0.3
	자녀	7	1.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8	5.4
	그 외 친척	25	3.6
	소계	227	32.3
타인	동거인	32	4.6
	이웃	24	3.4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43	20.4
	고용주	33	4.7
	모르는 사람	51	7.3
	소계	283	40.3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3	21.8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9	1.3
	보육교직원	2	0.3
	초·중·고 교직원 등	12	1.7
	소계	176	25.1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10	1.4
	경찰공무원	1	0.1
	소계	11	1.6
본인		2	0.3
파악 안 됨		3	0.4
계		702	100.0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 학대 발생장소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례가 38.0%(26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6.2%(114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67건), 직장(일하는 곳)과 상업시설 각각 7.4%(5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휴대전화 대리점과 같은 상업시설(61건)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피해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249건)는 45.0% 줄어든 반면 피해장애인 거주지(193건)에서 발생한 사례는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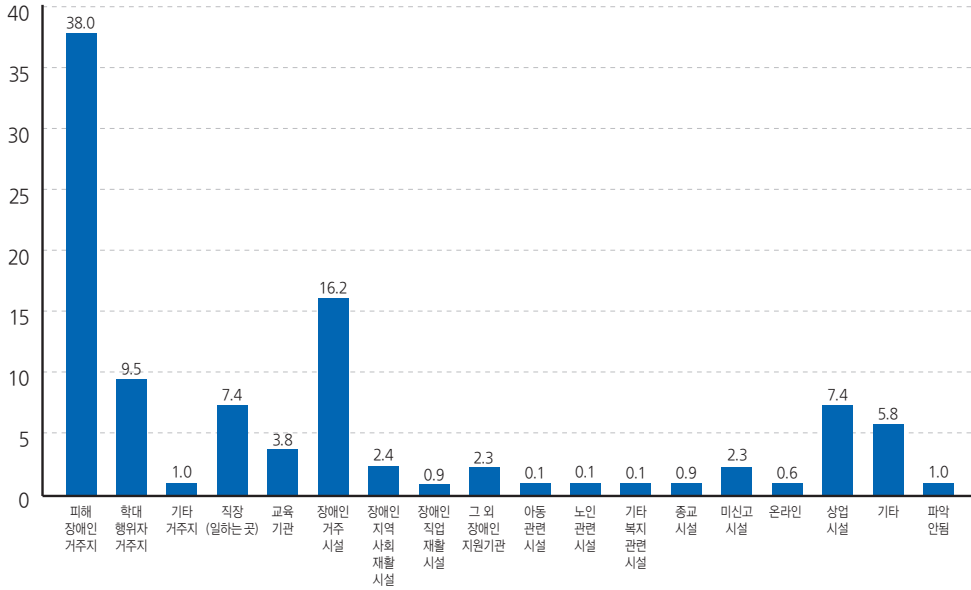
[표 6-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267	38.0
학대행위자 거주지		67	9.5
기타 거주지		7	1.0
직장(일하는 곳)		52	7.4
교육기관		27	3.8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14	16.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7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0.9
	소계	137	19.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6	2.3
아동관련시설		1	0.1
노인관련시설		1	0.1
기타 복지관련시설		1	0.1
종교시설		6	0.9
미신고시설		16	2.3
온라인		4	0.6
상업시설		52	7.4
기타		41	5.8
파악 안 됨		7	1.0
계		702	100.0

[그림 6-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37.3%(262건)로 가장 많았으나, 3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도 22.8%(160건)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의 경우 93.8% 이상이 거의 매일 혹은 10회 이상의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 5명 중 1명 이상(21.8%)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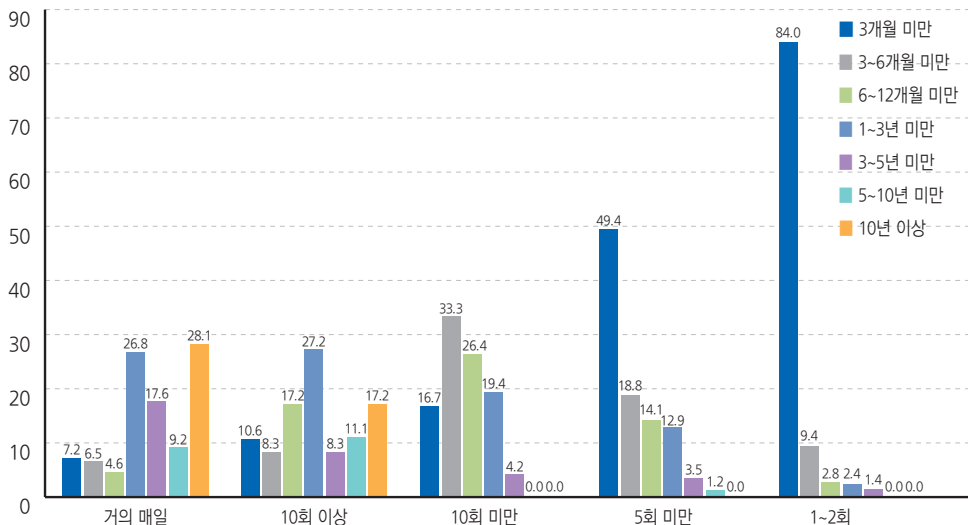
[표 6-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11	7.2	19	10.6	12	16.7	42	49.4	178	84.0	262	37.3
	3~6개월 미만	10	6.5	15	8.3	24	33.3	16	18.8	20	9.4	85	12.1
	6~12개월 미만	7	4.6	31	17.2	19	26.4	12	14.1	6	2.8	75	10.7
	1~3년 미만	41	26.8	49	27.2	14	19.4	11	12.9	5	2.4	120	17.1
	3~5년 미만	27	17.6	15	8.3	3	4.2	3	3.5	3	1.4	51	7.3
	5~10년 미만	14	9.2	20	11.1	-	-	1	1.2	-	-	35	5.0
	10년 이상	43	28.1	31	17.2	-	-	-	-	-	-	74	10.5
계		153	100.0	180	100.0	72	100.0	85	100.0	212	100.0	702	100.0

[그림 6-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



바. 발달장애인 학대 유형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가 25.4%(17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3.9%(168건), 중복 학대 23.1%(162건), 정서적 학대 12.8%(90건), 성적 학대 10.5%(74건), 방임 4.3%(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분포와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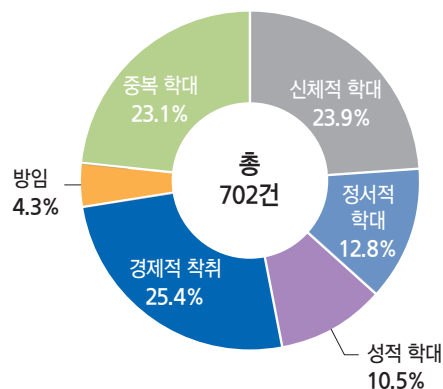
전년도 발달장애인 학대 유형 발생 순서인 신체적 학대(25.6%) - 중복 학대(25.1%) - 경제적 착취(23.4%) - 성적 학대(11.2%) - 정서적 학대(8.7%) - 방임(5.7%) - 유기(0.3%) 등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 경제적 착취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대유형의 양상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표 6-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68	23.9
정서적 학대	90	12.8
성적 학대	74	10.5
경제적 착취	178	25.4
유기	-	-
방임	30	4.3
중복 학대	162	23.1
계	702	100.0

[그림 6-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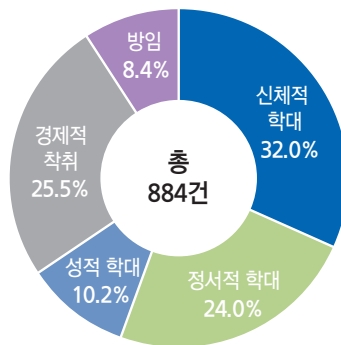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 총 702건 중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884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32.0%(28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5%(225건), 정서적 학대 24.0%(212건), 성적 학대 10.2%(90건), 방임 8.4%(74건) 순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발생 순서와 동일하다.

[표 6-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83	32.0
정서적 학대	212	24.0
성적 학대	90	10.2
경제적 착취	225	25.5
유기	-	-
방임	74	8.4
계	884	100.0

[그림 6-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중복 학대 미분류)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중복 학대 미분류)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분석의 대상은 학대사례 총 702건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중복으로 경험한 학대 유형 총 884건이다.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남성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방임에서 많은 피해를 겪었고, 여성은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서 학대 피해가 많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서적 학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졌다.

[표 6-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남성	157	55.5	104	49.1	15	16.7	140	62.2	43	58.1	459	51.9
여성	126	45.5	108	50.9	75	83.3	85	37.8	31	41.9	425	48.1
계	283	100.0	212	100.0	90	100.0	225	100.0	74	100.0	884	100.0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20대가 모든 학대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는 20대, 30대, 19세 이하, 40대 순이며, 주로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의 연령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그중 20대의 경우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의 수치가 5.9%p 높았다.

[표 6-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17세 이하	48	17.0	40	18.9	16	17.8	1	0.4	16	21.6	121	13.7
18~19세	14	4.9	11	5.2	2	2.2	4	1.8	5	6.8	36	4.1
20대(20~29세)	86	30.4	71	33.5	42	46.7	82	36.4	21	28.4	302	34.2
30대(30~39세)	43	15.2	41	19.3	18	20.0	48	21.3	18	24.3	168	19.0
40대(40~49세)	55	19.4	34	16.0	6	6.7	47	20.9	9	12.2	151	17.1
50대(50~59세)	25	8.8	10	4.7	5	5.6	32	14.2	1	1.4	73	8.3
60~64세	9	3.2	4	1.9	-	-	6	2.7	2	2.7	21	2.4
65세 이상	3	1.1	1	0.5	1	1.1	5	2.2	2	2.7	12	1.4
계	283	100.0	212	100.0	90	100.0	225	100.0	74	100.0	884	100.0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역시 거의 모든 학대유형에서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착취(33.3%)와 방임(43.2%)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학대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3개월 미만	125	44.2	50	23.6	57	63.3	58	25.8	9	12.2	299	33.8
3~6개월 미만	34	12.0	34	16.0	8	8.9	27	12.0	6	8.1	109	12.3
6~12개월 미만	20	7.1	29	13.7	8	8.9	21	9.3	9	12.2	87	9.8
1~3년 미만	49	17.3	40	18.9	9	10.0	44	19.6	18	24.3	160	18.1
3~5년 미만	21	7.4	22	10.4	2	2.2	20	8.9	11	14.9	76	8.6
5~10년 미만	15	5.3	9	4.2	1	1.1	15	6.7	8	10.8	48	5.4
10년 이상	19	6.7	28	13.2	5	5.6	40	17.8	13	17.6	105	11.9
계	283	100.0	212	100.0	90	100.0	225	100.0	74	100.0	884	100.0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학대행위자는 타인,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종사자, 신고의무가 없는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부, 모, 모르는 사람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45.9%)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6.5%)가 가장 많고, 부(16.6%),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3.8%), 모(10.6%)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는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종사자(42.5%)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6.8%), 부(11.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1.3%), 모(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타인(78.9%)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36.7%), 모르는 사람(16.7%), 이웃(14.4%), 동거인(10.0%)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는 타인(68.9%)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3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3.8%), 고용주·모르는 사람(13.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가족 및 친인척(47.3%)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나,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4.6%), 모(20.3%), 부(16.2%) 등의 순이었다.

[표 6-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3	8.1	12	5.7	-	-	3	1.3	1	1.4	39	4.4
	부	47	16.6	25	11.8	3	3.3	2	0.9	12	16.2	89	10.1
	모	30	10.6	16	7.5	-	-	2	0.9	15	20.3	63	7.1
	조부모	1	0.4	2	0.9	-	-	-	-	2	2.7	5	0.6
	자녀	6	2.1	2	0.9	-	-	-	-	-	-	8	0.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5	5.3	11	5.2	5	5.6	17	7.6	4	5.4	52	5.9
	그 외 친척	8	2.8	4	1.9	5	5.6	11	4.9	1	1.4	29	3.3
	소계	130	45.9	72	34.0	13	14.4	35	15.6	35	47.3	285	32.2
타인	동거인	17	6.0	7	3.3	9	10.0	13	5.8	1	1.4	47	5.3
	이웃	5	1.8	2	0.9	13	14.4	6	2.7	-	-	26	2.9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9	13.8	24	11.3	33	36.7	76	33.8	2	2.7	174	19.7
	고용주	-	-	4	1.9	1	1.1	30	13.3	-	-	35	4.0
	모르는 사람	6	2.1	3	1.4	15	16.7	30	13.3	-	-	54	6.1
	소계	67	23.7	40	18.9	71	78.9	155	68.9	3	4.1	336	38.0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5	26.5	78	36.8	3	3.3	31	13.8	33	44.6	220	24.9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	1.8	2	0.9	1	1.1	1	0.4	-	-	9	1.0
	보육교직원	-	-	2	0.9	-	-	-	-	-	-	2	0.2
	초·중·고 교직원 등	3	1.1	8	3.8	-	-	-	-	1	1.4	12	1.4
	소계	83	29.3	90	42.5	4	4.4	32	14.2	34	45.9	243	27.5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7	9	4.2	1	1.1	1	0.4	-	-	13	1.5
	경찰공무원	1	0.4	1	0.5	-	-	-	-	-	-	2	0.2
	소계	3	1.1	10	4.7	1	1.1	1	0.4	-	-	15	1.7
본인	-	-	-	-	-	-	-	-	-	2	2.7	2	0.2
파악 안 됨	-	-	-	-	1	1.1	2	0.9	-	-	3	0.3	
계	283	100.0	212	100.0	90	100.0	225	100.0	74	100.0	884	100.0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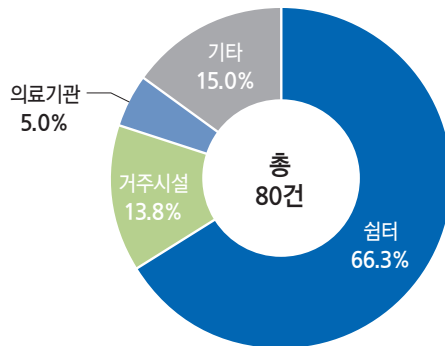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총 702건 중 응급조치는 11.4%(80건) 실시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쉼터로 응급보호 한 사례가 66.3%(53건), 거주시설 13.8%(11건), 의료기관 5.0%(4건), 기타 15.0%(12건)이다. 전년도 응급조치 실시 건수(78건)와 비교하면 수치는 비슷하지만, 거주시설·친인척 집 등으로의 응급조치(48.7%)는 줄고 쉼터로의 응급조치(44.9%)가 증가하였다.

[표 6-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53	11	4	12	80
66.3	13.8	5.0	15.0	100.0

[그림 6-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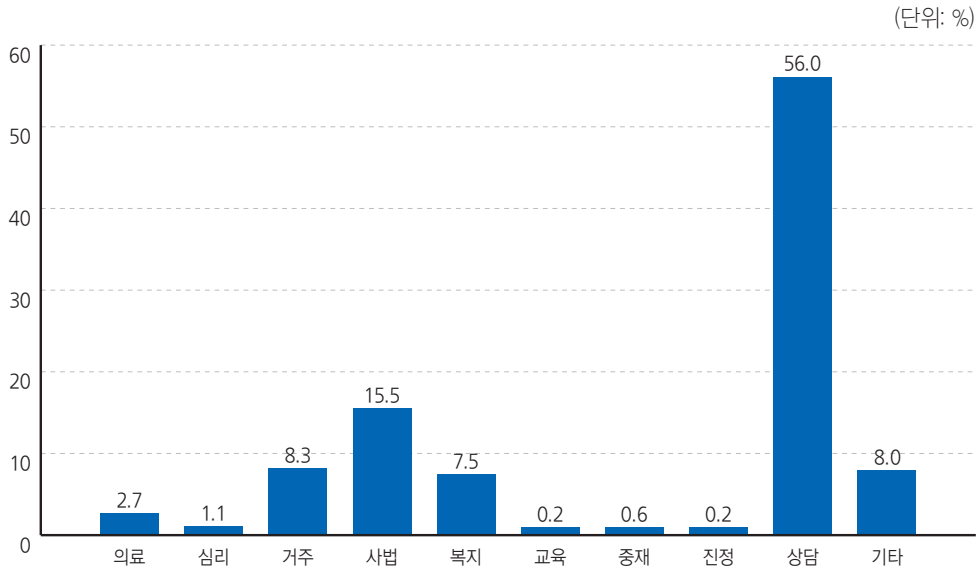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56.0%(4,838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법지원 15.5%(1,336회), 거주지원 8.3%(713회), 기타지원 8.0%(687회), 복지지원 7.5%(644회), 의료지원 2.7%(23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236	96	713	1,336	644	20	54	14	4,838	687	8,638
2.7	1.1	8.3	15.5	7.5	0.2	0.6	0.2	56.0	8.0	100.0

[그림 6-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발달장애인의 지원유형 중 사법지원은 총 1,336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중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27.8%(372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8.5%(113회), 고발 5.3%(71회) 등의 순이었다.

[표 6-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 대리	수사 의뢰	법률 상담	절차 지원	소송 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71	18	37	113	372	5	15	7	698	1,336
5.3	1.3	2.8	8.5	27.8	0.4	1.1	0.5	52.2	100.0

2. 장애아동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피해장애인 중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말한다.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268건이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33건, 잠재위험사례 36건, 비학대사례 85건, 조사 중인 사례 14건이었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2020년 전체 학대사례의 13.2%이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접수를 받아 현장조사, 분리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는 2,633,026명이며, 이중 장애아동은 2.9%(75,482명)이다.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역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2건(24.1%)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울산 22건(16.5%), 부산 20건(15.0%), 대전·강원 각각 11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서울	3	2.3	
부산	20	15.0	
대구	2	1.5	
인천	3	2.3	
광주	3	2.3	
대전	11	8.3	
울산	22	16.5	
세종	5	3.8	
경기	경기	19	14.3
	경기북부	13	9.8
	소계	32	24.1
강원	11	8.3	
충북	4	3.0	
충남	6	4.5	
전북	-	-	
전남	-	-	
경북	1	0.8	
경남	5	3.8	
제주	5	3.8	
계	133	100.0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1) 성별 및 연령

피해 장애아동의 성별은 남성 54.1%(72명), 여성 45.9%(61명)로 남성이 8.2%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장애아동사례의 27.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17세가 25.6%,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8%,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9세가 20.3%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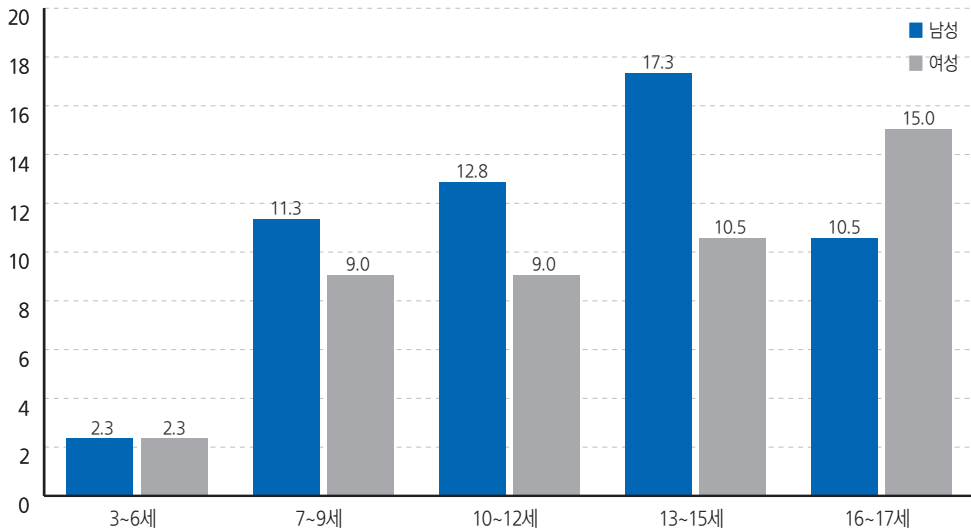
[표 6-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3~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남성	3	2.3	15	11.3	17	12.8	23	17.3	14	10.5	72	54.1
여성	3	2.3	12	9.0	12	9.0	14	10.5	20	15.0	61	45.9
계	6	4.5	27	20.3	29	21.8	37	27.8	34	25.6	133	100.0

[그림 6-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2) 장애유형 및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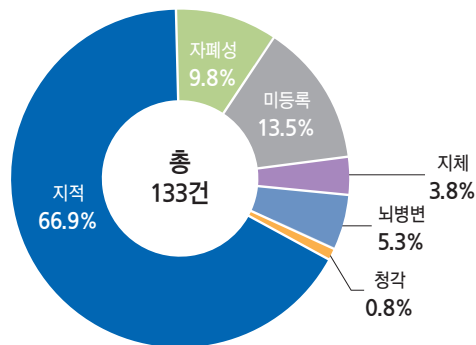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6.9%(8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 13.5%, 자폐성장애 9.8%, 뇌병변장애 5.3%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 장애아동 역시 대부분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인은 47.1%(3만5517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폐성장애인 20.5%(1만5454명), 뇌병변장애인 13.2%(9,964명), 언어장애인 5.9%(4,486명) 등의 순이다.

[표 6-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⁷⁾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5	3.8
뇌병변장애	7	5.3
청각장애	1	0.8
지적장애	89	66.9
자폐성장애	13	9.8
미등록	18	13.5
계	133	100.0

[그림 6-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7)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 중심이며, 부장애유형은 뇌병변 4건, 시각장애 3건, 청각장애 1건, 언어장애 1건, 지적장애 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아동 중 장애인 등록이 된 115건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9.1%(114건)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0.9%(1건)이었다.

[표 6-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114	99.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1	0.9
계	115	100.0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피해 장애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비수급자가 50.4%(67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45.1%(60건), 차상위수급자 4.5%(6건)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기초생활수급자 54.3%, 차상위수급자 2.5%, 비수급자 43.3%)와 비교하면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9.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60	6	67	133
45.1	4.5	50.4	100.0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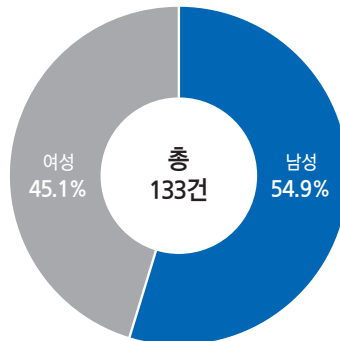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54.9%(73명)이며, 여성은 45.1%(60명)이었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남성 67.4%, 여성 32.6%)와 비교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6-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73	54.9	60	45.1	133	100.0

[그림 6-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2) 연령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37.6%(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24.1%(32명), 30대 13.5%(18명), 19세 이하 11.3%(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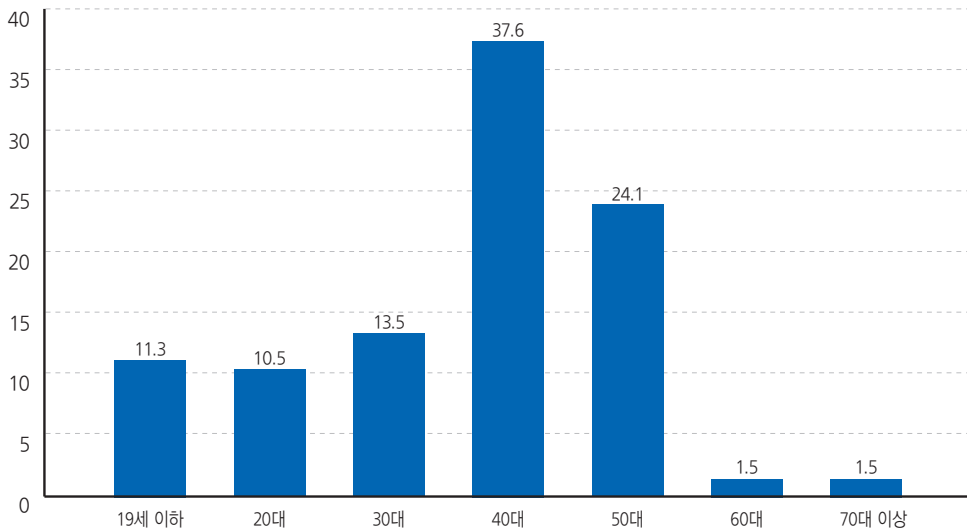
[표 6-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건수	비율
19세 이하	15	11.3
20대(20~29세)	14	10.5
30대(30~39세)	18	13.5
40대(40~49세)	50	37.6
50대(50~59세)	32	24.1
60대(60~69세)	2	1.5
70대 이상	2	1.5
계	133	100.0

[그림 6-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3) 피해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9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1.3%(15건), 초·중·고 교직원 7.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아동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이 56.4%(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23.3%(31건), 타인 17.3%(23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3.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에서 타인(41.7%)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 부(26.3%), 모(22.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경우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1.3%), 동거인(3.0%) 등의 순이며,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4.3%), 초·중·고 교직원(7.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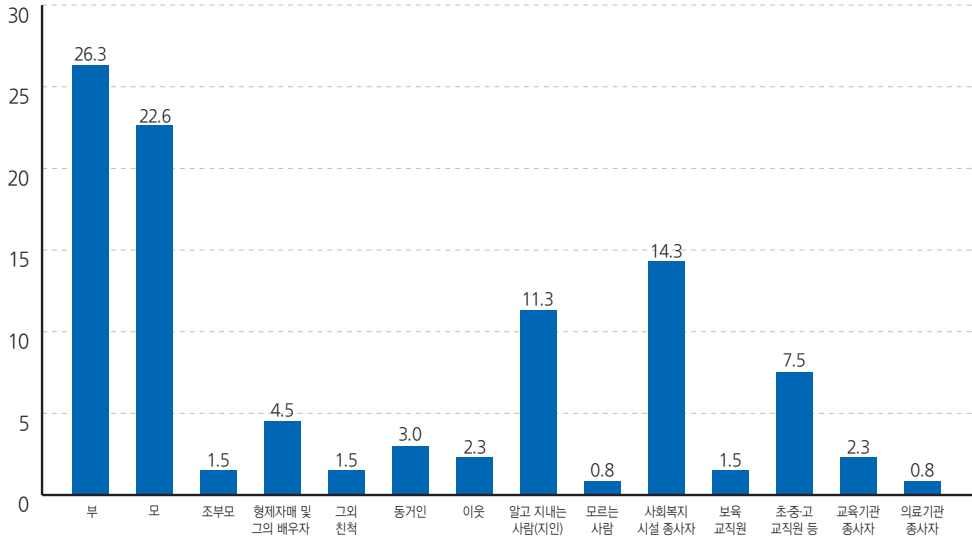
[표 6-27]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부	35	26.3
	모	30	22.6
	조부모	2	1.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6	4.5
	그 외 친척	2	1.5
	소계	75	56.4
타인	동거인	4	3.0
	이웃	3	2.3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5	11.3
	모르는 사람	1	0.8
	소계	23	17.3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	14.3
	보육교직원	2	1.5
	초·중·고 교직원 등	10	7.5
	소계	31	23.3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	2.3
	의료기관 종사자	1	0.8
	소계	4	3.0
계		133	100.0

[그림 6-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1) 학대 발생장소

장애아동 학대는 피해아동 거주지에서 54.1%(72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17.3%(23건), 교육기관 13.5%(18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7.5%(10건)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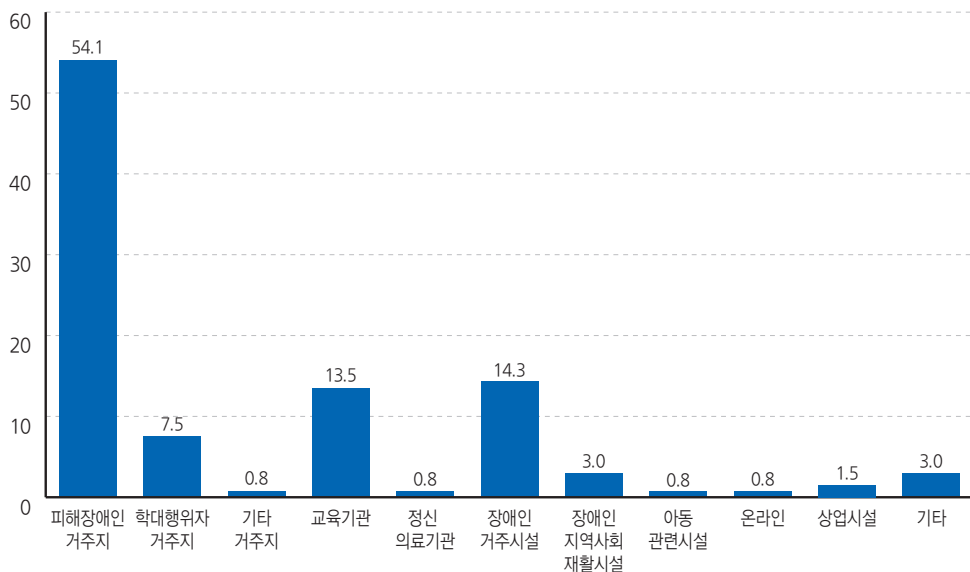
[표 6-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72	54.1
학대행위자 거주지		10	7.5
기타 거주지		1	0.8
교육기관		18	13.5
정신 의료기관		1	0.8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9	14.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	3.0
	소계	23	17.3
아동관련시설		1	0.8
온라인		1	0.8
상업시설		2	1.5
기타		4	3.0
계		133	100.0

[그림 6-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아동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49.6%(66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1년 이내(72.2%)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사례도 12.8%(17건)에 이르고, 거의 매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아동은 19.5%(26건)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달리 돌봄과 보호·치료 등에 있어 일상생활 지원이 요구되며, 또 각종 활동 및 참여에 다양한 제약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학대상황을 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장애아동과는 다른 방식의 학대 예방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표 6-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3	2.3	8	6.0	1	0.8	9	6.8	45	33.8	66	49.6
	3~6개월 미만	-	-	5	3.8	6	4.5	2	1.5	1	0.8	14	10.5
	6~12개월 미만	4	3.0	9	6.8	1	0.8	1	0.8	1	0.8	16	12.0
	1~3년 미만	8	6.0	10	7.5	1	0.8	1	0.8	-	-	20	15.0
	3~5년 미만	3	2.3	2	1.5	-	-	1	0.8	-	-	6	4.5
	5~10년 미만	6	4.5	2	1.5	-	-	-	-	-	-	8	6.0
	10년 이상	2	1.5	1	0.8	-	-	-	-	-	-	3	2.3
계		26	19.5	37	27.8	9	6.8	14	10.5	47	35.3	133	100.0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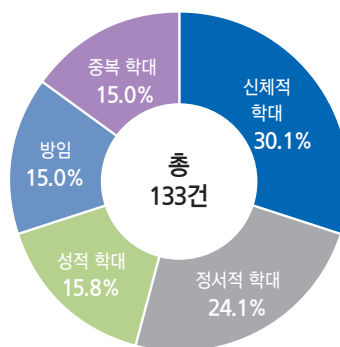
장애아동의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0.1%(4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1%(32건), 성적 학대 15.8%(21건), 방임 15.0%(20건), 중복 학대 15.0%(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수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는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은 중복 학대(48.2%), 정서적 학대(25.4%), 신체적 학대(13.9%), 방임(9.6%), 성적 학대(2.9%) 순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표 6-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40	30.1
정서적 학대	32	24.1
성적 학대	21	15.8
경제적 착취	-	-
유기	-	-
방임	20	15.0
중복 학대	20	15.0
계	133	100.0

[그림 6-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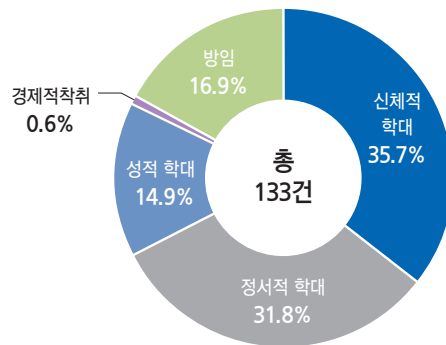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 총 133건 중 학대피해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154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35.7%(55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31.8%(49건), 방임 16.9%(26건), 성적 학대 14.9%(23건), 경제적 착취 0.6%(1건) 순이다.

[표 6-31]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55	35.7
정서적 학대	49	31.8
성적 학대	23	14.9
경제적 착취	1	0.6
유기	-	-
방임	26	16.9
계	154	100.0

[그림 6-17]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장애아동 학대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분석은 학대피해사례 총 133건 중 장애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 총 154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피해 장애아동은 성적 학대를 제외하면 남성이 모든 학대유형에서 여성보다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38.2%p 높았고, 정서적 학대는 2.0%p, 방임은 30.8%p 높게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이 78.3%로 남성에 비해 약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남성	38	69.1	25	51.0	5	21.7	1	100.0	17	65.4	86	55.8
여성	17	30.9	24	49.0	18	78.3	-	-	9	34.6	68	44.2
계	55	100.0	49	100.0	23	100.0	1	100.0	26	100.0	154	100.0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피해 장애아동은 만 13~15세의 연령에서 모든 학대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학대는 학령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학대 고위험 가정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6-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3~6세	-	-	3	6.1	1	4.3	-	-	2	7.7	6	3.9
7~9세	13	23.6	13	26.5	1	4.3	-	-	3	11.5	30	19.5
10~12세	15	27.3	6	12.2	3	13.0	-	-	8	30.8	32	20.8
13~15세	15	27.3	13	26.5	9	39.1	1	100.0	8	30.8	46	29.9
16~17세	12	21.8	14	28.6	9	39.1	-	-	5	19.2	40	26.0
계	55	100.0	49	100.0	23	100.0	1	100.0	26	100.0	154	100.0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순이며, 세부 행위자별로 보면 부·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초·중·고 교직원 등의 순이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74.5%)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모(69.1%)가 가장 많고,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0.9%) 등의 순이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46.9%)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0.6%), 부(28.6%), 초·중·고 교직원 등(12.2%), 모(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타인(56.5%)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39.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3.0%)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가족 및 친인척(88.5%)에 의해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는 모(57.7%), 부(23.1%) 등의 순이다.

[표 6-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부	25	45.5	14	28.6	2	8.7	-	-	6	23.1	47	30.5
	모	13	23.6	4	8.2	-	-	-	-	15	57.7	32	20.8
	조부모	-	-	1	2.0	1	4.3	-	-	1	3.8	3	1.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5.5	-	-	3	13.0	-	-	1	3.8	7	4.5
	그 외 친척	-	-	-	-	2	8.7	-	-	-	-	2	1.3
	소계	41	74.5	19	38.8	8	34.8	-	-	23	88.5	91	59.1
타인	동거인	1	1.8	1	2.0	2	8.7	-	-	-	-	4	2.6
	이웃	-	-	2	4.1	1	4.3	-	-	-	-	3	1.9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	10.9	1	2.0	9	39.1	1	100.0	-	-	17	11.0
	모르는 사람	-	-	-	-	1	4.3	-	-	-	-	1	0.6
	소계	7	12.7	4	8.2	13	56.5	1	100.0	-	-	25	16.2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	5.5	15	30.6	2	8.7	-	-	2	7.7	22	14.3
	보육교직원	-	-	2	4.1	-	-	-	-	-	-	2	1.3
	초·중·고 교직원 등	3	5.5	6	12.2	-	-	-	-	1	3.8	10	6.5
	소계	6	10.9	23	46.9	2	8.7	-	-	3	11.5	34	22.1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3	6.1	-	-	-	-	-	-	3	1.9
	의료기관 종사자	1	1.8	-	-	-	-	-	-	-	-	1	0.6
	소계	1	1.8	3	6.1	-	-	-	-	-	-	4	2.6
계		55	100.0	49	100.0	23	100.0	1	100.0	26	100.0	154	100.0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장애아동 학대사례 총 133건 중에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9.0%(12건)이다. 그중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쉼터로 응급보호 한 사례는 9건(75.0%), 거주시설 2건(16.7%), 기타 1건(8.3%)이다.

[표 6-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기타	계
9	2	1	12
75.0	16.7	8.3	100.0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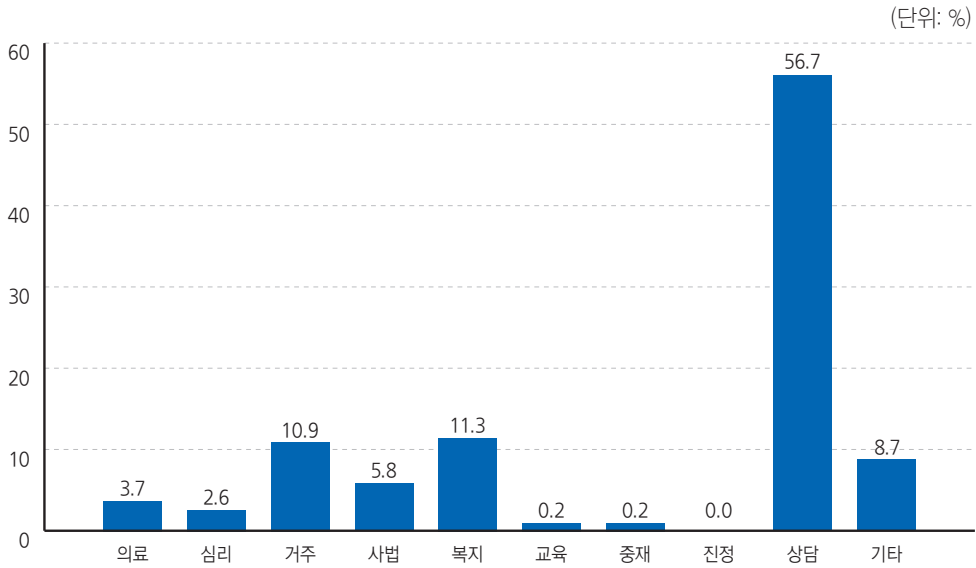
장애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상담지원이 56.7%(746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지원 11.3%(149회), 거주지원 10.9%(143회), 기타지원 8.7%(114회), 사법지원 5.8%(76회), 의료지원 3.7%(48회), 심리지원 2.6%(3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48	34	143	76	149	3	2	-	746	114	1,315
3.7	2.6	10.9	5.8	11.3	0.2	0.2	-	56.7	8.7	100.0

[그림 6-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장애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은 총 76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기타를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46.1%(35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6.6%(5회), 수사의뢰 3.9%(3회), 고발 2.6%(2회), 소송구조 1.3%(1회) 순이었다.

[표 6-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 대리	수사 의뢰	법률 상담	절차 지원	소송 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2	-	3	5	35	1	-	-	30	76
2.6	-	3.9	6.6	46.1	1.3	-	-	39.5	100.0

3. 노동력 착취사례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는 총 88건이다. 이는 전체 학대사례(1,008건) 중 8.7%이며, 경제적 착취 사례 321건 중 27.4%가 노동력 착취 피해를 겪었다. 전년도(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 94건)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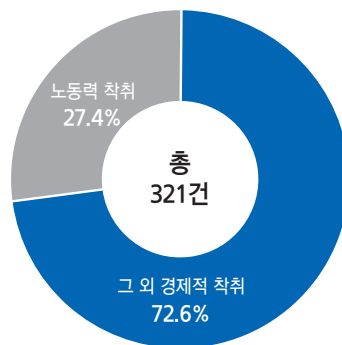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로 일명 '노예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력 착취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력 착취는 지난 2014년 '염전 노예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표 6-38] 노동력 착취 발생

(단위: 건, %)

경제적착취			경제적 착취사례 중 노동력 착취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
노동력 착취 포함	노동력 착취 미포함	계		
88	233	321	27.4	8.7

[그림 6-19] 노동력 착취 발생



가. 피해장애인

1) 성별 및 연령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3.6%(56명), 여성이 36.4%(32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40대가 23.9%(2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9.3%(17명), 50대 18.2%(16명)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의 장애 노인도 14.8%(13명)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노동력 착취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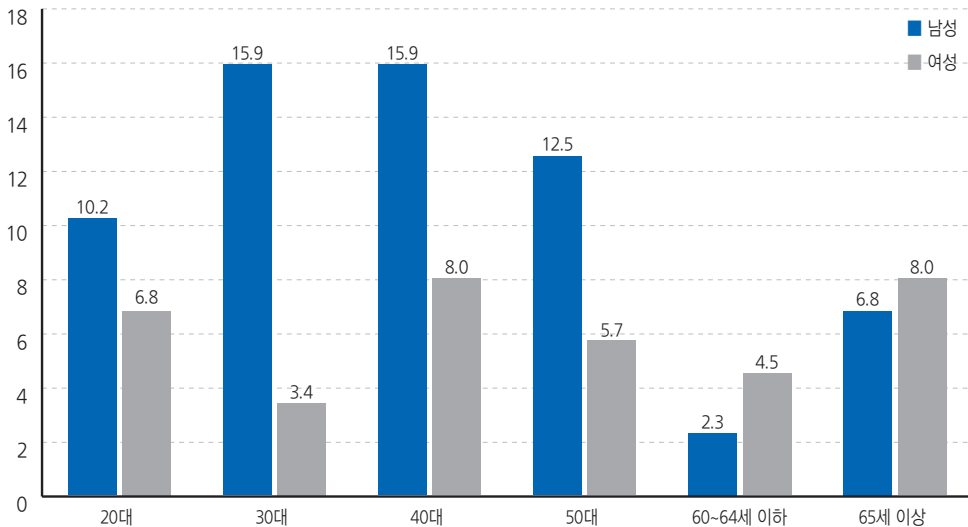
[표 6-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이하		65세 이상		계	
남성	9	10.2	14	15.9	14	15.9	11	12.5	2	2.3	6	6.8	56	63.6
여성	6	6.8	3	3.4	7	8.0	5	5.7	4	4.5	7	8.0	32	36.4
계	15	17.0	17	19.3	21	23.9	16	18.2	6	6.8	13	14.8	88	100.0

[그림 6-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2)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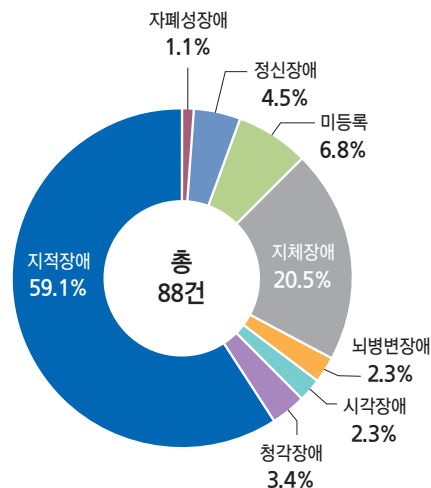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9.1%(52건)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 20.5%(18건), 미등록 6.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가 전체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64.8%로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과 비교하면 지적장애 피해자 비율(69.1%)은 10.0%p 감소했으나, 지체장애 피해자 비율(5.3%)은 15.2%p 증가했다.

[표 6-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18	20.5
뇌병변장애	2	2.3
시각장애	2	2.3
청각장애	3	3.4
지적장애	52	59.1
자폐성장애	1	1.1
정신장애	4	4.5
미등록	6	6.8
계	88	100.0

[그림 6-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3) 거주유형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가 85.2%(75건)이며, 장애인거주시설 등 시설이 14.8%(13건)로 나타났다. 전년도(재가 58.5%, 55건)와 비교하면 재가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피해가 크게 늘었다.

[표 6-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75	85.2	13	14.8	88	100.0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비수급자가 62.5%(55건)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37.5%(33건)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54.3%)보다 16.8%p 낮았고, 전년도(57명)와 비교했을때에도 42.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33	-	55	88
37.5	-	62.5	100.0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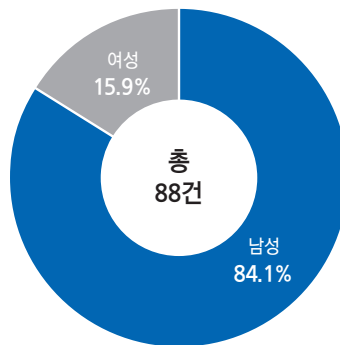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남성이 84.1%(74명)이며, 여성은 15.9%(14명)로 학대행위자는 주로 남성으로, 여성보다 약 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74	84.1	14	15.9	88	100.0

[그림 6-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2) 연령

노동력 착취 행위자의 연령은 70대가 37.5%(3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26.1%(23명), 60대 15.9%(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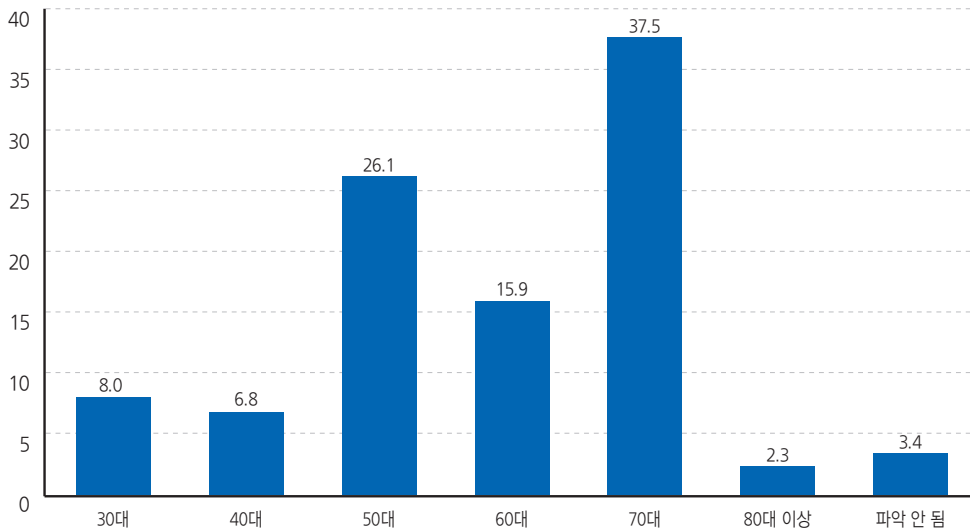
[표 6-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30대(30~39세)	7	8.0
40대(40~49세)	6	6.8
50대(50~59세)	23	26.1
60대(60~69세)	14	15.9
70대(70~79세)	33	37.5
80세 이상	2	2.3
파악 안 됨	3	3.4
계	88	100.0

[그림 6-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노동력 착취는 행위자가 타인인 경우가 81.8%(72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종사자 10.2%(9건), 가족 및 친인척 6.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54.5%(4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3%(17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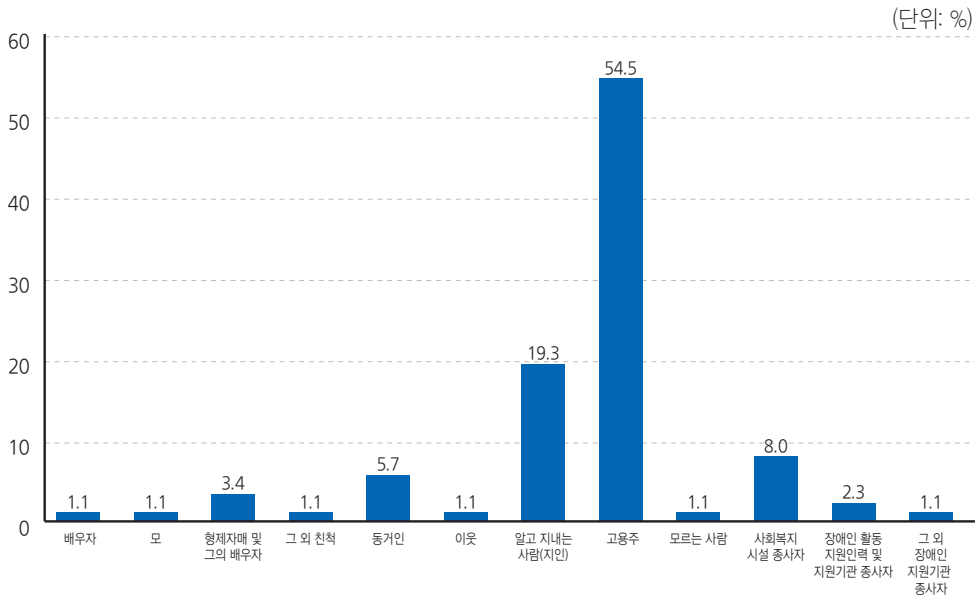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나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등 타인에 의해 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거주·요양·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서도 치료와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기도 한다. 전년도(34건)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는 79.4% 감소했다.

[표 6-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	1.1
	모	1	1.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3.4
	그 외 친척	1	1.1
	소계	6	6.8
타인	동거인	5	5.7
	이웃	1	1.1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7	19.3
	고용주	48	54.5
	모르는 사람	1	1.1
	소계	72	81.8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	8.0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	2.3
	소계	9	10.2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1.1
	소계	1	1.1
계		88	100.0

[그림 6-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노동력 착취의 발생장소를 보면 피해장애인의 직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53.4%(4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인 거주지 15.9%(14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10.2%(9건), 종교시설 6.8%(6건),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거주 시설 5.7%(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39건, 41.5%)와 비교했을때 노동력 착취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례는 8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6-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이 복지기관과 종사자들의 인식의 변화인지,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복지환경의 변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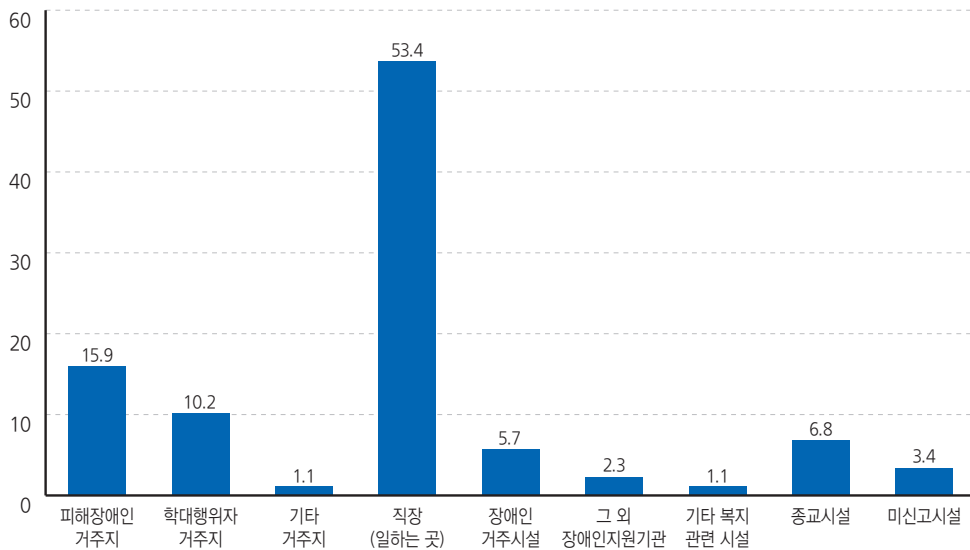
[표 6-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4	15.9
학대행위자 거주지	9	10.2
기타 거주지	1	1.1
직장(일하는 곳)	47	53.4
장애인거주시설	5	5.7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	2.3
기타 복지관련시설	1	1.1
종교시설	6	6.8
미신고시설	3	3.4
계	88	100.0

[그림 6-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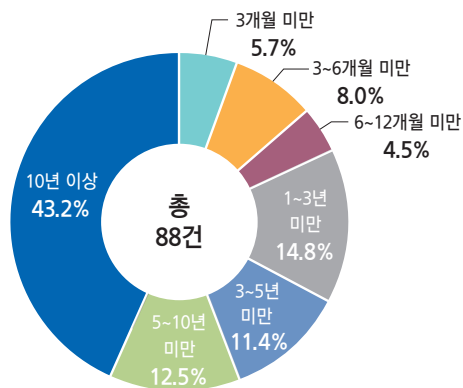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가 3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67.0%(59건)이며, 특히 10년 이상 피해를 겪은 사례가 43.2%(3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지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12.1%, 122건)와 비교했을 때 31.1%p 높다는 것은 노동력 착취가 신체적 학대 등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피해장애인들이 본인의 피해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지속기간이 길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6-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5	5.7
3~6개월 미만	7	8.0
6~12개월 미만	4	4.5
1~3년 미만	13	14.8
3~5년 미만	10	11.4
5~10년 미만	11	12.5
10년 이상	38	43.2
계	88	100.0

[그림 6-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노동력 착취사례는 총 88건이며, 이중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4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쉼터 10건, 기타 3건, 거주시설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기타	계
10	1	3	14
71.4	7.1	21.4	100.0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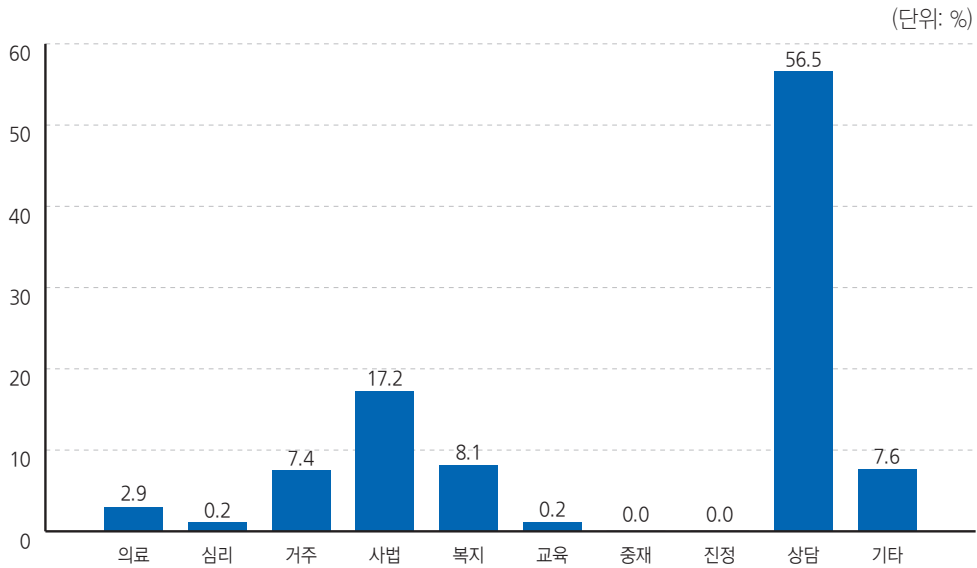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상담지원이 56.5%(647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법지원 17.2%(197회), 복지지원 8.1%(93회), 기타지원 7.6%(87회), 거주지원 7.4%(85회), 의료지원 2.9%(3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33	2	85	197	93	2	-	-	647	87	1,146
2.9	0.2	7.4	17.2	8.1	0.2	-	-	56.5	7.6	100.0

[그림 6-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은 총 197회였다. 기타를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33.5%(66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7.6%(15회), 고발 4.1%(8회), 수사의뢰 3.6%(7회) 등의 순이었다.

[표 6-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 대리	수사 의뢰	법률 상담	절차 지원	소송 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8	1	7	15	66	-	3	7	90	197
4.1	0.5	3.6	7.6	33.5	-	1.5	3.6	45.7	100.0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의미한다.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례를 말한다.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557개로 총 33,954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수어통역센터 등)은 1,468개이며, 의료재활시설은 1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은 683개가 있다.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2020년 전체 학대사례의 26.5%(267건)이다. 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56.2%(15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11.2%(30건), 미신고시설 8.2%(22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7.5%(20건),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358건, 전체 학대사례의 37.9%)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25.4%, 세부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32.4%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복지서비스 기관 및 치료센터 등의 휴관 및 휴원, 외부인(자원봉사자 등)의 방문 제한, 학교 등의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가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기관 및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한 영향인지는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6-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시설유형	건수	비율
교육기관	30	11.2
정신 의료기관	9	3.4
장애인거주시설	150	56.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	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	2.6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0	7.5
정신요양시설	2	0.7
보호시설(쉼터)	1	0.4
아동관련시설	1	0.4
노인관련시설	4	1.5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7
미신고시설	22	8.2
계	267	100.0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시도별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면 서울이 27.3%(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7.0%(72건), 전북 10.1%(27건), 경북 4.9%(13건), 경남 4.5%(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서울(23건)과 전북(8건)이 크게 늘어났으며, 나머지 시도들은 대부분 감소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서울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9건), 전북(20건), 충북·경북(각각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과 거주 장애인 수는 경기도(318개, 5,970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281개, 3,654명), 경남(95개, 1,907명), 경북(92개, 2,561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학대는 경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8건), 울산(7건) 등의 순이었다.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경기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서울 8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경기 9건, 정신 의료기관은 경남 6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기 4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표 6-5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서울	-	-	-	-	62	23.2	1	0.4	-	-	8	3.0	-	-	1	0.4	1	0.4	73	27.3	
부산	-	-	1	0.4	2	0.7	1	0.4	-	-	-	-	-	-	-	-	-	-	4	1.5	
대구	-	-	-	-	1	0.4	-	-	-	-	4	1.5	1	0.4	2	0.7	-	-	8	3.0	
인천	-	-	-	-	6	2.2	-	-	-	-	-	-	-	-	1	0.4	-	-	7	2.6	
광주	-	-	-	-	2	0.7	2	0.7	-	-	-	-	-	-	-	-	-	-	4	1.5	
대전	1	0.4	-	-	3	1.1	-	-	-	-	-	-	-	-	-	-	-	-	4	1.5	
울산	7	2.6	-	-	-	-	-	-	-	-	-	-	1	0.4	-	-	-	-	8	3.0	
세종	-	-	-	-	1	0.4	2	0.7	1	0.4	2	0.7	-	-	1	0.4	-	-	7	2.6	
경기	경기	11	4.1	1	0.4	8	3.0	3	1.1	4	1.5	-	-	-	-	1	0.4	14	5.2	42	15.7
	경기북부	-	-	-	-	21	7.9	6	2.2	-	-	-	-	-	-	-	3	1.1	30	11.2	
	소계	11	4.1	1	0.4	29	10.9	9	3.4	4	1.5	-	-	-	-	1	0.4	17	6.4	72	27.0
강원	1	0.4	-	-	2	0.7	2	0.7	-	-	-	-	-	-	-	-	1	0.4	6	2.2	
충북	-	-	-	-	9	3.4	-	-	-	-	-	-	-	-	2	0.7	-	-	11	4.1	
충남	8	3.0	-	-	-	-	-	-	1	0.4	1	0.4	-	-	-	-	-	-	10	3.7	
전북	-	-	-	-	20	7.5	-	-	-	-	4	1.5	-	-	-	-	3	1.1	27	10.1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1	0.4	1	0.4	9	3.4	1	0.4	1	0.4	-	-	-	-	-	-	-	-	13	4.9	
경남	1	0.4	6	2.2	4	1.5	1	0.4	-	-	-	-	-	-	-	-	-	-	12	4.5	
제주	-	-	-	-	-	-	-	-	-	-	1	0.4	-	-	-	-	-	-	1	0.4	
계	30	11.2	9	3.4	150	56.2	19	7.1	7	2.6	20	7.5	2	0.7	8	3.0	22	8.0	267	100.0	

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장애인

1) 성별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은 남성 58.8%(157명), 여성 41.2%(110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배 많았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집단이용시설에서 남성이 많았다.

[표 6-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남성	17	6.4	7	2.6	80	30.0	9	3.4	6	2.2	15	5.6	2	0.7	4	1.5	17	6.4	157	58.8
여성	13	4.9	2	0.7	70	26.2	10	3.7	1	0.4	5	1.9	-	-	4	1.5	5	1.9	110	41.2
계	30	11.2	9	3.4	150	56.2	19	7.1	7	2.6	20	7.5	2	0.7	8	3.0	22	8.2	267	100.0

2) 연령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8.5%(7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세 이하 20.2%(54명), 30대 19.9%(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20대가 16.1%(4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3.9%(37명), 40대 10.1%(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17세 이하 장애아동에서 가장 많았다. 미신고시설은 50대, 장애인복지시설 외 장애인지원기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대, 정신 의료기관은 60~64세 이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0대 등에서 가장 많았다.

[표 6-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7세 이하	18	6.7	1	0.4	19	7.1	4	1.5	-	-	-	-	-	-	1	0.4	-	-	43	16.1
18~19세	5	1.9	-	-	4	1.5	-	-	1	0.4	-	-	-	-	-	-	1	0.4	11	4.1
20대(20~29세)	6	2.2	1	0.4	43	16.1	12	4.5	1	0.4	11	4.1	-	-	-	-	2	0.7	76	28.5
30대(30~39세)	-	-	1	0.4	37	13.9	2	0.7	3	1.1	2	0.7	1	0.4	1	0.4	6	2.2	53	19.9
40대(40~49세)	-	-	1	0.4	27	10.1	1	0.4	1	0.4	1	0.4	-	-	1	0.4	4	1.5	36	13.5
50대(50~59세)	-	-	1	0.4	13	4.9	-	-	1	0.4	3	1.1	1	0.4	3	1.1	8	3.0	30	11.2
60~64세 이하	-	-	4	1.5	3	1.1	-	-	-	-	3	1.1	-	-	2	0.7	1	0.4	13	4.9
65세 이상	1	0.4	-	-	4	1.5	-	-	-	-	-	-	-	-	-	-	-	-	5	1.9
계	30	11.2	9	3.4	150	56.2	19	7.1	7	2.6	20	7.5	2	0.7	8	3.0	22	8.2	267	100.0

3) 장애유형 및 정도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0%(17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9.0%(24건), 뇌병변장애 8.2%(22건), 정신장애 4.5%(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집단이용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체장애	-	-	1	0.4	14	5.2	-	-	1	0.4	3	1.1	-	-	1	0.4	4	1.5	24	9.0
뇌병변장애	1	0.4	1	0.4	15	5.6	1	0.4	-	-	-	-	-	-	3	1.1	1	0.4	22	8.2
시각장애	1	0.4	-	-	8	3.0	-	-	-	-	1	0.4	-	-	-	-	-	-	10	3.7
청각장애	-	-	-	-	3	1.1	-	-	-	-	-	-	1	0.4	-	-	-	-	4	1.5
지적장애	23	8.6	-	-	102	38.2	16	6.0	5	1.9	15	5.6	-	-	3	1.1	15	5.6	179	67.0
자폐성장애	4	1.5	-	-	4	1.5	1	0.4	1	0.4	-	-	-	-	-	-	-	-	10	3.7
정신장애	-	-	5	1.9	4	1.5	-	-	-	-	-	-	1	0.4	1	0.4	1	0.4	12	4.5
미등록	1	0.4	2	0.7	-	-	1	0.4	-	-	1	0.4	-	-	-	-	1	0.4	6	2.2
계	30	11.2	9	3.4	150	56.2	19	7.1	7	2.6	20	7.5	2	0.7	8	3.0	22	8.2	267	100.0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9.6%(260건)이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0.4%(1건)이었다. 피해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표 6-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29	11.1	7	2.7	150	57.5	18	6.9	7	2.7	19	7.3	1	0.4	8	3.1	21	8.0	260	99.6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	-	-	-	-	-	-	-	-	-	-	-	-	1	0.4	-	-	-	-	1	0.4
계	29	11.1	7	2.7	150	57.5	18	6.9	7	2.7	19	7.3	2	0.8	8	3.1	21	8.0	261	100.0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36.7%(98건)이고, 비신고의무자가 63.3%(169건)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높았다. 전년도(183건)와 비교하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46.4% 감소했다.

신고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33.3%)의 신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5.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찰공무원(11.6%), 초·중·고 교직원 등(4.9%), 교육기관 종사자(4.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집단이용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4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이용시설별 신고자는 교육기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들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28.5%),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7.6%) 등의 순이다. 교육기관의 학대신고는 신고의무자인 초·중·고 교직원 등(4.9%), 비신고의무자인 교육기관 종사자(2.6%) 등의 순이다. 미신고시설은 경찰공무원(5.2%), 장애인복지시설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비신고의무자인 교육기관 종사자(1.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 정신의료기관은 경찰공무원(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2%) 등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표 6-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	-	8	3.0	1	0.4	-	-	-	-	1	0.4	1	0.4	-	-	11	4.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0.7	-	-	47	17.6	5	1.9	6	2.2	3	1.1	-	-	2	0.7	2	0.7	67	25.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	0.4	-	-	-	-	-	-	-	-	2	0.7	-	-	-	-	1	0.4	4	1.5	
	정신건강 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	-	-	-	1	0.4	-	-	-	-	-	-	-	-	-	-	1	0.4	
	보육교직원	-	-	-	-	-	-	-	-	-	-	-	-	-	1	0.4	-	-	-	1	0.4	
	초·중·고 교직원 등	13	4.9	-	-	-	-	-	-	-	-	-	-	-	-	-	-	-	-	13	4.9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0.4	-	-	-	-	-	-	-	-	-	-	-	-	-	-	-	-	1	0.4	
	소계	17	6.4	-	-	55	20.6	7	2.6	6	2.2	5	1.9	1	0.4	4	1.5	3	1.1	98	36.7	
비신고의무자	본인	-	-	1	0.4	-	-	1	0.4	1	0.4	-	-	-	-	-	-	1	0.4	4	1.5	
	가족 및 친인척	부모	1	0.4	-	-	2	0.7	-	-	-	-	1	0.4	-	-	-	-	-	4	1.5	
		자녀	-	-	-	-	-	-	-	-	-	-	-	-	1	0.4	-	-	-	1	0.4	
		형제자매	-	-	2	0.7	-	-	-	-	-	-	-	-	-	-	-	-	-	2	0.7	
		소계	1	0.4	2	0.7	2	0.7	-	-	-	-	1	0.4	-	-	1	0.4	-	-	7	2.6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	-	-	-	7	2.6	2	0.7	-	-	2	0.7	-	-	-	-	-	11	4.1	
		경찰공무원	3	1.1	6	2.2	5	1.9	3	1.1	-	-	-	-	-	-	-	14	5.2	31	11.6	
		공공기관 종사자	-	-	-	-	2	0.7	-	-	-	-	-	-	-	-	-	-	-	2	0.7	
		교육기관 종사자	7	2.6	-	-	-	-	-	-	-	5	1.9	-	-	-	-	-	-	12	4.5	
		그 외 장애인지원 기관 종사자	1	0.4	-	-	76	28.5	3	1.1	-	-	4	1.5	-	-	2	0.7	3	1.1	89	33.3
		노인관련 기관 종사자	-	-	-	-	-	-	-	-	-	-	-	-	1	0.4	-	-	-	1	0.4	
		기타 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	-	-	-	-	-	-	-	-	-	-	1	0.4	-	-	1	0.4	2	0.7	
		소계	11	4.1	6	2.2	90	33.7	8	3.0	-	-	11	4.1	1	0.4	3	1.1	18	6.7	148	55.4
타인	1	0.4	-	-	2	0.7	3	1.1	-	-	3	1.1	-	-	-	-	-	-	9	3.4		
파악 안 됨	-	-	-	-	1	0.4	-	-	-	-	-	-	-	-	-	-	-	-	1	0.4		
소계	13	4.9	9	3.4	95	35.6	12	4.5	1	0.4	15	5.6	1	0.4	4	1.5	19	7.1	169	63.3		
계	30	11.2	9	3.4	150	56.2	19	7.1	7	2.6	20	7.5	2	0.7	8	3.0	22	8.2	267	100.0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34.5%(9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 16.5%(44건), 3~6개월 미만 12.7%(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이용시설의 학대는 대부분 1년 미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하는 공간에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거주시설(24.0%)과 미신고시설(72.7%)의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집단이용시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58]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자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18	6.7	1	0.4	41	15.4	9	3.4	1	0.4	16	6.0	2	0.7	4	1.5	-	-	92	34.5
3~6개월 미만	3	1.1	2	0.7	26	9.7	2	0.7	-	-	-	-	-	-	-	-	1	0.4	34	12.7
6~12개월 미만	6	2.2	-	-	21	7.9	-	-	2	0.7	1	0.4	-	-	-	-	-	-	30	11.2
1~3년 미만	2	0.7	-	-	26	9.7	2	0.7	4	1.5	3	1.1	-	-	2	0.7	5	1.9	44	16.5
3~5년 미만	1	0.4	-	-	21	7.9	6	2.2	-	-	-	-	-	-	-	-	4	1.5	32	12.0
5~10년 미만	-	-	1	0.4	2	0.7	-	-	-	-	-	-	-	-	-	-	5	1.9	8	3.0
10년 이상	-	-	5	1.9	13	4.9	-	-	-	-	-	-	-	-	2	0.7	7	2.6	27	10.1
계	30	11.2	9	3.4	150	56.2	19	7.1	7	2.6	20	7.5	2	0.7	8	3.0	22	8.2	267	100.0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가 35.2%(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1.7%(58건), 정서적 학대 18.0%(48건), 경제적 착취 14.2%(38건), 성적 학대 7.1%(19건), 방임 3.7%(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 I 에서 경제적 착취(25.5%) - 신체적 학대(22.5%) - 중복 학대(22.4%) - 정서적 학대(14.0%) - 성적 학대(10.9%) - 방임(4.7%) 순이었다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복 학대의 비율은 집단이용시설에서 12.8%p 높았고, 경제적 착취의 경우는 1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중복 학대 46.0%(69건), 신체적 학대 19.3%(29건) 등의 순이며, 교육기관은 정서적 학대 60.0%(18건), 신체적 학대 20.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미신고시설은 경제적 착취 50.0%(11건), 장애인복지시설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신체적 학대 50.0%(10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중복 학대 42.1%(8건) 등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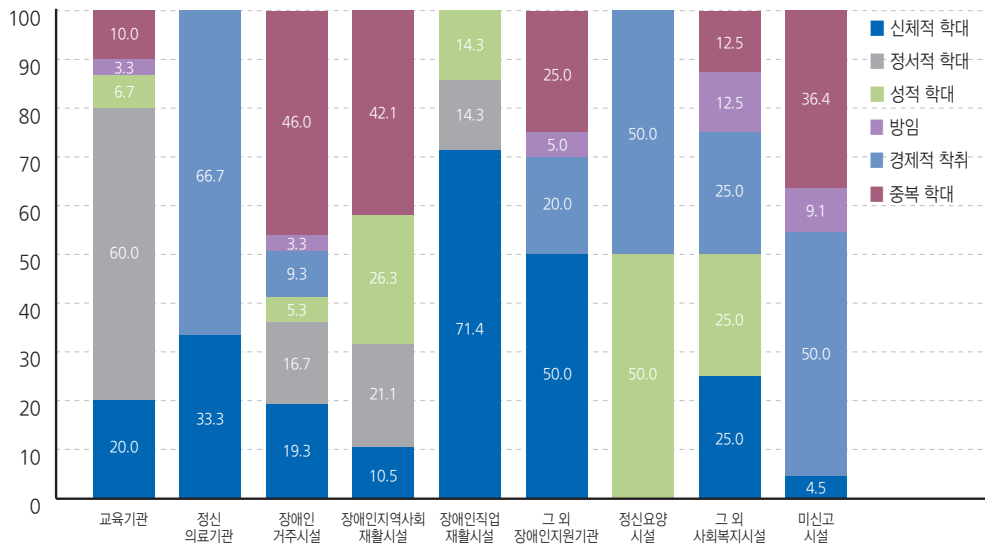
[표 6-5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6	20.0	3	33.3	29	19.3	2	10.5	5	71.4	10	50.0	-	-	2	25.0	1	4.5	58	21.7
정서적 학대	18	60.0	-	-	25	16.7	4	21.1	1	14.3	-	-	-	-	-	-	-	-	48	18.0
성적 학대	2	6.7	-	-	8	5.3	5	26.3	1	14.3	-	-	1	50.0	2	25.0	-	-	19	7.1
경제적 착취	-	-	6	66.7	14	9.3	-	-	-	-	4	20.0	1	50.0	2	25.0	11	50.0	38	14.2
방임	1	3.3	-	-	5	3.3	-	-	-	-	1	5.0	-	-	1	12.5	2	9.1	10	3.7
중복 학대	3	10.0	-	-	69	46.0	8	42.1	-	-	5	25.0	-	-	1	12.5	8	36.4	94	35.2
계	30	100.0	9	100.0	150	100.0	19	100.0	7	100.0	20	100.0	2	100.0	8	100.0	22	100.0	267	100.0

[그림 6-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267건이다. 이중 학대피해 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367건이다.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4.9%(128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8.3%(104건), 방임 17.2%(63건), 경제적 착취 13.9%(51건), 성적 학대 5.7%(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II과 비교하면 정서적 학대(24.6%)의 비율은 10.3%p, 방임(9.5%)은 7.7%p 높았으나 경제적 착취(25.4%)의 비율은 11.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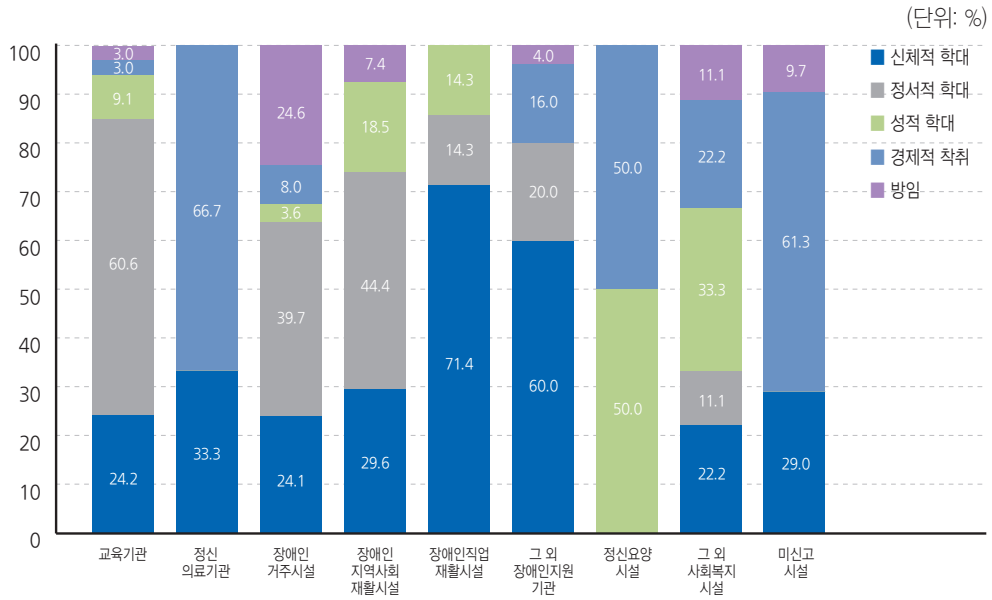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9.7%(89건), 신체적 학대 24.1%(54건) 등의 순이며, 교육기관은 정서적 학대 60.6%(20건), 신체적 학대 2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신고시설은 경제적 착취 61.3%(19건), 장애인복지시설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신체적 학대 60.0%(15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정서적 학대 44.4%(12건) 등이 가장 많았다.

[표 6-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신체적 학대	8	24.2	3	33.3	54	24.1	8	29.6	5	71.4	15	60.0	-	-	2	22.2	9	29.0	104	28.3
정서적 학대	20	60.6	-	-	89	39.7	12	44.4	1	14.3	5	20.0	-	-	1	11.1	-	-	128	34.9
성적 학대	3	9.1	-	-	8	3.6	5	18.5	1	14.3	-	-	1	50.0	3	33.3	-	-	21	5.7
경제적 착취	1	3.0	6	66.7	18	8.0	-	-	-	-	4	16.0	1	50.0	2	22.2	19	61.3	51	13.9
방임	1	3.0	-	-	55	24.6	2	7.4	-	-	1	4.0	-	-	1	11.1	3	9.7	63	17.2
계	33	100.0	9	100.0	224	100.0	27	100.0	7	100.0	25	100.0	2	100.0	9	100.0	31	100.0	367	100.0

[그림 6-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바.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다수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의 장애인거주시설(56.2%, 150건)과 미신고시설(8.2%, 22건)에서 발생했다. 2020년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미신고시설 포함)은 총 47개 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47.7%(8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26.2%(45건), 공동생활가정과 미신고시설이 각각 12.8%(22건), 단기거주시설이 0.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로 보면 31인~100인 미만 시설이 52.9%(91건)로 가장 많았고, 30인 이하 시설 43.0%(74건), 100인 이상 시설 4.1%(7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 장애인학대 발생 역시 31인~100인 미만 시설(91건)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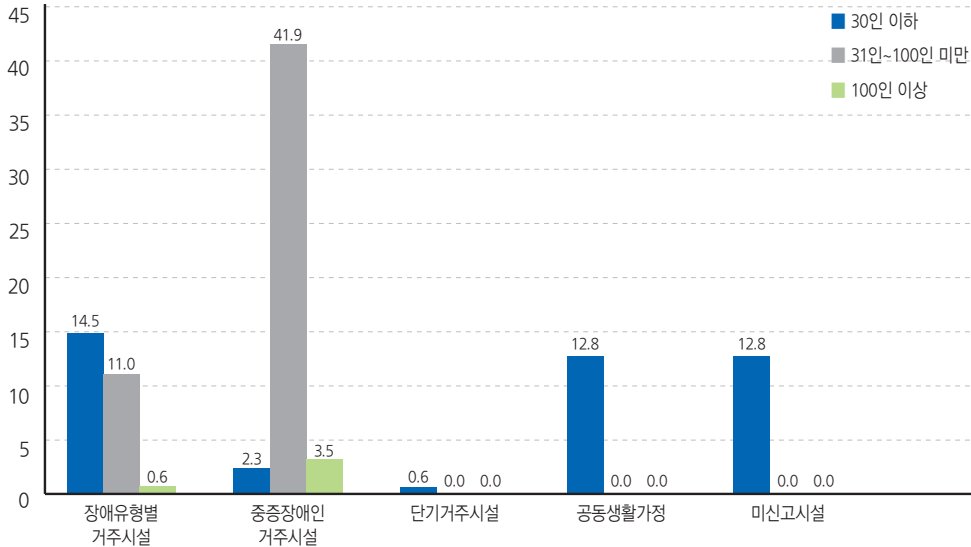
[표 6-6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30인 이하		31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	-	1	0.6	-	-	1	0.6
	시각장애인	-	-	6	3.5	-	-	6	3.5
	청각장애인	-	-	1	0.6	-	-	1	0.6
	지적장애인	25	14.5	11	6.4	1	0.6	37	21.5
	소계	25	14.5	19	11.0	1	0.6	45	26.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	2.3	72	41.9	6	3.5	82	47.7
단기거주시설		1	0.6	-	-	-	-	1	0.6
공동생활가정		22	12.8	-	-	-	-	22	12.8
계		52	30.2	91	52.9	7	4.1	150	87.2
미신고시설		22	12.8	-	-	-	-	22	12.8
총계		74	43.0	91	52.9	7	4.1	172	100.0

[그림 6-30]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직영 및 위탁)와 민간(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으로 구분된다. 2020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민간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이 84.0%(126건)로 가장 많으며, 개인 13.3%(20건), 기타법인 2.7%(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1	0.7	-	-	-	-	1	0.7
	시각장애인	6	4.0	-	-	-	-	6	4.0
	청각장애인	1	0.7	-	-	-	-	1	0.7
	지적장애인	30	20.0	1	0.7	6	4.0	37	24.7
	소계	38	25.3	1	0.7	6	4.0	45	30.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80	53.3	2	1.3	-	-	82	54.7
단기거주시설		-	-	1	0.7	-	-	1	0.7
공동생활가정		8	5.3	-	-	14	9.3	22	14.7
총계		126	84.0	4	2.7	20	13.3	150	100.0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50건이다. 이중 학대피해 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255건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 경제적 착취 -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장애인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 경제적 착취 - 정서적 학대 - 방임 - 성적 학대 - 유기 순)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 정서적 학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신체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41.3%(2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6%(13건) 등의 순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5.3%(67건),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6.9%(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37.5%(3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거주시설 각각 25.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미신고 시설이 51.4%(1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생활가정 27.0%(10건)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74.1%(43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각각 8.6%(5건) 등의 순이었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많이 발생했고, 정서적 학대,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	-	-	-	-	-	-	-	1	1.7	1	0.4
	시각장애인	4	6.3	3	3.4	2	25.0	-	-	-	-	9	3.5
	청각장애인	1	1.6	-	-	-	-	-	-	-	-	1	0.4
	지적장애인	26	41.3	15	16.9	3	37.5	5	13.5	5	8.6	54	21.2
	소계	31	49.2	18	20.2	5	62.5	5	13.5	6	10.3	65	25.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3	20.6	67	75.3	2	25.0	3	8.1	43	74.1	128	50.2
단기거주시설		1	1.6	-	-	-	-	-	-	1	1.7	2	0.8
공동생활가정		9	14.3	4	4.5	1	12.5	10	27.0	5	8.6	29	11.4
계		54	85.7	89	100.0	8	100.0	18	48.6	55	94.8	224	87.8
미신고시설		9	14.3	-	-	-	-	19	51.4	3	5.2	31	12.2
총계		63	100.0	89	100.0	8	100.0	37	100.0	58	100.0	255	100.0

사.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 응급조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는 267건이며, 이중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7.5%(20건)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응급조치는 쉼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시설 4건, 기타 3건 순이었다.

[표 6-6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쉼터	-	-	-	-	5	25.0	-	-	-	-	-	-	-	-	-	-	8	40.0	13	65.0
거주시설	-	-	-	-	1	5.0	-	-	-	-	-	-	-	-	1	5.0	2	10.0	4	20.0
기타	-	-	-	-	2	10.0	-	-	-	-	-	-	-	-	-	-	1	5.0	3	15.0
계	-	-	-	-	8	40.0	-	-	-	-	-	-	-	-	1	5.0	11	55.0	20	100.0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상담지원이 46.6%(817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지원 17.8%(312건), 거주지원 15.4%(270건), 사법지원 13.3%(233건), 의료지원 3.1%(54건), 복지지원 2.6%(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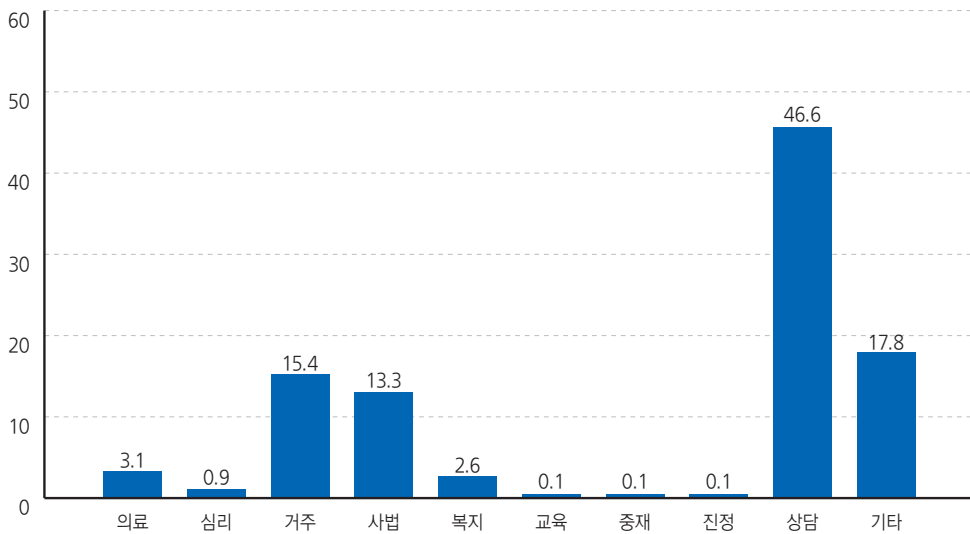
[표 6-6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54	16	270	233	46	2	2	1	817	312	1,753
3.1	0.9	15.4	13.3	2.6	0.1	0.1	0.1	46.6	17.8	100.0

[그림 6-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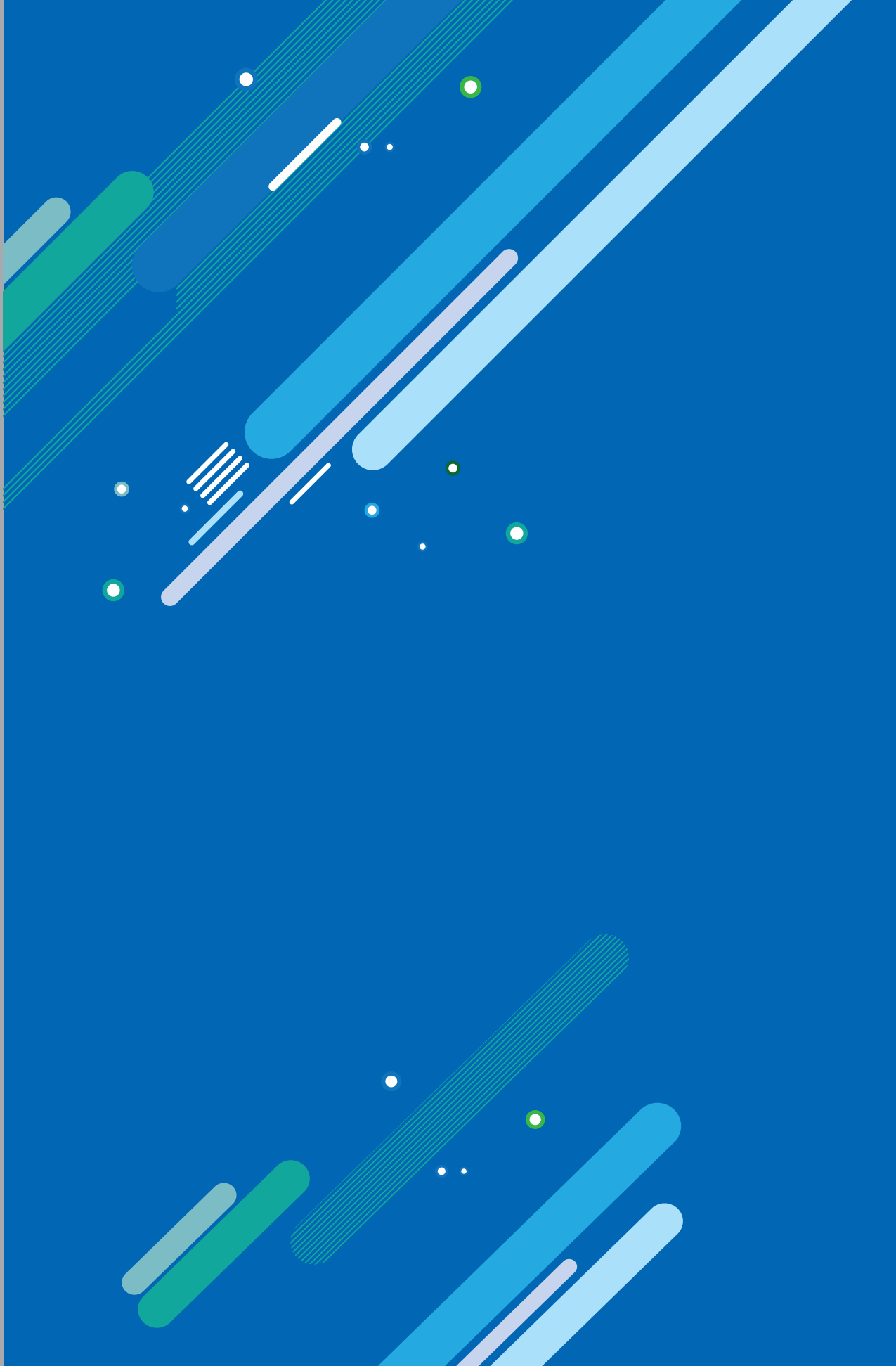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은 총 233회 이루어졌다. 기타를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29.6%(69회)로 가장 많았고, 고발 16.3%(38회), 수사의뢰 7.3%(17회) 등의 순이었다.

[표 6-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구분	교육 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고발	-	-	-	-	16	13.3	1	5.3	-	-	6	21.4	-	-	-	-	15	32.6	38	16.3
고소 대리	-	-	1	100.0	-	-	-	-	-	-	-	-	-	-	-	-	-	-	1	0.4
수사의뢰	-	-	-	-	16	13.3	-	-	-	-	-	-	-	1	20.0	-	-	17	7.3	
법률상담	-	-	-	-	-	-	-	-	-	-	-	-	-	-	-	2	4.3	2	0.9	
절차지원	6	46.2	-	-	29	24.2	8	42.1	-	-	3	10.7	1	100.0	2	40.0	20	43.5	69	29.6
소송구조	-	-	-	-	-	-	-	-	-	-	-	-	-	-	-	-	-	-	-	-
후견인선임	-	-	-	-	-	-	-	-	-	-	-	-	-	-	-	-	-	-	-	-
노동청 진정	-	-	-	-	-	-	-	-	-	-	-	-	-	-	-	-	-	-	-	-
기타	7	53.8	-	-	59	49.2	10	52.6	-	-	19	67.9	-	-	2	40.0	9	19.6	106	45.5
계	13	100.0	1	100.0	120	100.0	19	100.0	-	-	28	100.0	1	100.0	5	100.0	46	100.0	233	100.0



7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4. 연도별 학대행위자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8.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9.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제7장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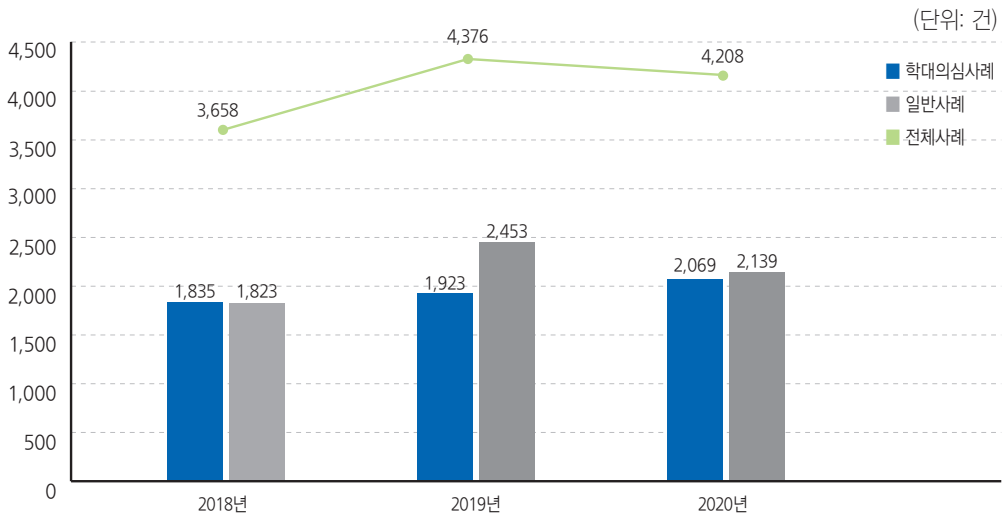
본 장은 장애인학대 실태 및 예방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3개년의 장애인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월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고, 그해 하반기에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질적인 장애인학대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대비 2020년 전체신고 건수는 15.0%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학대 신고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증감율	일반사례		증감율	계	증감율	
2018년	1,835	50.2	-	1,823	49.8	-	3,658	100.0	-
2019년	1,923	43.9	4.8	2,453	56.1	34.6	4,376	100.0	19.6
2020년	2,069	49.2	7.6	2,139	50.8	▲12.8	4,208	100.0	▲3.8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신고자는 장애인학대 통계가 집계된 2018년부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의 40% 정도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1% 감소한 35.2%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2018년을 제외하고 2019년, 2020년 연속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반면 2018년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초·중·고 교직원 등과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매년 가장 높았으며,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신 고 의 무 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21	22.9	308	16.0	185	8.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53	13.8	371	19.3	329	15.9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0	2.2	35	1.8	57	2.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7	0.4	11	0.6	13	0.6
	의료기사	-	-	1	0.1	1	0.0
	응급구조사	-	-	-	-	-	-
	구급대의 대원	-	-	-	-	1	0.0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4	0.2	3	0.2	9	0.4
	보육교직원	-	-	2	0.1	4	0.2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1	0.1	-	-
	초·중·고 교직원 등	33	1.8	41	2.1	69	3.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0.1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9	1.0	35	1.8	30	1.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3	0.2	-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2	0.7	27	1.4	21	1.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1	4	0.2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2	0.1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	0.1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신 고 의 무 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0.2	6	0.3	2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1	0.0	
	장기요양요원	4	0.2	9	0.5	4	0.2	
	소계	802	43.7	858	44.6	728	35.2	
비 신 고 의 무 자	본인	194	10.6	162	8.4	274	13.2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48	13.5	247	12.8	9	0.4
		부모					26	1.3
		자녀					97	4.7
		형제자매					63	3.0
		친인척					43	2.1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408	22.2	379	19.7	50	2.4
		경찰공무원					141	6.8
		공공기관 종사자					20	1.0
		교육기관 종사자					16	0.8
		의료기관 종사자					6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94	14.2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6	0.8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6	1.7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50	2.4
	타인	176	9.6	273	14.2	192	9.3	
	파악 안 됨	7	0.4	4	0.2	8	0.4	
	소계	1,033	56.3	1,065	55.4	1,341	64.8	
	계	1,835	100.0	1,923	100.0	2,069	100.0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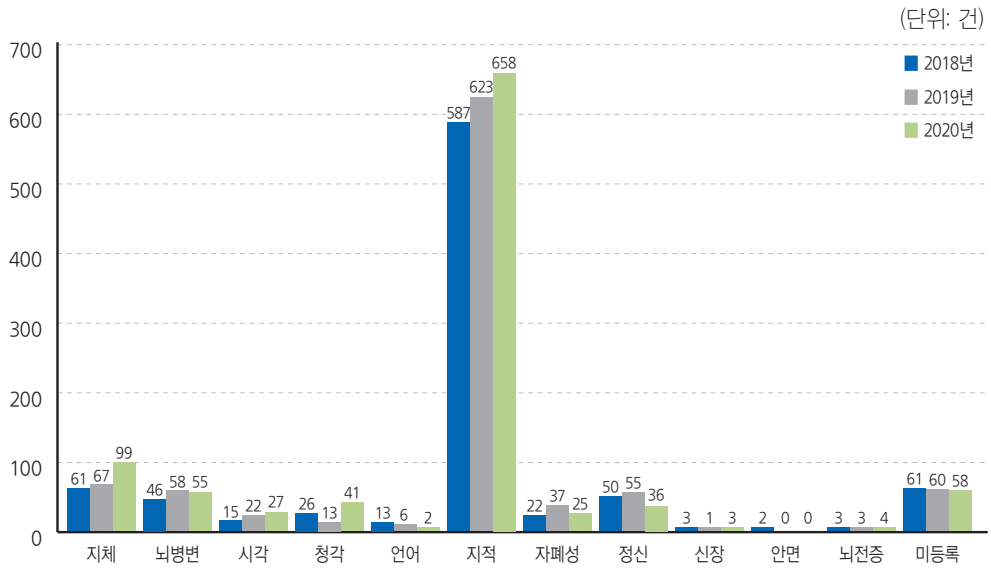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순으로 많았고, 피해장애인은 주로 정신적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피해자는 평균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건	%	건	%	건	%
지체장애	61	6.9	67	7.1	99	9.8
뇌병변장애	46	5.2	58	6.1	55	5.5
시각장애	15	1.7	22	2.3	27	2.7
청각장애	26	2.9	13	1.4	41	4.1
언어장애	13	1.5	6	0.6	2	0.2
지적장애	587	66.0	623	65.9	658	65.3
자폐성장애	22	2.5	37	3.9	25	2.5
정신장애	50	5.6	55	5.8	36	3.6
신장장애	3	0.3	1	0.1	3	0.3
심장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	-	-
간장애	-	-	-	-	-	-
안면장애	2	0.2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뇌전증장애	3	0.3	3	0.3	4	0.4
미등록	61	6.9	60	6.3	58	5.8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4. 연도별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은 가족 및 친인척, 타인, 복지·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의 행위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학대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알고 지내는 사람인 지인에 의한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118.3% 증가하여 학대행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비율은 감소하고, 가족 및 친인척, 타인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장애인복지관련기관, 학교 등에서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휴관 등으로 장애인들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및 부담 등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2	5.8	40	4.2	63	6.3
	부	115	12.9	113	12.0	90	8.9
	모					66	6.5
	조부모	7	0.8	4	0.4	3	0.3
	자녀	13	1.5	13	1.4	23	2.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3	6.0	42	4.4	54	5.4
	그 외 친척	31	3.5	41	4.3	32	3.2
타인	동거인	26	2.9	44	4.7	49	4.9
	이웃	45	5.1	36	3.8	38	3.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93	10.5	173	18.3	203	20.1
	고용주	58	6.5	48	5.1	62	6.2
	모르는 사람	42	4.7	64	6.8	68	6.7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205	23.1	198	21.0	157	15.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4	8.3	69	7.3	17	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0.6
	그 외 사회복지시설	-	-	-	-	15	1.5

관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0	7.9	54	5.7	17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0.9
	보육교직원					2	0.2
	초·중·고 교직원 등					13	1.3
	장기요양요원					1	0.1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11	1.1
	의료기관 종사자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0.1
	경찰공무원					1	0.1
본인		-	-	-	-	2	0.2
파악 안 됨		5	0.6	6	0.6	4	0.4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는 매년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교육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2018년		2019년		2020년	
	피해장애인 거주지	311	35.0	310	32.8	394	39.1
	학대행위자 거주지	70	7.9	79	8.4	93	9.2
	기타 거주지	-	-	-	-	9	0.9
	직장(일하는 곳)	109	12.3	76	8.0	99	9.8
	교육기관	38	4.3	41	4.3	30	3.0
	일반 의료기관	21	2.4	30	3.2	4	0.4
	정신 의료기관					9	0.9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95	21.9	204	21.6	150	14.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0	5.6	73	7.7	19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	0.7
	소계	245	27.6	277	29.3	176	17.5
	보호시설(쉼터)	30	3.4	22	2.3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0	2.0
	정신요양시설					2	0.2
	아동관련시설					1	0.1
	노인관련시설					4	0.4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2
	종교시설	7	0.8	11	1.2	11	1.1
	미신고시설	-	-	18	1.9	22	2.2
	온라인	-	-	-	-	5	0.5
	상업시설	-	-	51	5.4	61	6.1
	기타	53	6.0	18	1.9	56	5.6
	파악 안 됨	5	0.6	12	1.3	9	0.9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한 학대유형을 보면, 중복 학대가 2019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경제적 착취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복 학대와 방임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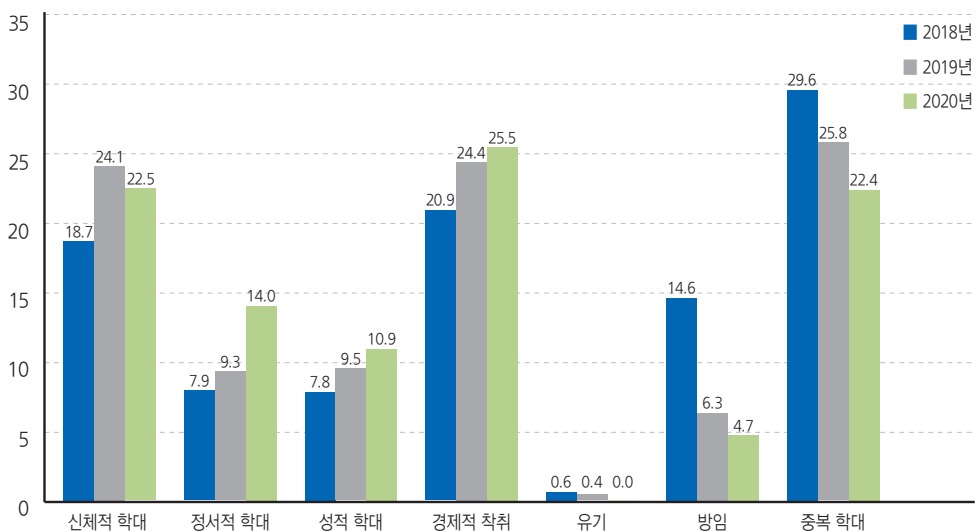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체적 학대	166	18.7	228	24.1	227	22.5
정서적 학대	70	7.9	88	9.3	141	14.0
성적 학대	69	7.8	90	9.5	110	10.9
경제적 착취	186	20.9	231	24.4	257	25.5
유기	5	0.6	4	0.4	-	-
방임	130	14.6	60	6.3	47	4.7
중복 학대	263	29.6	244	25.8	226	22.4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한 학대유형과 비교해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20년에는 4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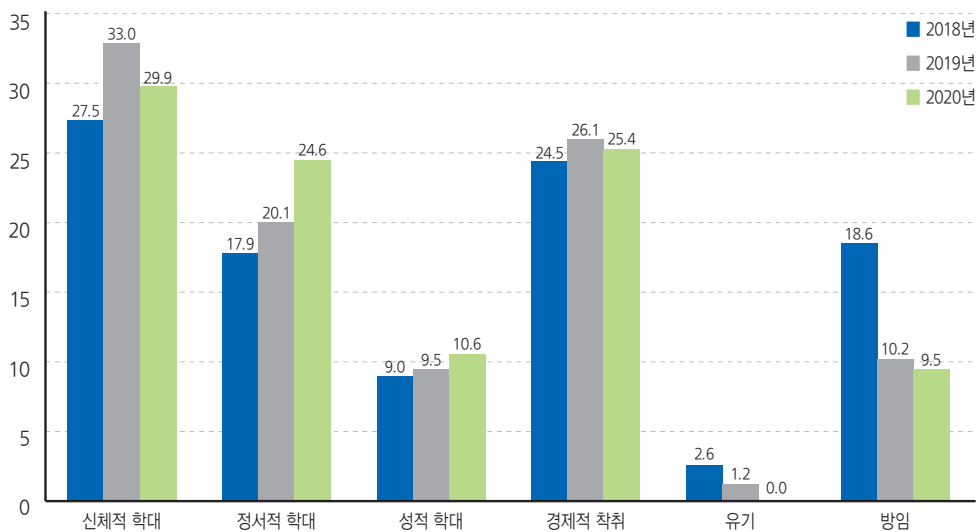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건	%	건	%	건	%
신체적 학대	339	27.5	415	33.0	378	29.9
정서적 학대	221	17.9	253	20.1	311	24.6
성적 학대	111	9.0	119	9.5	134	10.6
경제적 착취	302	24.5	328	26.1	321	25.4
유기	32	2.6	15	1.2	-	-
방임	229	18.6	128	10.2	120	9.5
계	1,234	100.0	1,258	100.0	1,264	100.0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II(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가.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발달장애인 학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약 70%가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학대의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의 9.4%로 매년 약 2~3%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발달장애인의 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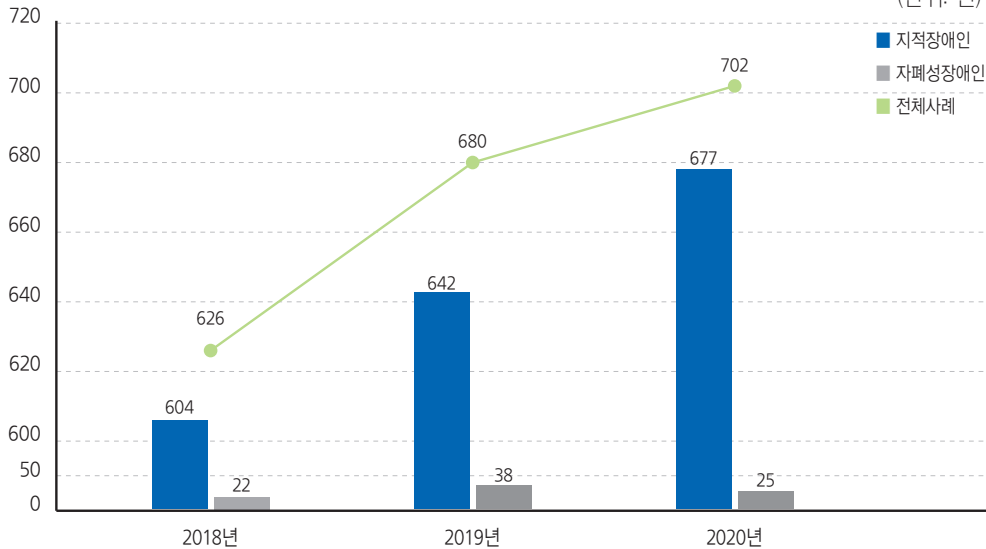
[표 7-8]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단위: 건,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계	증감율
2018년	604	22	626	-
2019년	642	38	680	8.6
2020년	677	25	702	3.2

[그림 7-5]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단위: 건)



나.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발달장애인 학대의 유형은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8년에는 중복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2020년에는 경제적 착취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과 마찬가지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복 학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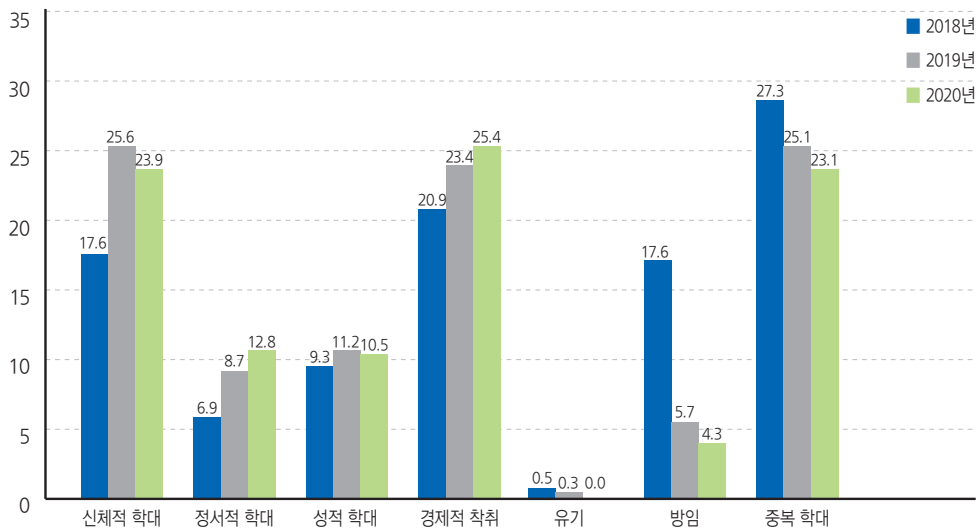
[표 7-9]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중복 학대		계	
2018년	110	17.6	43	6.9	58	9.3	131	20.9	3	0.5	110	17.6	171	27.3	626	100.0
2019년	174	25.6	59	8.7	76	11.2	159	23.4	2	0.3	39	5.7	171	25.1	680	100.0
2020년	168	23.9	90	12.8	74	10.5	178	25.4	-	-	30	4.3	162	23.1	702	100.0

[그림 7-6]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8.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를 2018~2019년에는 '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상별 복지시설(노인, 아동, 정신장애인 등)인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미신고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 복지시설별로 분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가.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사례 발생현황

집단이용시설 내 장애인학대는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25.4%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도 전체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의 56.2%를 차지하였다.

[표 7-10]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기관	38	12.1	41	11.5	30	11.2
정신 의료기관	-	-	-	-	9	3.4
장애인거주시설	195	62.3	204	57.0	150	56.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0	16.0	73	20.4	19	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	2.6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30	9.6	22	6.1	20	7.5
정신요양시설					2	0.7
보호시설(쉼터)					1	0.4
아동관련시설					1	0.4
노인관련시설					4	1.5
기타 복지관련시설					2	0.7
미신고시설	-	-	18	5.0	22	8.2
계	313	100.0	358	100.0	267	100.0

나.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유형에서는 중복 학대가 3개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 역시 전체 장애인학대·발달장애인학대 유형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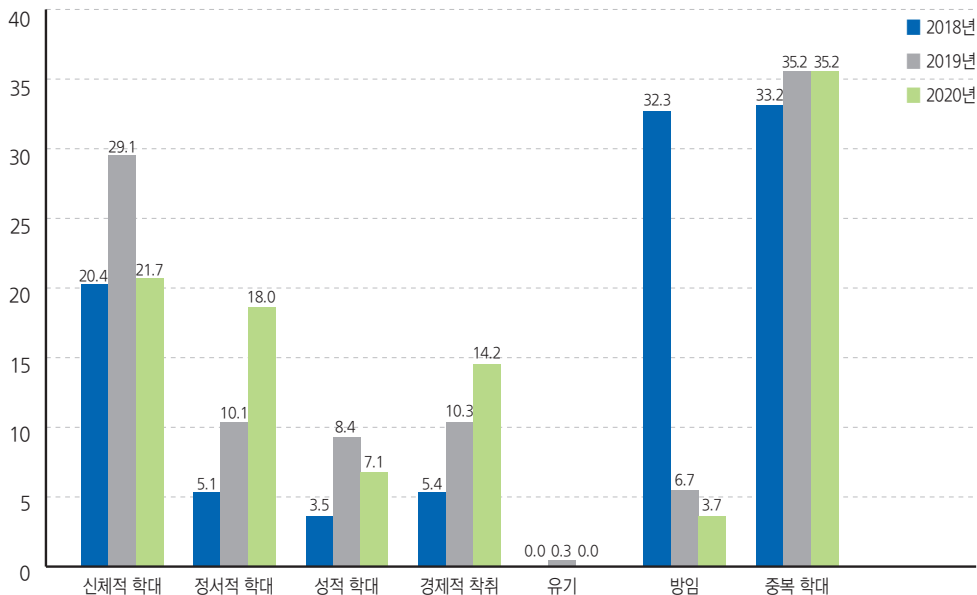
[표 7-11]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중복 학대		계	
2018년	64	20.4	16	5.1	11	3.5	17	5.4	-	-	101	32.3	104	33.2	313	100.0
2019년	104	29.1	36	10.1	30	8.4	37	10.3	1	0.3	24	6.7	126	35.2	358	100.0
2020년	58	21.7	48	18.0	19	7.1	38	14.2	-	-	10	3.7	94	35.2	267	100.0

[그림 7-7]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9.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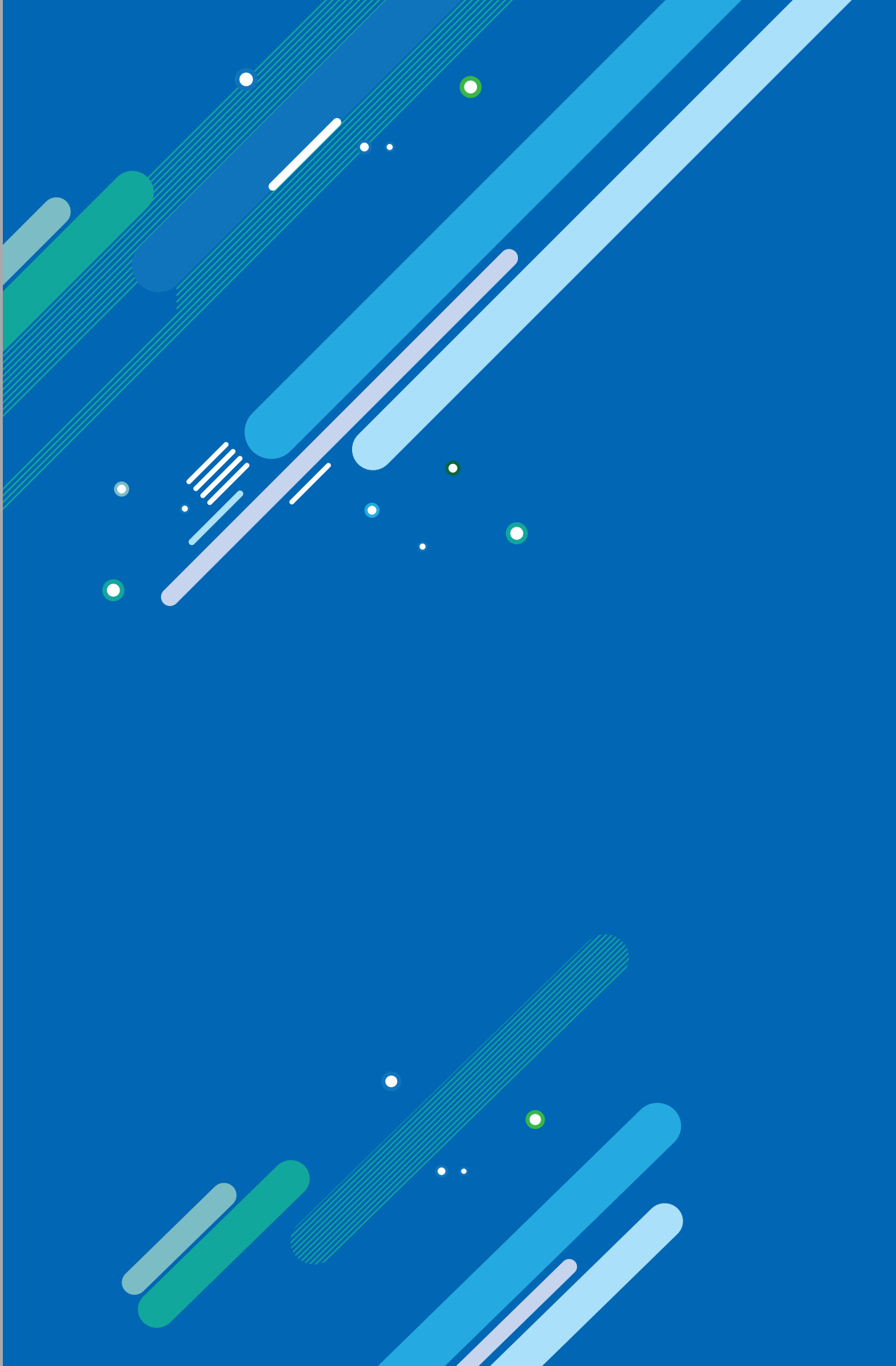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일명 ‘노예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2020년은 전년도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연도별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노동력 착취사례 건수	94	88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대비 비율	9.9(945)	8.7(1,008)
증감율	-	▲6.4







부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1. 1. 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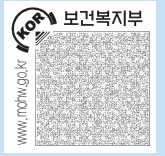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

구분	주요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2021. 7. 1. 기준, 19개)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우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우 06278)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우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우 41242)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우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우 61960)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우 34541)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우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우 30150)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보람동)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우 166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리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우 11813)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민락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우 24390)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우 2879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우 3110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청당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우 549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1-10, 경희공빌딩 5층(효자동2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우 58615)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우 37662)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우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우 63256) 제주 제주시 청굴로5길 21, 1층(이도이동)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인쇄일	2021년 7월
발행일	2021년 7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편집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은종균
편집위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정혜, 이미현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인쇄	블루애드(02-6082-7076)